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278-01

동물보호·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2017. 1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책임자: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전상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귀중

이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본 학회 간에 체결한 “동물보호·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농업경제학회



연구책임자: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전상곤



연구진	소속	연구 담당
전상곤 교수	경상대학교	연구총괄, 조직진단, 분석, 개선방안, 보고서 집필
하수안 석사과정	경상대학교	국내 자료수집, 정리
안윤미 석사과정	경상대학교	해외 자료수집, 정리
(위탁) 지인배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자료 수집 및 분석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5
제 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
제 2장 동물보호·복지 산업 현황 & 정책 추진 동향	18
제 1절 산업 현황	18
제 2절 정책 추진 동향	27
제 3절 정책 추진 방향	32
제 3장 관련 법령 검토와 조직 진단	38
제 1절 관련 법령 검토	38
제 2절 조직 진단	45
제 3절 주요 업무량 분석	63
제 4절 심층면접(FGI) 분석 결과	70
제 5절 국내 주요 민간 기구	83
제 4장 해외 사례 검토	89
제 1절 미국	89
제 2절 일본	103
제 3절 영국	118
제 4절 네덜란드	131
제 5절 덴마크	137
제 6절 독일	143
제 7절 기타 기구	150
제 5장 관리 체계 개선 방안	159
제 1절 관련 법령 제·개정	159
제 2절 행정 조직 개편	166
제 3절 인력 충원	183
참고문헌	190

표목차

표 2-1. 한국 애완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2010년)	19
표 2-2. 반려동물 생산업체 현황	21
표 2-3. 동물 관련 등록 업체 수(2017.6.14. 기준)	22
표 2-4. 반려동물사료 수출 현황	22
표 2-5. 반려동물사료 수입 현황	23
표 2-6. 수의업 현황	24
표 2-7. 수의업의 매출액의 세부 분야별 비중	24
표 2-8. 반려동물 관련 업태별 종사자 수	30
표 2-9. 5개년 종합계획 인프라 확보 추진 현황	32
표 3-1. 관련법령 비교	40
표 3-2. 동물보호법 세부 내용	43
표 3-3. 중앙 행정 조직 동물보호·복지 관련 부서와 인력 현황	46
표 3-4. 중앙 행정 관련 부서 세부 업무 내용	47
표 3-5. 특별·광역시 동물보호·복지 관련 부서와 인력 현황	49
표 3-6. 도 동물보호·복지 관련 부서와 인력 현황	50
표 3-7. 서울특별시 전담조직 세부업무	51
표 3-8. 부산·대전·경기도 전담조직 세부업무	52
표 3-9. 전담조직이 없는 광역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세부업무	53
표 3-10. 광역 지자체의 구 관련 부서 조직 현황	55
표 3-11. 기초 지자체 시·군 관련 부서와 조직 현황	56
표 3-12.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62
표 3-13. 반려동물 현황 (추정 마리)	65
표 3-14. 동물등록 및 동물보호센터	66
표 3-15. 영업장 현황	67
표 3-16. 민원건수	68
표 3-17. 기타 유관 업무	69
표 3-18. 동물자유연대 프로그램 주 내용	83
표 4-1. APHIS 및 동물보호 예산	92
표 4-2. 동물애호관리 기본지침 및 추진 계획	113
표 4-3. 동물애호와 관련된 주요처별	114
표 4-4. DEFRA 사업 집행 기관	119
표 4-5. 동물복지 및 보호에 관련된 주요처별	136

표 4-6. 베를린 동물보호협회 (TierschutzVerein fur Berlin) 수수료	146
표 4-7. 독일 동물 보호법의 기본원칙	149
표 5-1. 국가별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 검토	160
표 5-2. 동물보호·복지 담당 부서의 현재 업무와 업무량 증가 예상 부분 정리	167
표 5-3. 가축 방역/위생과 동물보호·복지 조직과 업무량 비교	169
표 5-4. 서울시와 지자체의 반려동물 수 대비 조직과 인원 비교	172
표 5-5. 서울시와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조직과 업무량 비교	172
표 5-6. 서울시와 광역지자체의 반려동물 수 대비 행정조직 신설 검토	176
표 5-7. 지자체의 신설 행정조직 담당 업무	177
표 5-8. 지원조직 사례와 적용	179
표 5-9. 5년간 동물보호감시원 업무 증가 추이	184
표 5-10. 중앙 행정 조직 동물보호·복지 관련 부서와 인력 현황	186
표 5-11. 광역지자체의 행정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 산출	187
표 5-12. 동물보호감시원 수	189

그림목차

그림 2-1. 반려동물 보험 판매 회사	25
그림 2-2. 반려견 등록 추진현황	28
그림 2-3. 유기동물 처리 및 보호센터 개소 수	29
그림 2-4.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33
그림 3-1. 소속조직에 동물보호·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71
그림 3-2. 향후 증가하는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72
그림 3-3.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현 근무 인원과 향후 필요한 인력의 수	73
그림 3-4. 동물보호·복지 업무 담당자의 업무 강도별 응답자 수	74
그림 3-5. 동물보호·복지 업무 담당자의 업무 강도별 응답 비율	75
그림 3-6.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직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76
그림 4-1. USDA APHIS 조직도	90
그림 4-2. 미국의 동물보호과 사무소	94
그림 4-3. 일본 농림수산성의 주요조직 및 역할	104
그림 4-4. 일본 환경성의 주요조직 및 역할	105
그림 4-5. 일본 환경성 자연환경국 조직도	106
그림 4-6. 일본 후생노동성의 주요조직 및 역할	107
그림 4-7. 일본 동물검역소의 조직현황	108
그림 4-8. 동물 애호 관리법의 목적	110
그림 4-9. 반려동물사료안전법의 개요	115
그림 4-10. NVWA 조직도	132
그림 4-11. 동물당 로고	133
그림 4-12. 동물복지경찰 활동사진	134
그림 4-13. 동물보호협회 로고 및 활동사진	135
그림 4-14. DVFA 조직도	138
그림 4-15. 독일의 동물복지라벨 인증 마크	147
그림 4-16. OIE(국제수역사무국) 행정조직도	150
그림 4-17. OIE(국제수역사무국) 인력 및 예산	153
그림 4-18. OIE(국제수역사무국) 예산 보고	154
그림 4-19. 세계동물보호협회의 수입 및 지출 현황	155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등 정책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 조직·체계로는 대응이 곤란함.
- 동물보호·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영업자 관리·단속, 동물 보호 기반 구축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조직이 부족한 실정임.
- 관련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영업자 신고 등록 수준의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선제적 정책대응에 어려움이 많음.
-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동물보호·복지 행정조직 체계 진단과 선진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연구 목적

- 효과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국내 동물보호 복지 조직을 진단하고, 해외선진국의 제도·조직·행정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동물보호·복지 조직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선행연구 검토

□ 동물보호·복지 관련 논의 동향 검토와 정책 제언

○ 우병준 외(2010)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동물복지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정책 및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본 연구는 농장동물복지 개념의 산업 적용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검토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해당 개념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농장동물복지도입 동향을 국가별로 제시하고 국내 농가와 도축업계의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도입 의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또한 농장동물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동물복지형 축산물이 시장에서 판매된다는 가정 하에서 소비자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함. 또한 국내외 동향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장동물복지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함.
- 연구 결과로는 농장동물복지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축산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제도의 도입, 전개, 보완, 정착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상당한 부분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특히, 소비자 조사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농가 생산비변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통단계를 제외한 생산단계에서 동물복지 적용에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동물복지적 요소를 많이 도입한 농가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유통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통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함.
- 그러나 동물복지형 축산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과 시장실패 성격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과 보조가 필요할 것이며 이 경우, 소비자 조사결과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가격프리미엄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생산자 소득이 관행축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동물복지형 축산의 도입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첫째, 소비자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지도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둘째, 업계의 혼란 방지 및 명확한 정책방향 수립을 통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인 동물복지정책의 방향제시가 요구됨. 셋째, 농장동물복지가 가지고 있는 시장실패적 성격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와 같은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정책추진체계로서 가칭 한국동물복지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함. 동물복지의 경우 사회에는 다양한 의견계층이 존재하며 동물복지에 관해 체감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합일을 위한 실체적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신동민(2015)은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소비자인식에 관해 연구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국에 대한 제도 및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규명하고 국내 축산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동물복지형 축산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 동물복지형 축산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해외 농장동물복지 정책 분석에서는 동물보호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정부의 협력과 더불어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자각이 동시에 이루어져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와 시장진입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했음. 또한 동물복지 인증에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여건 상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유도할 필요성을 강조함.
- 분석결과, 소비자들은 동물복지에 대한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소비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 동물복지형 축산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동물복지형 농가의 축산물 및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본 연구는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축산물의 품질과

맛뿐만 아니라 축산물에 안전성 또한 중요시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안전한 먹거리와 축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에 의한 가축질병의 발생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킴. 이러한 문제점이 대안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동물복지형 축산물도 일반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내적속성요인에 대한 항목과 같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의식을 고려하여 알맞은 동물복지 축산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일반 축산물과 동물복지형 축산의 차별성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유기영 외(2016)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음.
 - 본 연구는 시민의 반려동물 사육 및 자치구의 반려동물 관리업무를 지원할 서울시 동물복지 지원시설(가칭)의 기능을 검토하고 가치를 평가함.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추진절차와 추진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를 제안함.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국내 반려동물 관리체계현황 파악, 국내외 동물복지지원시설이 사례 조사 및 분석,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 및 효과 분석을 통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연구방법은 사례 조사, 의견 조사, 법규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음.
 - 연구 결과, 서울의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12년새 3%p 가량 증가했음을 확인, 2020년에 관련산업 규모도 지금보다 3배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민간시설 또는 동물보호단체시설에 위탁하는 형태이고, 시민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이나 상담 기반은 전혀 없음. 특히 자치구 담당자는 매일 2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할 정도로 연간 421~1,451건의 동물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외국 사례 조사에서는 해외 비영리단체의 경우 전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어 도시 유기동물 입양범위 역시 전국적이며 특히,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은 외국 도시들의 주요한 특징으로 파악. 활동재원도 각종 수수료, 기부금, 유산수입, 정부보조금 등으로 다양함. 이에 반해 서울은 공공부문의 사육포기동물 인수와 같은 사전예방적 기능이 없으며 재원 또한 공공부문의 공공재원에, 비영리단체는 기부금에 편중되어 있음.

- 분석결과,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이 반려동물 보호 및 사육문화 개선에 집중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지원시설의 역할은 사육포기동물인수, 동물분양센터 운영, 동물병원 운영, 교육, 연구개발, 상담, 지역동물보호활동가 플랫폼 제공, 동물 구조팀 운영,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구체화하며 이 시설의 운영을 통해 서울시는 연간 63억원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함.

□ 해외 동물보호·복지 관련 논의 동향 및 제도 소개

○ 우병준(2014)은 EU 동물복지 개념에 대해 연구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관련 입법과 정책도입은 EU(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영국의 동물복지 입법과 정책이 있음. 따라서 EU 동물복지 정책의 변화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개념 수립 및 정책 제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는 EU 동물복지 정책 도입과 추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영국의 동물복지 입법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 영국의 동물복지 인증프로그램을 소개함. 다음으로 EU의 동물복지 입법과 정책 도입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사 및 분석하였음. 끝으로 최근 EU의 새로운 동물복지 정책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한 사안 조사 및 내용 소개임. EU의 동물복지 관련 정책 및 법안, 관련단체 활동의 현황을 조사 및 정리함. 구체적으로는 영국 FAWC(농장동물복지위원회)의 다섯가지 자유, RSPCA(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의 농장동물복지 기준 수립 관련 정책 자문으로써의 역할 소개와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동물복지 인증프로그램을 안내함. 또한 사육단계, 운송단계, 도축단계에서의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함. 끝으로 EU의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2015년에 새로 도입된 Animal Welfare Strategy를 수립, 동물보호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1) 동물복지 관련 EU 법률 체계 단순화, 2) 회원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강화, 3) 국제협력체계 지원, 4) 소비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5) EU 공동농업정책과의 연계 극대화, 6) 양식 어류에 대한 동물복지 연구를 소개함.

○ 유선봉(2008)은 미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연구하였음.

- 역사적으로 미국은 1641년 메사추세츠 만 식민지에서 제정한 자유장전에서 동물학대금지법을 제정하였으며 1921년까지 미국의 모든 주가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입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음. 비록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미국의 현행 동물학대금지법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이 분야의 입법을 선도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물보호 선진국인 미국의 현행 동물학대금지법을 분석하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의 현행 동물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봄.
 - 연구 결과, 선진국에서의 동물보호운동과 입법적 추세와 비교해볼 때, 불과 10여 년 전부터 본격화된 한국에서의 동물보호운동은 그 역사가 매우 일천함을 강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동물들의 복지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그 동안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냈음을 확인. 개정된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행위 및 금지행위의 구체화, 반려동물 관리제도의 정비,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강화, 동물실험 관리체계의 구축, 동물보호 감시관제도의 도입,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그 예로 들.
 -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으니 실제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함을 강조. 동물들을 최소한 각종 학대와 착취로부터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동물들의 복지개선은 물론 동물들이 단순한 재산권행사의 객체가 아닌 최소한의 권리주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논의의 필요성을 어필하였음. 그리고 이를 위해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정부당국의 올바른 정책수립 및 엄격한 법집행, 국회의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 법원의 엄정한 법적용 그리고 세계적인 입법추세를 반영한 관련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음.
- 이종인(2014)은 해외 동물복지 축산정책에 대해 정리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해외 축산 선진국들의 동물복지 법률과 정책에 대한 현황과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동물복지 법률과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이를 위해 해외 축산 선진국들의 동물복지 법률과 정책에 대한 문헌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 중요하게 진행하는 연구대상은

EU, 영국, 독일, 미국, 일본임.

- EU에 대한 조사에서는 축산업과 관련된 동물복지 규칙, EU 동물복지지침의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고 있음.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국가인 영국에 대한 조사에서는 영국 정부 독립자문기관인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WC)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역할 소개 및 관련 동물보호법과 지침을 확인함. 독일에 대한 조사에서는 동물복지 라벨의 도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연방법 중 ‘28시간법’과 ‘인도적 도살법’을 소개함. 끝으로 일본에 대한 조사에서는 축종별 사양관리 지침을 공표하고 이를 기초로 생산자 단체인 사단법인 축산기술협회에 의해 자주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또한 동물복지정책을 제정함에 있어 동물복지 축산물의 시장 점유를 설정하거나 동물복지 축산물의 축종별 비율 달성과 같이 일방적인 목표제와 정책적 지표를 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축산 생산 환경의 실정에 알맞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축산 농가의 선택 다양성과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를 위한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으로 동물복지 인증 단계별 등급제 실시, 기존 축산물 인증제도와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통합에 대한 고려,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보급과 사회기업 및 단체의 참여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끝으로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기존 축산물 유통경로에서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동시에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다양한 홍보전략의 필요성을 어필 및 동물복지 전문 판매점 양성, 소비자 수준과 니즈를 고려한 차별적 판매 실시를 제안함.

○ 최염순(2009, 2012)은 농장동물복지에 관한 국제 동향을 소개하였음.

- 본 연구는 근래 들어 세계 각국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정법으로 입법하여 제도화 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함. 각국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제도는 불필요한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케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각국의 종교/문화/관습 등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각

국의 실정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법과 제도의 수준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함. 따라서 각국의 농장동물복지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이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함.

- 동물복지에 관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로 유럽연합(EU)의 동물복지전략에 대한 노력과 활동, 미국의 동물복지법 제정 내용, 국제기구인 OIE의 세계동물복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동물복지지침에 관한 내용, IDF의 낙농생산 동물복지가이드 등을 소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과정에서 규모화·집단지에서 비롯된 공장식 과밀사육의 비난에서 벗어나 사육밀도를 완화하여 가축들에게 주는 스트레스 및 악성 전염병 발생을 줄여 안전하며 고품질의 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과 과정에 있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기준과 국내 축산여건에 조화로운 축종별 생산목적에 따른 농장동물 생산가이드라인과 그 기준을 개발·보급해서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허덕(2014)은 일본의 동물복지정책과 사례에 대해 연구하였음.

- 본 연구는 일본의 동물복지관련 법규 및 정책 수립의 배경과 함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구성과 활동 내용, 동물복지에 대응 축종별 사양관리 지침 수립을 통한 일본의 동물복지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일본의 동물복지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법률로는 동물의 복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음. 이 법률은 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각종 기준에 관한 고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고시에서는 동물을 가정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산업동물로 나누고 각각의 기준을 따로 제시하고 있음. 이 외에 동물의 복지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 2006년에 제정되었고, 2013년 환경부 고시 제 80호에 의해 개정된 바 있음을 소개함. 일본의 동물복지 관련 정책 현황 중 특이한 점으로 우리나라나 외국에는 없는 방목축산기준인증제를 안내함. 동물복지의 기본인 밀도조절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자유로운 생활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방목이야말

로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방목 축산 기준인증제가 2011년 창설되어 별도로 운용 중에 있음을 소개함. 더불어 일본 친환경축산 관련 정책, 유기축산 인증정책(JAS인증), 및 동물복지 적용 사례를 정리함.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산지축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음. 이것 또한 일본의 방목축산기준인증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일본의 동물복지 추진방법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나라도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한국형 동물복지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동물보호·복지 관련 제도 도입에 따르는 경제적 영향 평가

○ 강혜정 외(2011)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과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농장동물복지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음.

- 국내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향상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존재함. 따라서 농장동물복지 개념의 전개와 관련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농장동물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생산자는 농장동물복지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농가가 직접 실천하는 것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는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가격프리미엄을 계산한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전 축종에서 동물복지형 축산물 지불의사금액이 일반 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의 가격에 비해 높고, 유기축산물 가격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생산자와 소비자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 장기적인 동물복지 정책방향의 제시 요구, 시장 실패적 성격을 고려한 정부의 지원, 가칭 한국동물복지위원회 도입의 필요성,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적정가격 수준 산정을 위한 생산 및 유통 부문의 대응책 마련을 제시함.

○ 배정환 외(2011)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물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음.

-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가상 시장을 설정하여 최종 소비자의 동물복지형 축산물

에 내재된 비시장 편익들을 고려한 최대 지불용의액을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통해 추정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농장 동물복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유기축산물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고, 쇠고기, 우유 및 계란은 기존 유기 축산물 시장과 일반 축산물 시장의 중간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송영한 외(2014)는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연구하였음.

- 동물복지의 인지도에 따른 축산물 구입 시 고려사항과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의향에 따른 축산물 구입 시 고려사항을 분석함. 또한, 축산물 구입 시 고려사항이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의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인지도에 따른 축산물 구입 시 고려사항은 유기 또는 친환경축산물 여부와 동물복지의 적용여부인 것으로 나타남. 축산물 구입 시 고려사항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통기한은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소비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신경을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남. 구입장소, 가격, 신선도, 맛, 품질에서도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소비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신경을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남. 축산물 구입 시 고려사항이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내적속성인 판매장의 위생, 품질, 맛, 신선도, 유통기한, 안전 및 안심의 중요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의 시사점으로 정부의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시함. 또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 의식을 고려한 정부와 축산업계의 알맞은 동물복지 축산물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함.

○ 안병일(2008)은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를 추정하였음.

- 향후 수립될 동물복지 가이드라인과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시장 가격을 추정하고 경제성을 판단하고자 함.
- 동물복지형 쇠고기 수요함수 추정결과, 자체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수요량은 1인당 평균 0.0979kg 감소하는 반면, 일반 쇠고기 가격이 1% 상승할 경

우 수요량은 1인당 평균 0.0795kg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물복지형 닭고기 수요함수 추정 결과, 자체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수요량은 1인당 평균 0.0879kg 감소하는 반면, 일반 닭고기 가격이 1% 증가할 경우 수요량은 1인당 평균 0.0803kg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는 동종의 일반축산물의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암시함. 따라서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일반 축산물 가격의 형성 원인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을 제시함.

○ 윤유경(2014)은 가치소비추구에 따른 동물복지인증 달걀의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음.

- 소비자 유형별 동물복지축산의 인식과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동물복지인증 달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확대 시행될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소비자 마케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가치소비 소비자유형은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적 소비자유형, 윤리적 소비자유형, 소극적 소비자유형으로 명명함. 달걀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은 신선도, 위생상태, 품질, 사육방법이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윤리적 소비자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동물복지인증 달걀의 구매경험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 구매동기로는 ‘안전한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인도적 사육을 지지해서’, ‘건강에 좋을 거 같아서’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아 안전성과 이타적이고 생태적인 가치에 대해 윤리적 소비자 유형의 평균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남.
- 많은 응답자가 인증제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 동물복지인증 달걀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적극 홍보가 필요함. 또한, 동물복지 인증달걀의 경우 직접 방문구매보다 농가 직거래, 인터넷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하고 접근이 용이한 구매처 확대를 통해 구매 편의성을 높일 것을 제안함. 동물인증달걀의 구매가격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소비촉진을 위해 농장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산비의 정부의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함.

○ 윤창호(2012)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생산자의 동물복지 의향조사,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자 인식 및 가치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의 축종별 토지, 건물, 시설 등 투자액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비교하고자 함.

- 분석 결과 동물복지형 축산의 시행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자가 느끼는 추가 편익이 더욱 크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한우는 생산측면에서 현행 소비자가격 대비 6.1%의 상승, 소비자는 현행 대비 19.5%의 소비자가격 상승은 용인할 것으로 나타남. 양돈은 18.6%의 가격상승 요인이 있으나 소비자는 30.2%의 상승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에는 시설, 노동력에서 추가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분을 보상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함을 주장함. 동물복지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의 동물복지 구현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를 위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제언함.

□ 동물보호·복지 관련 유관 산업에 대한 연구

○ 김선희(2013)는 반려동물의 분양과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사함.

- 반려동물 소비실태를 조사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함.
- 반려동물 소비자 조사의 소비자 인식 부문에서 조사대상자의 97.2%가 반려동물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가장 큰 이유로 ‘돌보다 보면 기쁨이 생김’과 ‘반갑게 대해줘 외롭지 않게 해줌’이 83.4% 차지함. 불편사항 및 문제점으로 ‘비용부담’이 23.6%의 응답률을 보임. ‘배설물 처리’, ‘소음 등으로 인해 이웃집과 관계 불편’ 등이 뒤를 잇따름.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으며 ‘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활성화’가 그 뒤를 잇따름.
-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개선방안으로 동물병원의 자체 진료비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구입 계약서 제공의무 강화,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 필요를 주장함.

○ 황명철 외(2013)는 애완동물 관련 산업으로 사료시장, 관련용품 시장, 수의진

료 시장, 보험 시장 등에 조사하였음.

- 농협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애완동물 관련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애완동물 관련시장의 규모는 2020년경 약 6조원 안팎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남. 그에 따른 애완동물 관련업종은 전문화, 세분화되며 대기업 사업 참여에 따라 브랜드 중심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 애완동물 질병치치와 예방, 수의진료 비용의 지출비중이 커짐에 따라 애완동물 보험시장이 새롭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훈련학교, 모델 에이전시, 미용업 등의 서비스부문의 시장이 세분화 및 전문화될 것으로 전망함.
- 농협의 기존 조직과 인력, 사업체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사업의 터전으로 애완동물 관련시장에 참여를 모색할 필요성을 주장함. 사료·유통회사와 수의사 인력과 동물병원, 보험회사 등을 애완동물 관련산업 참여에 유리한 조직적 인프라를 보유한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이정임 외(2015)는 반려동물산업의 신규시장 확대에 대비해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와 홍보,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반려견 등록 수와 유기동물 발생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 중 유기동물의 40% 이상이 자연사 및 안락사로 처리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49%만 동물등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기동물 방치에 따른 위험, 병원성 세균감염의 환경·위생문제 우려를 나타내 등록제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사체 처리방법은 공공처리시설, 동물병원, 장묘시설 처리 순으로 편리하다고 응답하여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의 제언을 함. 첫째, 동물등록제도의 교육·홍보를 통한 유기동물 감소와 보호소 확충 및 민간보호시설 지원 검토. 둘째, 반려동물 사체처리의 회수체계개선, 화장시설 확보 등 공공서비스의 확대. 셋째,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여 환경·위생성 확보 및 테마파크, 애견 카페 등의 차별화된 공간 활성화와 치료도우미를 통한 활용가치 극대화. 넷째, 반려동물 보험, 엔터테인먼트 산업, 장묘업의 신산업의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

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주장함.

- 황원경(2015)는 국내외 반려동물보험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시기 진입, 1인 가족의 증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반려 동물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것이며,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향후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해소에 대한 소비자 니즈는 증가할 전망이다.
 -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는 반려동물보험의 확산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임. 단종보험대리점의 경우 현장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보험가입의 접근성 및 적시성이 높아지고, 판매 채널의 책임성이 확보될 뿐 아니라 전업대리점에 비해 낮은 판매수수료로 보험 상품이 제공될 전망으로 나타남.
 - 보험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는 반려동물보험의 상품라인업을 확충하고, 금융소비자의 니즈와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시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반려동물보험의 가입률 저조 원인으로 ‘고객 인식 부족’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인식 제고를 위한 마케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영대(2016)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음.
 -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실태 및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가칭 ‘반려동물산업 육성법’에 대한 법률안을 제시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 및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함.
 -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의 분석에는 전통적 영역과 새로운 영역으로 나누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별로 조사하였음. 또한, 반려동물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선진국가별로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제시함.
 - 가칭 ‘반려동물산업 육성법’의 활용방안으로 공청회의 개최와 정책 고객화를 주장함. 반려동물 산업의 조화로운 육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시된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제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국내 조직진단
 - 국내 중앙정부,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관련 행정단위별 업무현황 분석
 - 현행 동물보호 복지 정책 운영 체계 분석
 - 조직별 수행기능, 인력배치 현황 조사
 - 국내 여건에 따른 동물보호 복지 관련 업무량 분석

- 해외 사례 분석
 - 중앙·지방 정부 및 전문기관을 포함한 국가 동물보호 복지 정책 운영 체계 분석
 - 주요 선진국 동물보호·복지 정책 및 세부 프로그램 조사

- 적용 방안 마련
 - 선진국 사례와 국내 여건 비교 분석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 설정
 - 필요 업무 도출과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인력 소요 산출
 - 기관 간 업무체계 개선방안 마련

- 연구대상 동물
 - 동물은 크게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원 동물, 야생동물 등으로 나뉜.
 - 본 연구에서 동물보호·복지 업무와 관련된 분석대상 동물은 반려동물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음.

2. 연구방법

- 국내 조직진단: 국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기구에 대한 관련 자료 조사와 관

련 업무 담당자 의견 조사

- 중앙부서 조사
- 광역·기초 지자체 조사
- 민간기구 조사
- 관련 업무량 분석 및 향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 개편 방안 모색
- 국내 조직진단의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음.
 - 심층면접(FGI: Focusing Group Interview)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작업강도, 작업내용, 향후 조직개편 방향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필요할 경우,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하고 대면조사를 통해 심층 면접조사를 보강함.
 - 직접 대면조사가 어려운 여우, 전화를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함.
 - 기타 기관에서 발간하는 여러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함.

- 해외 사례 분석: 문헌, 온라인 및 현지 전문가 등을 통해 선진 사례 분석
 - 문헌 조사를 통한 해외 사례 자료 조사 및 분석
 -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해외 사례 자료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전문가 활용을 통한 해외 선진 사례 분석

- 적용 방안 마련: 전문가 협의를 통한 정책 방안 도출
 - 관련 공무원 의견 수렴
 - 학계 의견 교환
 - 동물 보호 관련 단체 및 협회 의견 수렴

제 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관련 행정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정책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한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
- 합리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증가

2. 활용방안

- 동물보호·복지 업무 확대에 따른 업무소요량 파악
- 동물보호·복지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진단과 분석
- 중앙 및 지방정부 동물보호·복지 전담 조직 확대 및 소요인력 확보 근거 자료 활용

제 2장 동물보호·복지 산업 현황 & 정책 추진 동향¹⁾

제 1절 산업 현황

□ 동물의 분류

- 이 연구에서는 동물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원 동물)로 구분하였음.

– 주된 연구 내용은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추었음.

1. 개요

가. 반려동물

□ 정의

-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하였음.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됨. 개·고양이·새 등의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반려동물로 부르도록 제안하였고 승마용 말도 여기에 포함됨.²⁾ 국내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함.

1) 이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2016.12)외 부서 내부자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2017)의 자료를 인용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임.

2)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관련산업의 규모

- 2010년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는 약 2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지인배, 2017). 2020년에는 약 5.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농협경제연구소, 2013).

표 2-1. 한국 애완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2010년)

단위: 억 원, (%)

사료	보건·의료	용품	보살핌	기타	계
6,650 (33)	6,247 (31)	4,030 (20)	2,015 (10)	1,209 (6)	20,150 (100)

자료: 지인배(2017) 재인용.

나. 농장동물

□ 정의

- 인간이 고기, 알, 우유, 털 등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키우는 가축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 포함)·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함.

□ 축산업의 규모

- 통계청 기준 2015년 축산업 생산액은 19조 1,300억 원임. 주요 축종별 생산액을 보면, 한우 4조 4,400억 원, 육우 2,700억 원, 돼지 6조 9,700억 원, 우유 2조 2,900억 원, 닭 1조 9,100억 원, 계란 1조 8,400억 원, 벌꿀 3,600억 원임.

다. 실험동물

□ 정의

- 의학·약학·수의학·축산학 등 생물학 연구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로 보통은 실험목적에 맞도록 생산됨. 반응에 대해 균일한 질을 가지는, 즉 유전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동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일반적으로 마우스·

랫 · 기니피그 · 햄스터 · 토끼 · 개 · 고양이 · 원숭이 · 돼지 · 염소 · 닭 및 그 알 등이 알려져 있음. 특히, 특정 병원체의 감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증명된 SPF(specific pathogen free animals)동물이 대량 육성되고 있음.³⁾

라. 동물원동물 (자료보완)

□ 정의

- 동물원에서 인간에게 공연, 전시, 관람 등을 목적으로 키워지는 다양한 동물들을 의미함.

마. 야생동물

□ 정의

- 산과 들에 저절로 나서 자라는 동물로 새, 사슴, 물고기, 다람쥐 뱀 따위를 의미함.

3)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2. 반려동물 관련 산업 현황

가. 반려동물 생산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 800~1,000개의 반려동물 번식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생산자협회는 2,000~3,000개,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3,000~4,000여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6년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업체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함.
 - 조사 내용은 ① 반려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② 사육마릿수 및 종사자 수, ③ 사육형태, ④ 사육방식, ⑤ 동물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 등임.
- 농식품부의 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 생산업체는 708개소였으며, 이중 지자체 신고업체 수는 237개소로 33.3%를 차지하였으며, 66.7%인 472개소가 미신고 업체였음.
 - 이들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마릿수는 총 79,716마리로 업체별 평균 113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반려동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수는 1,102명으로 업체별 평균 1.56명으로 나타남.

표 2-2. 반려동물 생산업체 현황

단위: 개소, (%)

전체 생산업체	신고업체	미신고업체
708(100)	236(33.3)	472(66.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2016.12.14.

- 291개소(41.1%)의 업체가 축사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548개소(77.4%)는 케이지에서 개별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됨.

나. 반려동물 유통 현황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판매업체수는 3,961개소이며, 동물수입업체수는 32개소, 동물생산업체수는 406개소, 동물장묘업체수는 24개소임.

표 2-3. 동물 관련 등록 업체 수(2017.6.14 기준)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3,961	32	406	24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다. 반려동물 사료산업 현황

-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규모는 2012년 2,500억 원에서 2016년 4,6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반려동물 사료 생산업체수는 2005년 650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320여 개, 2015년 2,000여 개로 추정됨(황명철 외 2013, 한국펫사료협회).
- 반려동물용 사료 수출량은 2011년 5,094톤에서 2016년 6,613톤으로 연평균 5.4% 증가하였으며, 사료 수출액은 2011년 1,257만 달러에서 2016년 1,352만 달러로 연평균 1.5% 증가하였음.
 -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며, 2015년 이후 인도네시아, 홍콩, 가나, 베트남, 미국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음.

표 2-4. 반려동물사료 수출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중량(톤)	5,094	6,111	4,642	6,421	6,488	6,6136
금액(천 달러)	12,565	15,806	10,478	13,305	12,936	13,518
단가(달러)	2.47	2.59	2.26	2.07	1.99	2.04

자료: 관세청.

- 반려동물용 사료 수입량은 2011년 3만 6,308톤에서 2016년 5만 3,292톤으로 연평균 8.0% 증가하였으며, 사료 수입액은 2011년 1억 113만 달러에서 2016년 1억 7,133만 달러로 연평균 11.1% 증가하였음.
- 주요 수입국은 미국, 호주, 중국, 프랑스, 태국 등이며, 최근에는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에서도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2-5. 반려동물사료 수입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중량(톤)	36,308	37,561	39,478	41,954	47,865	53,292
금액(천 달러)	101,132	112,692	124,419	132,866	147,945	174,327
단가(달러)	2.76	3.00	3.15	3.17	3.09	3.21

자료: 관세청.

라.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현황⁴⁾

- 수의업의 사업체 수는 2007년 2,945개소에서 2014년 3,640개소로 연평균 3.1%씩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5,992명에서 10,534명으로 연평균 17.9%씩 증가함.
- 사업체(동물병원) 당 종사자 수가 2007년 2.0명에서 2014년 2.9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비춰볼 때, 동물병원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의업의 매출액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매출액은 2007년 2,484억 원에서 연평균 17.9%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7,855억 원이었음.
- 수의업 사업체 당 매출액은 2007년 8,436만 원에서 2014년 2억 1,579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수의업 매출액에서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6.4%에서 2014년 83.4%로 증가함. 이 비율을 적용하면, 수의업 중 반려동물 부분의 매출액은 2011년 3,549억 원에서 2014년 6,551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4) 축산동물 및 애완동물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함.

표 2-6. 수의업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감률(%)
종사자수(명)	5,992	6,368	6,884	7,901	8,598	9,832	10,534	8.4
매출액(억 원)	2,484	3,289	3,422	4,645	5,942	6,976	7,855	17.9
사업체수(개)	2,945	2,970	3,018	3,208	3,323	3,521	3,640	3.1

자료: 통계청(kosis.kr. 2017.06.15.)-도소매서비스-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표 2-7. 수의업의 매출액의 세부 분야별 비중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반려동물	76.4	80.9	83.0	83.4
산업동물	23.6	19.1	17.0	16.6

주: 통계청 자료는 애완동물로 표기됨.

자료: 통계청(kosis.kr. 2017.06.15.)-도소매서비스-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마. 반려동물 보험서비스 현황

- 현재(2017년 5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판매 중인 회사는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임. 과거 LIG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 AIG 손해보험에서도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였으나 손해를 악화로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함.
 -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는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는 2013년 1,181건에서 2015년 1,816건으로 증가하였음. 2015년 기준 보험 계약 건수의 가입률은 동물등록제 등록 건수 대비 0.2%이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1,000만 가구의 0.02%에 불과함.
-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건수와 가입율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음.
 - 일본에서의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는 2015년 말 기준으로 106만 여 건이고, 영국과 미국의 보험 가입률은 각각 20%, 10%를 차지함.⁵⁾

그림 2-1. 반려동물 보험 판매 회사



주: LIG손해보험은 2015년 6월 KB금융그룹에 인수되면서 KB손해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체(2017.5.30.)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세미나』
 발표 자료-“애견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바.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현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은 총 111건으로 (사)한국애견연맹, (사)한국애견협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자체 기준에 의한 자격심사를 거쳐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은 없음.
 -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 유형은 크게 미용, 아로마, 관리·지도, 장례, 애견용품, 의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그쇼는 각 견종 특성의 기준이 되는 견종 표준을 가장 잘 갖춘 개를 선발하는 대회로서, 견종별 골격 크기, 균형, 털의 상태, 걸음걸이, 성격 등 견종의 우수한 특성을 가진 개를 선발하여 혈통을 유지하고 애견 문화의 질적 향상과 각종 애견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 도그쇼는 영국 켄넬클럽(The-Kennel Club)이 주최하는 크러프츠(Crufts) 도그쇼, 미국 웨스트민스터 켄넬 클럽(Westminster Kennel Club)이 주최하는 웨스트민스터 도그쇼 등이 있음.

5) 농림축산식품부(2016.12)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 소형견을 선호하는 국내 애견문화에 의해 반려견이 실내에서 생활함에 따라 목욕과 미용관련 서비스산업이 동반 성장하게 되었음. 또한 경력단절녀의 재취업 프로그램, 고교생의 특성화 교육 등으로 인기가 높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국내 반려동물 관련 미용서비스 자격증은 발급 기관에 따라 애견미용사, 반려동물미용사, 반려견미용사, 반려동물애견미용사, 그루머, 프로애견미용사 등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발행기관의 자격기준 및 숙련도에 따라 3급, 2급, 1급, 사범(강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⁶⁾ 사업체 수는 2009년 193개소에서 2014년 701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관련 종사자수 역시 2009년 307명에서 2014년 1,110명으로 증가하였음. 매출액은 2009년 80억 원에서 2014년 338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6)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기타산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은 반려동물을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반려동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애견미용서비스, 애견미용실, 애견호텔, 애견훈련서, 반려견훈련소, 반려동물목욕서비스, 반려동물장례식장, 반려동물화장터운영, 유기견보호센터 등이 포함됨.

제 2절 정책 추진 동향

1. 추진배경

-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반려동물 수와 보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 반면, 유기·학대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열악한 사육·관리환경을 고발하는 등 관련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확산되는 상황임.
- 관련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육성이 미흡한 상황임.
- 관련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의 육성대책’이 발표됨(‘16.7.7).
- 기 발표된 대책(7.7)을 중심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반려동물 관련산업 확대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필요

2. 추진경과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 생산·유통 관련 단체들과의 면담, 현장방문 등 통한 의견수렴
- ‘17년도 동물보호·복지대책 효과적 추진 위한 소요인력, 예산 확보
- 행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7년도 소요인력 3명 증원 및 동물보호·복지대책 예산 대폭 증액(‘16:17억원 → ‘17:93)
- ‘17년도 동물보호·복지대책 지원대상자 평가 및 선정(10.11~18)
 - 동물보호센터 건립(4개소 : 일반 3, 광역 1),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3개소), 동물복지운송차량 구입지원(3대), 동물보호문화축제(1개소)

- ‘동물등록제’를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 및 정책개선 추진 (‘17.9.12~10.7)
-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정책고객 입장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

- 제1회 축산수의분야 취업·창업박람회 개최 추진(‘17.10.11~12)
- 축산·수의분야 취업·창업희망자에게 고용정보 제공면담
 - 74개 기업이 참여하여 2,219명 참관 및 상담(6,541건 : 취업 5,976, 창업 565)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
- 지자체 담당자(10.11), 동물보호단체 및 생산자단체(10.14), 동물복지위원회(10.18), 국회 간담회(10.24)

3. 추진성과

-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율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5년 현재 약 979천 마리가 등록됨.
-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공중위생상 위해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 위해 3개월령 이상된 개 한정 실시함. 고양이는 ‘18년 1월부터 실시 예정임.

그림 2-2. 반려견 등록 추진현황



- 등록유형중 하나를 선택 등록하며, 내장형 칩 등록률이 증가하는 추세임.
 - 3 유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
 - 등록형태(누계): 내장형 칩(48%), 외장형 칩(42%), 인식표(10%)

- 유기·유실동물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기관, 처리 형태도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음.
-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직영보다는 대부분 위탁에 의존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직영은 28개소에 불과하고 위탁은 279개소에 이룸.
- 위탁보다 동물보호 수준이 나은 직영 동물보호센터 개소수 증가
 - 지자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입소부터 체계적인 질병관리와 보호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위탁에 비해 분양율이 높고 안락사율이 낮음.
- 점진적으로 소유자 인도·분양률은 증가하고 안락사율은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2-3. 유기동물 처리 및 보호센터 개소 수



- 지자체의 유실·유기동물 관리기준을 통일화하고,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R&D를 추진함.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상담센터(1577-0954) 단일화 및 지자체 동물 보호센터·고양이 중성화 운영지침 마련('16.3.4)
 - 고양이 불임 백신 개발 및 실용화 연구('16.6~'19.2월)
- 생산에서 사후관리단계까지 영업 종류를 세분화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 발전 토 대를 마련함.
- 동물판매업을 동물생산·수입·판매업으로 구분하고, 미등록 동물생산업체의 제도 권 편입을 위해 신고제로 전환함.
 - ('08) 등록(판매·장묘업) → ('12) 신고(생산업)·등록(수입·판매·장묘업)
- 업종 등록(신고) 개소 수 및 종사자 증가로 관련 신규고용 창출

표 2-8. 반려동물 관련 업태별 종사자 수

연도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개소 수	종사자 수	개소 수	종사자 수	개소 수	종사자 수	개소 수	종사자 수
2013	92	92	2,454	2,563	2	2	7	14
2014	114	114	2,706	2,843	4	4	14	26
2015	187	187	3,288	3,411	11	11	16	53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인식 개선, 반려견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위한 홍보 강화
-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 동물보호문화축제·동물사진전 실시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포스터·리후렛, 동물등록제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4. 문제점

- 처벌수준이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동물보호의식으로 동물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 국민정서에 반하는 잔인한 동물학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낮아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함.
 - 검찰에 동물학대혐의 고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의성 입증에 쉽지 않아 처벌실적이 미흡함.
 - 동물학대행위 고발/기소(건수): ('13) 160/70 → ('14) 271/131 → ('15) 287/115
- 매년 8만 마리 이상의 유가·유실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인 비용이 증가함.
- '15년 유실·유기동물 처리비용은 12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함.
 - 유실·유기동물 마리당 평균처리비용은 119천원으로 10억 원 이상 투입한 사도는 경기(33억 원), 서울(18억 원) 순임.
- 소유자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유가·유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6~8

월) 기간 중 전체 30% 이상 집중하여 발생함.

○ 동물등록 미 실시, 유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단속인력 부족으로 적발실적이 미흡하여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 미 등록/유기 단속실적(건): ('12)0/1 → ('13)2/2 → ('14)47/5 → ('15)203/4 → ('16.7)160/4

□ 열악한 사육환경, 생명경시, 상품 취급하는 일부 영업자로 인해 영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언론·동물보호단체 등은 대부분 생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강아지공장'이라고 폄하함.

○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이나 법령상 시설·운영기준이 없어 단속 실효성이 낮고 불법 생산업체의 확산 및 유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임.

- 경매장은 전국에 16개소(경기 10, 대전 3 등)가 운영 중이며 매주 약 5천 마리 이상이 경매되고 있어 연간 약 25만 마리가 전국 펫샵으로 유통되고 있음.

○ 판매업체를 통한 구입 직후 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신고제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동물생산업체가 다수 존재함.

○ 동물생산업체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 실시('16.6.15~9.16)

- ①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②사육마리 수 및 종사자 수 ③사육형태 ④사육방식 ⑤동물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

○ 반려동물 생산업체는 708개소이며, 이 중 신고업체는 236개소(33.3%), 미신고업체는 472개소(66.7%) 수준임.

- 미 신고사유는 신고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지자체에서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상황임. 신고대상 미 인지(266개소), 건축법 위반(121개소), 설치제한지역(60개소), 시설기준 미 충족(6개소) 등 사유로 미신고

제 3절 정책 추진 방향

1.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 사람과 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추진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동물을 보는 관점을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전환
-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동물보호법령에 맞춰 동물보호·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식 정착 도모
-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된 영업 관련 제도 실행의 내실화·고도화 추진
- 5개년 종합계획, 육성대책을 기본으로 정책환경 변화 발전을 감안한 인력·예산, 법률 제정 등 인프라 확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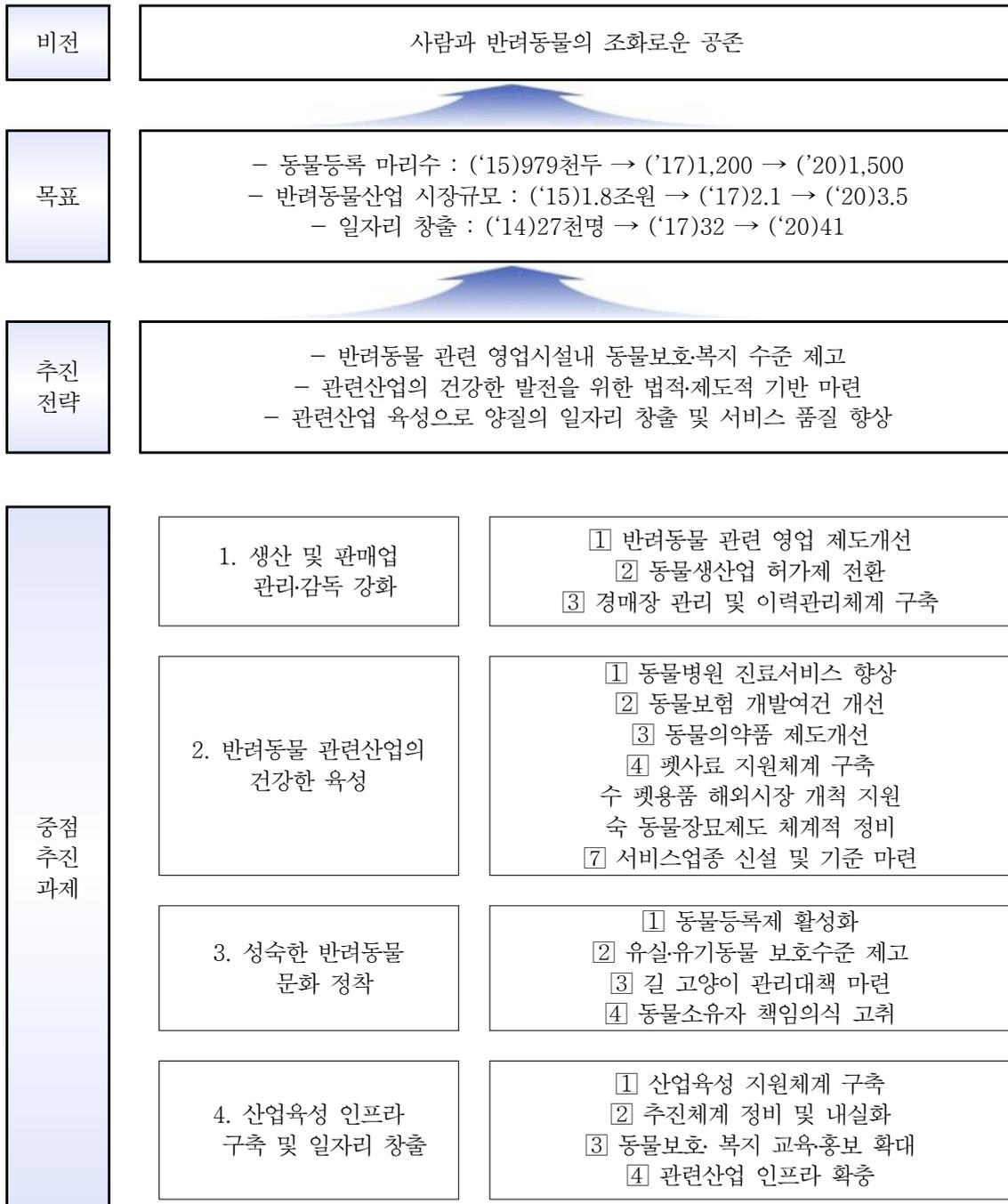
표 2-9. 5개년 종합계획 인프라 확보 추진 현황

기 존	전 환
동물보호법령 강화 - 현실적 여건 및 국민의식 제고 -	동물보호·복지 의식 정착 - 동물소유자·영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
영업 규정 마련, 동물등록 의무화 - 관련 제도, 관리체계 단계적 도입 -	관련 제도의 내실화·고도화 - 관련 시설 지원 및 관리체계 보완 -
유기·유실동물 보호수준 제고 -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추진 -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 인력·예산 등 정책추진 인프라 확보 -

- 국내·외적으로 높아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 유도

2. 정책의 비전과 목표

그림 2-4.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3. 세부 추진 계획

가.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1)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개선

- 동물 관련 영업자의 정의 명확화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법적 실효성 확보, 적법 영업자 보호를 위해 불법 영업 벌칙 강화

(2) 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 및 준법영업 유도

- 생산업 허가제 전환, 관리기준 강화로 동물보호·복지수준 제고
- 미 허가 생산업체 관리 강화로 불법영업 해소 및 제도권 편입 유도

(3) 경매장 관리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 경매장 시설·인력기준, 준수사항 마련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
- 판매방법 개선, 개체이력관리제 도입 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강한 육성

(1)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향상

- 동물병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진료서비스 품질 향상

(2) 동물보험 개발여건 개선 및 홍보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부작용 우려 해소 및 동물등록제 활성화 위해 개체인식 신기술 개발 추진('17)

- 신기술: 비문인식, 홍채인식, DNA 등
- 고양이 사육마리 수 증가에 따라 유실·유실 방지 및 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등록 대상 확대 추진
- 동물병원별로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의 범위를 고지·게시할 의무 부과 추진

(3) 동물의약품 제도개선 및 R&D 실용화

- 동물용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범위를 확대 추진
- 동물용의약품 시설현대화 및 해외개척사업 지원 시 반려동물 분야도 포함하여 추진('17)

(4) 펫사료 지원체계 수립

- 펫사료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정비 및 고품질 사료를 중심으로 생산·유통기반 확충 추진

(5) 펫용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가격 경쟁력과 제품력을 갖춘 반려동물 용품 개발을 통해 국내시장 점유율 및 해외진출 확대

(6) 동물장묘제도 체계적 정비

- 동물사체의 불법 소각·매립 방지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장묘제도 체계적 정비 추진

(7) 서비스업종 신설 및 기준 마련

- 서비스업을 규율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관리 강화 추진
-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추진(수의사법 개정, '16)
 - 제도 도입 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조인력(3천명)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가능(미국 약8만명, 일본 2.5만명)
- 반려동물산업 관련 민간자격자에 대한 자격증 관리실태 등을 강화하고 우수자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혈액을 채취하는 동물의 보호 및 관련 의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지침 제정 추진('17)

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1) 동물등록제 활성화

- 동물등록절차 개선, 시스템 보안을 통해 동물등록 활성화 추진
- 판매·거래유통과 동물등록유통 일치로 판매단계에서 등록 실시
- 소유자 의무사항 단속 실효성 제고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2) 유실·유기 동물 보호수준 제고

- 동물보호센터 지정, 지원 및 취소권한을 시·군·구까지 확대
- 유기방지 및 동물 입양·기증 활성화 위해 인수제, 보호기간연장 검토

(3) 길고양이 관리대책 마련

- 캣맘,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중성화 추진모델 마련·보급
-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동물보호 수준 제고 위해 불임백신 개발

(4)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 동물학대행위 처벌 강화 통한 범죄 예방 및 단속 실효성 제고
- 동물보호경찰, 펫파라치 도입으로 효과적인 동물보호 추진
- 동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위해 방지 위해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라.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1) 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 반려동물 관련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담법률, 조직 마련 추진
-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위한 R&D 기획단 구성·운영 추진

(2) 추진체계 정비 및 내실화

- 동물복지위원회 역할 확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전문성 강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MPS) 정비·보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3)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확대

-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실시
- 대국민 대상 동물보호·복지의식 함양 위한 행사·교육사업 확대

(4) 산업 인프라 확충

- 유기동물 보호·복지수준이 높은 동물보호센터 건립 확대 지원
-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건립 지원
- 생성통계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방식 등 개선

제 3장 관련 법령 검토와 조직 진단

제 1절 관련 법령 검토

1. 관련 법령 비교

- 동물보호·복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은 크게 대략 5개 정도로 나뉘(표 참조). 각 법령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소관부처가 각기 다름.
 - 관련 법령은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대략 10여개가 있음.

- 법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다르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수도 차이가 남. 동물보호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 비해 적은 인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동물보호·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동물보호법은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복지과) 내 축산환경복지과 관련인원 6명만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함.
 - 반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의사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내 총 37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함.
 -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내 총 12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함.
 - 기타 나머지 법들은 야생동물이나 자연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법령의 목적을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증진이
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임.
- 가장 핵심이 되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안전,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
어 있음. 반면, 다른 법령들은 동물의 관점보다는 인간의 관점에서 공중위생과
축산업 발전, 축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표 3-1. 관련법령 비교

법령	목적	소관부처
동물보호법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환경복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방역정책과&검역정책과)
수의사법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보전법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환경영향평가법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2. 동물보호법 검토

가. 법의 구성

- 동물보호법은 총 7장 4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 1장은 총칙, 제 2장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 3장은 동물실험, 제 4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장은 영업, 제 6장은 보칙, 제 7장은 벌칙으로 구성됨.
 - 이 중 제 2장은 주로 반려동물과 일부 농장동물에 관한 내용이고, 제 3장은 주로 실험동물에 관한 내용이고, 제 4장은 농장동물에 관한 내용이고, 제 5장, 6장, 7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나. 세부 내용

- 제 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등 모두 6개의 조로 이루어짐.
- 제 2장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16개의 조로 이루어짐.
 - 세부 내용은 사육, 관리, 운송, 도살, 수술, 구조, 보호, 반환, 분양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 3장은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으로 6개의 조로 나뉘며 동물 실험과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 4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3개의 조로 구성됨.
- 제 5장은 ‘영업’에 관한 내용으로 7개의 조로 구성됨.
 - 동물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의 영업에 관한 시설기준, 등록, 허가, 승계, 준수사항, 교육, 취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 제 6장은 ‘보칙’으로 7개의 조로 구성됨.
 - 출입, 검사, 감시, 포상금, 수수료, 청문, 권한의 위임, 정보공개 등의 내용임.

- 제 7장은 ‘벌칙’으로 벌칙과 과태료 등에 관한 3개의 조로 구성됨.

- 2017년 3월 이전에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으로 동물 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을 규정함. 이 중 동물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로 운영하고, 동물생산업은 신고제로 운영함.
 -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생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모두 “판매업”으로 등록을 받다가, 2013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으로 분리함.

- 2017년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영업의 종류를 기존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4가지에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가지를 추가하여 총 8개 업종을 세분화하였으며(제 32조),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
 -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생산업은 기존의 신고에서 허가로 변경되어 동물 생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제34조).
 - 이 외에도 영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교육(제37조),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및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제38조), 출입·검사(제39조), 불법에 대한 포상금(제41조) 등이 강화됨.

표 3-2. 동물보호법 세부 내용

장별 내용	조별 내용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제9조(동물의 운송) ○ 제9조의2(반려동물 전달 방법) ○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 제11조(동물의 수술) ○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제16조(신고 등) ○ 제17조(광고) ○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3장 동물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 제31조(인증의 승계)
제5장 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제33조(영업의 등록) ○ 제34조(영업의 허가) ○ 제35조(영업의 승계) ○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37조(교육) ○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6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9조(출입·검사 등) ○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 제41조의2(포상금) ○ 제42조(수수료) ○ 제43조(청문)

	○ 제44조(권한의 위임) ○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7장 벌칙	○ 제46조(벌칙) ○ 제46조의2(양벌규정) ○ 제47조(과태료)
부칙	○ 제1조(시행일)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 제4조(유기동물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 제5조(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 제6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

- 동물보호법은 대상 동물이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로 나뉘어져 있음.
 - 이 중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내 축산환경복지과의 업무와 연관됨.
 - 하지만, 실험동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의 업무와 연관됨.
 - 농장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내 축산정책과나 축산경영과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음.

- 동물보호법은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인증을 통하여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인간중심의 산업적 측면과 동물중심의 복지제도가 혼재해 있음.
 - 동물보호·복지의 담당부처가 축산업 발전과 축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주된 목적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적 측면이 아닌 ‘지각 있는 존재’로써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불분명함.

- 향후 정부가 계획하는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과 산업육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 혹은 새로운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 2절 조직 진단

1. 중앙 행정 조직

(1) 조직과 인력

-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조직은 크게 세 군데로 나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내에 담당 부서가 있음.

-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44명) 축산환경복지과(17명) 직원 중 6명이 전담하여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134명) 동물보호과 10명이 동물보호·복지, 인증, 실험동물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축산환경생명부(87명) 축산환경과(19명) 직원 중 4명, 영양생리팀(14명) 직원 중 1명이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3-3. 중앙 행정 조직 동물보호·복지 관련 부서와 인력 현황

중앙 부서 조직 명	부서	세부부서	관련 인력현황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 내용
농림 축산 식품 부	전체	1 차관보, 2실, 5국, 7관, 48과, 5개 소속기관		
	축산정책국 (총 44명)	축산정책과 (10명)		
		축산경영과 (17명)		
		축산환경복지과 (17명)	6명	동물보호·복지
	방역정책국 (총 37명)	방역정책과 (12명)		
		구제역방역과 (12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13명)				
농림 축산 검역 본부	전체 (1,152명)	3부 22과, 6지역 본부, 22사무소		
	동물질병 관리부 (134명)	동물보호과 (10명)	10명	동물보호·복지, 인증, 실험동물복지
축산 과학 원	전체 (총 299명)	2부(8과1팀), 3과, 1팀, 1센터, 3연구소		
	축산생명 환경부 (총 87명)	축산환경과 (19명)	4명	동물복지
		영양생리팀 (14명)	1명	반려동물 사료개발, 사양관리기술

(2) 세부 업무 내용

표 3-4. 중앙 행정 관련 부서 세부 업무 내용

기관	부서	세부부서	관련 인력현황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총 44명)	축산환경복지과 (17명)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 및 관련 행정규칙운용 ○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 수립·운영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운용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결산 대응 ○ 동물보호 교육·홍보사업 총괄 ○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총괄 ○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총괄 ○ 윤리적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 총괄 ○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복지 정책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대책 수립 및 총괄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 및 국가공인 관리 ○ 반려동물 관련 단체, 협회 지도·감독
		동물질병관리부 (총 134명)	동물보호과 (10명)	10명
농촌진흥청	축산생명환경부 (총 87명)	축산환경과 (19명)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사육시설 및 사양환경 표준화에 관한 시험·연구 ○ 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에 관한 시험·연구 ○ 동물복지형 시설 현대화 및 ICT 융·복합 스마트 팜 기술개발 ○ 축종별 농장동물복지 인증기준(안) 마련 및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영양생리팀 (14명)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사료개발, 사양관리기술

2. 광역 자치단체 조직(특별·광역시, 도)

(1) 조직과 인력

- 특별·광역시 7곳, 도청 9곳, 시군(도청소재지) 9곳에 대해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조사결과가 표 3-5에 정리됨.
- 특별·광역시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업무 관련부서와 인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서울만이 동물보호·복지 전담 조직으로 1과(동물보호과) 3팀(동물정책, 수의 공중보건, 동물관리)이 운영 중임. 총 인력은 13명이 배치됨.
 - 부산과 대전에 전담팀이 각각 1개씩(부산: 동물보호팀 3명, 대전: 반려동물보호TF팀 3명)이 운영 중임.
 - 나머지 광역시는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이 없으며 농축산 관련과에서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해당 업무를 보고 있음.
 - 특별·광역시별 산하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방역·위생 업무를 주로 하며 병행하여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고 있음.
 - 특별·광역시별 환경관련 부서에서 야생동물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특별·광역시별에 따라 산하 동물원이나 공원에서 동물원 동물 관련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고 있음.
- 도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업무 관련부서와 인력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만이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직으로 동물방역위생과 내에 3팀(동물보호팀 1명, 도우미견나눔센터팀 6명, 반려동물테마과크TF팀 3명)을 운영중임.
 - 나머지 도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전담 조직이 없이 대부분 축산관련 담당부서에서 축산관련 업무를 주로 하면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 도별 산하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방역·위생과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 환경관련 부서에서 야생동물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3-5. 특별·광역시 동물보호·복지 관련 부서와 인력 현황

분류	지역	부서 (국)	세부부서(과)	팀(계)	인력	기타 (겸업)	전담조직 유무	
							과	팀 (계)
특별·광역시	서울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동물정책	5명		○	○
				수의공중보건	4명			
				동물관리	4명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방역팀		방역&복지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원 동물복지		
	부산	산업통상국	농축산유통과	동물보호팀	3명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방역팀		방역&복지		
	대전	과학경제국	농생명산업과	반려동물보호 T/F팀	3명			○
		보건환경국	동물위생소 동물방역과			방역&복지		
	대구	창조경제본부	농산유통과	축산정책팀		축산정책& 동물복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방역과			방역&복지		
	인천	투자유치산업국	농축산유통과	동물관리팀		방역&복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복지		
		인천대공원사업소		대공원팀		동물원 동물복지		
	광주	일자리경제국	생명농업과	축산정책팀		축산정책& 동물복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방역과			방역&복지		
울산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축산담당		축산전반& 동물복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과			방역&복지			

표 3-6. 도 동물보호·복지 관련 부서와 인력 현황

분류	지역	부서 (국)	세부부서(과)	팀(계)	인력	기타 (겸업)	전담조직 유무	
							과	팀 (계)
도	경기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보호팀	1명			○
				도우미견 나눔센터팀	6명			○
				반려동물 테마파크TF팀	3명			○
	강원	농정국	축산과	동물방역팀		방역&복지		
	경북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	동물방역팀		방역&복지		
	경남	농정국	축산과			방역&복지		
	충북	농정국	축산과	동물보호팀		방역&복지		
	충남	농정국	축산과			방역&복지		
	전북	농축수산식품국	축산과	동물방역팀		방역&복지		
	전남	농림축산식품국	축산과	동물방역팀		방역&복지		
제주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동물방역팀		방역&복지			

주: 도별 산하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는 방역·위생과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표에서 생략함.

(2) 세부 업무 내용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

표 3-7. 서울특별시 전담조직 세부업무

분류	전담 조직명		주 업무
서울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보호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 각종 동물관련시설(동물원 등)의 동물복지 관련 기준 수립 및 대응 총괄 • 동물매개활동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단체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무 • 국회 및 시의회 관련 업무
		수의공중보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위생방역에 관한 사항 • 동물병원·동물의약품에 관한 사항 • 유통사료 성분등록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수의사 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 •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 • 동물보호시설 및 관련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 및 학대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제도정착에 관한 사항 • 축산·수산·곤충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축통계 및 사육현황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표 3-8. 부산·대전·경기도 전담조직 세부업무

분류	전담 조직명	주 업무
부산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농축산유통과 동물보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방역 • 동물보호팀 총괄 • 동물보호업무 • 동물복지 계획수립 동물복지향상 사업추진(애견공원 조성, 반려견 놀이터 설치 등) • 반려동물 복지, 산업관련 행사 지원,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발굴 육성 • 동물사랑 나눔뱅크 운영 • 동물보호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동물병원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수의 등 수의사 지도관리 • 동물보호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대전	과학경제국 농생명산업과 반려동물보호T/F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운영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 반려동물 문화·산업 육성 • 반려동물 산업박람회 추진 •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경기도	동물보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사업
	도우미견나눔센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우미견 및 유기견 입양 • 도우미견 후보견 진료 • 도우미견 나눔센터 청사관리 • 도우미견 훈련 및 관리 • 반려견 훈련 및 관리
	반려동물테마파크TF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테마파크 업무총괄 •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서울, 부산, 대전,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표 3-9. 전담조직이 없는 광역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세부업무

관련 부서	주 업무	병행업무
축산 관련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관련 사업, 축산관련 박람회 등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집유업 등 인.허가, 도축장, 가공업소, 판매업소, 학교우유급식사업, 축산물 위생 감시 계획 수립 및 지도·단속, 축산물 HACCP 업무 • 가축분뇨 자원화 • 축산물브랜드, 축산업허가(등록)제, 가축재해보험, 가축통계, FTA 피해보전 	
방역 · 위생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 수립 및 대책본부 운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및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 축산물 위생 관리 • 정부합동평가,농정업무평가,가축방역시책 등 평가관리 • 재난안전관리대책 추진(가축전염병분야) • 구제역 방역 및 예방대책 추진 •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업무 전반 • 축산물 이력제 관리 동물약품 약사감시 및 약품수거 축산차량 등록업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관리 • 구제역, AI 등 위기관리 대상 질병 방역 공수의 관련 업무 •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 광우병 검사업무, 소 결핵병 검진, 닭과 돼지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등 가축방역업무 • 군·구 가축방역관련 연계업무 조정·운영 • 농축산유통과 연계업무 역할분담 방역 추진 • 공중방역수의사 후견 및 복무관리 • 축산농가 방역홍보 및 교육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대상 소독지원 • 방역차량 및 소독방제차량 관리 • 매몰지 관련 업무 •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업무 •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 등 유통관리 • 수입가축 방역 사후관리 • 수의약사 및 동물병원 관리 •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관련 업무 • 종돈장 방역관리 및 우수종돈장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관리 업무기획 및 조정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업무 •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 동물보호소 운영, 동물보호 및 복지예산 편성 •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사업 방역홍보·물품구입 등 • 동물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기초 자치단체 조직(시·군·구)

(1) 조직과 인력

- 시·군·구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업무 관련부서와 인력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광역지자체를 보면, 서울은 25개의 구 중 5개, 인천은 10개의 구 중 2개, 부산은 16개 중 2개만 전담과는 없고 전담팀만 있음. 나머지 광역지자체(대전, 울산, 대구, 광주)는 전담과도 없고 전담팀도 없음.
 - 경기도는 7개 시, 전라북도 1개 시, 전라남도 1개 시에 전담과는 없고 전담팀만 있는 실정이며, 기타 나머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임.

-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담 부서가 없어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각 시·군·구의 경우에 대부분 농축산업 관련 부서에서 1명이 다른 업무들과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담당하고 있음.
 - 농업관련전반, 축산관련전반, 방역·위생, 동물보호·복지 등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 부하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관련 공무원들의 1~2년 내 퇴직비율이 타 부서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특히, 동물 관련 민원의 경우, 민원인들을 상대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조사됨.
 - 민원 관련 전화 업무량도 많아 타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표 3-10. 광역 지자체의 구 관련 부서 조직 현황

	지역(구)	전담과 여부	전담팀 여부	분류	지역(구)	전담과 여부	전담팀 여부	
서울	종로구			인천	중구			
	중구				동구			
	용산구		△		남구			
	성동구				연수구			
	광진구				남동구		△	
	동대문구				부평구		○	
	중랑구				계양구			
	성북구				서구			
	강북구				강화군			
	도봉구				옹진군			
	서울	노원구			부산	중구		
		은평구				서구		
		서대문구				동구		
		마포구				영도구		
		양천구				부산진구		
		강서구				동래구		
		구로구				남구		
		금천구				북구		
		영등포구				해운대구		○
		동작구		△		사하구		
		관악구		○		금정구		
		서초구		○		강서구		
		강남구				연제구		
		송파구				수영구		
		강동구		○		사상구		
		대전	동구				대구	기장군
중구				중구				
서구				동구				
유성구				서구				
대덕구				남구				
				북구				
울산	중구			광주	수성구			
	남구				달서구			
	동구				달성군			
	북구				동구			
	울주군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자료: 각 지역 구청 홈페이지

표 3-11. 기초 지자체 시·군 관련 부서와 조직 현황

	지역(시·군)	전담과 여부	전담팀 여부	분류	지역(시·군)	전담과 여부	전담팀 여부
경 기 도	수원시		△	경 기 도	용인시		○
	수원시 장안구				용인시 처인구		
	수원시 권선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영통구				파주시		
	성남시		△		이천시		
	성남시 수정구				안성시		
	성남시 중원구				김포시		
	성남시 분당구				화성시		○
	의정부시				광주시		
	안양시				양주시		
	안양시 만안구				포천시		
	안양시 동안구				여주시		
	부천시		△		연천군		
	광명시				가평군		
	평택시				양평군		
	동두천시			충 청 북 도	청주시		
	안산시				청주시 상당구		
	안산시 상록구				청주시 서원구		
	안산시 단원구				청주시 흥덕구		
	고양시		○		청주시 청원구		
	고양시 덕양구				충주시		
	고양시 일산동구				제천시		
	고양시 일산서구				보은군		
	과천시				옥천군		
	구리시				영동군		
	남양주시		△		증평군		
	오산시				진천군		
	시흥시				괴산군		
	군포시				음성군		
	의왕시				단양군		
	하남시						

	지역(시·군)	전담과 여부	전담팀 여부	분류	지역(시·군)	전담과 여부	전담팀 여부
충 청 남 도	천안시			전 라 남 도	목포시		
	천안시 동남구				여수시		
	천안시 서북구				순천시		○
	공주시				나주시		
	보령시				광양시		
	아산시				담양군		
	서산시				곡성군		
	논산시				구례군		
	계룡시				고흥군		
	당진시				보성군		
	금산군				화순군		
	부여군				장흥군		
	서천군				강진군		
	청양군				해남군		
	홍성군				영암군		
	예산군				무안군		
	태안군				함평군		
전 라 북 도	전주시		○	영광군			
	전주시 완산구			장성군			
	전주시 덕진구			완도군			
	군산시			진도군			
	익산시			신안군			
	정읍시			포항시			
	남원시			포항시 남구			
	김제시			포항시 북구			
	완주군			경주시			
	진안군			김천시			
	무주군			안동시			
	장수군			구미시			
	임실군			영주시			
	순창군			영천시			
	고창군			상주시			
	부안군			문경시			
				경산시			

	지역(시·군)	전담과 여부	전담팀 여부	분류	지역(시·군)	전담과 여부	전담팀 여부
경 상 북 도	군위군			경 상 남 도	창녕군		
	의성군				고성군		
	청송군				남해군		
	영양군				하동군		
	영덕군				산청군		
	청도군				함양군		
	고령군				거창군		
	성주군				합천군		
	칠곡군				춘천시		
	예천군				원주시		
경 상 남 도	봉화군			강 원 도	강릉시		
	울진군				동해시		
	울릉군				태백시		
	창원시				속초시		
	창원시 의창구				삼척시		
	창원시 성산구				홍천군		
	창원시 마산합포구				횡성군		
	창원시 마산회원구				영월군		
	창원시 진해구				평창군		
	진주시				정선군		
	통영시				철원군		
	사천시				화천군		
	김해시				양구군		
	밀양시				인제군		
	거제시				고성군		
	양산시				양양군		
	의령군				제 주 도	제주시	
함안군			서귀포시				

자료: 각 지역 시·군청 홈페이지

(2) 세부 업무 내용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

(광역 지자체)

- 서울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원산지동물관리팀
 - 공중방역수의사 관련 업무, 길고양이 TNR 업무,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
 -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수거업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
 -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등 인허가, 축산물 유통 관련 업무, 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수거업무
 - 가축방역업무

- 서울 동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동물관리팀
 - 유기동물, 길고양이 관리 동물 등록제, 동물판매업,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진단용 방사선 설치 및 사용신고
 - 축산물 인허가, 축산물 위생관리, 축산물 이력제, 가축전염병 예방

- 서울 관악구 일자리경제과 반려동물팀
 - 유기, 반려동물, 동물보호 관련 업무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수산/축산 GPS 관리 등 업무
 -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동물등록제사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길고양이 인식 개선사업

- 서울 서초구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동물복지팀

- 서울 강동구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동물복지팀

- 인천 남동구 재정경제국 농축수산과 동물관리팀
 - 동물관리팀 업무 총괄

- 동물관리분야 발전계획 수립
- 축산분야 발전계획 수립
- 가축 살처분 및 보상 평가반 운영관리
- 동물병원 인허가 및 감시 업무
- 동물용 방사선발생장치 등록 업무
- 동물보호감시관 업무(동물민원처리)
- 동물 생산판매업 인허가 업무

○ 인천 부평구 경제복지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 부산 해운대구 일자리산업국 경제진흥과 동물보호팀

○ 부산 기장군 창조경제국 친환경농업과 축산동물보호팀

- 축산동물보호팀 업무 총괄,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 총괄,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
-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승마장관리, 학생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육성 등
- 축산물 생산·유통 및 인·허가 업무: 축산물이력관리제, 축산물판매업
- 동물보호 및 동물병원 관련 업무: 동물등록, 유기동물 관리,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 길고양이중성화사업 및 급식소 설치
-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지원
-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 AI, 구제역, 돼지열병, 광견병 예방 등 방역업무, 소 브루셀라 검사 의뢰 및 농가 소득 지원
- 수의관련 업무: 공수의사 관리,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지원

(기초 지자체)

○ 경기도 수원시 일자리경제국 생명산업과 동물자원팀

- 동물보호, 동물병원 및 약국, 가축방역, 사료관리 등
- 가축방역
- 동물판매업, 사료제조업등록 및 사료관리 등
- 축산시책사업 추진

-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
 - 동물자원팀 업무 총괄, 동물보호, 반려동물관련사업, 사료성분등록, 동물병원

- 경기도 부천시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반려동물팀
 - 동물관리팀 업무 총괄, 부천축산물공판장 관련, 부천축산물복합단지조성, 길고양이급식소 설치, 반려동물 문화행사,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화상경마장 관련
 - 가축방역, 동물민원차량 운행 관리
 - 가축 질병 예찰 및 처리,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관리,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 허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동물판매업에 관한 사항,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 및 대행업체 관리

- 경기도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직속기관)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
 - 동물보호팀 업무 총괄, 예산, 회계,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 유기동물 진료 등

- 경기도 남양주시 경제산업국 유기농업과 동물보호방역팀
 - 가축 방역, 유기동물 관리, 축산환경 개선업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 및 유통(인허가 업무), 가축이력제

- 경기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팀
 - 동물보호 업무 총괄,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 진료 및 수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방역 등, 유기동물 진료·수술 보조 길고양이 TNR 사업

- 경기도 화성시 일자리경제국 축산과 동물보호팀
 - 동물보호관리사업(유기동물), 동물등록, 동물병원 인허가, 브루셀라증명발급

- 전라북도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팀
 - 동물복지팀 업무총괄, 동물복지 및 가축방역종합계획수립
 - 동물보호, 구제역 예방접종, 차량무선인식장치, 인허가(동물병원 등)

- 방역, 보조사업

○ 전라남도 순천시 안전행정국 환경보호과 동물보호담당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전반
- 수렵면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수렵장 운영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

표 3-12.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관련 부서	세부 업무 내역
농축산 관련 부서	<p><동물보호·복지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관련 업무 • 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 보호, 치료, 분양, 기증 등 •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 동물병원 및 가축관련 업무 • 유기동물 보호 계획수립 • 동물복지정책 수립 • 동물복지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 <p><동물보호·복지 제외 기타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축산관련 제반 업무 • 농·축산물 유통관리 • 도시농업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FTA피해지원,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 축산업등록, 한우ICT융복합사업 • 축산방역업무 전반,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 AI 방역업무 • 학교우유급식 등 • 축산물 위생관리, AI 매몰지 사후관리 등 • 친환경축산, 초지 • 조사료 • 동물의약품 유통 및 관리 • 축산물 위생 관리와 지도 • 도축, 가공 유통시설 지원 및 관리 • 기타 지자체 관련 업무

제 3절 주요 업무량 분석

1. 근거

- 법적근거는 동물보호법 제1조~제22조와 제32조~47조에서 찾을 수 있음.
 - 반려동물의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 및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
- 이에 광역, 기초 지자체는 동물등록 및 대행업체 지정·관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허가등록 및 점검,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대행기관 지정, 동물학대·유기행위 사건처리,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단속(신고포상금 포함),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 관련시설 건립, 맹견 관리,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 지역주민 민원 응대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2. 주요 업무

(1) 동물등록제 운용

-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시행 의무('14.1월~)
- '16년 말 기준 등록 반려견은 1,070천 마리로 전체 대비 20% 수준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병원 등 전국 3,450개소 지정 운영 중
-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확대(고양이 추가, '18.1월~)

(2)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동물을 구조보호하고 소유자 반환, 입양기증, 안락사 등 시행
- 반려동물 마리 수 증가로 구조보호되는 유실·유기동물 수도 증가

-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황 : ['14] 81.2천 마리 → ['15] 82.1 → ['16] 89.7
-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센터 281개소(직영 26, 위탁 250, 시설위탁 5)

(3) 반려동물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 유실·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동물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 교육홍보 등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16.12월 기준)

- 생산업 382개소, 판매업 3,778개소, 수입업 12개소, 장묘업 20개소 영업 중임.
 -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동물생산업 미 신고농가 약 1,500개소 이상 및 소규모 가정브리더 2,000개소 이상 추정
- 동물보호법 개정('17.3월)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4종 관리대상 포함
 - 지자체 실태조사('16) : 동물미용업 2,634개소, 동물카페 598, 동물호텔 855, 훈련 100 등

(5)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행위, 유기행위, 불법 영업행위,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 단속 등

(6) 반려동물로 인한 각종 민원 대응

- 길 고양이 개체 수 감소 등 민원 해소 위해 중성화사업 시행('16년 33천 마리)
 - 중성화사업(TNR) : Trap(포획) → Neuter(중성화수술) → Return(제자리방사)
- 공동주택 등 층간 소음, 맹견 물림 사고, 반려동물 사체 처리,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사육포기동물 인수 등

3. 관련 주요 통계

○ 반려동물 중 개는 약 270만 마리, 고양이는 약 63만 마리로 추정됨.

표 3-13. 반려동물 현황 (추정 마리)

단위: 마리

시도(유형)	개	고양이	소계
서울특별시		129,623	129,623
서울특별시(25구)	502,890	0	502,890
부산광역시			0
부산광역시(15구1군)	182,905	86,286	269,191
대구광역시			0
대구광역시(7구1군)	87,415	18,872	106,287
인천광역시			0
인천광역시(8구2군)	262,068	54,128	316,196
광주광역시			0
광주광역시(5구)	34,258	13,130	47,388
대전광역시			0
대전광역시(5구)	157,190	32,564	189,754
울산광역시			0
울산광역시(4구1군)	53,381	15,638	69,019
세종특별자치시	40,500	10,300	50,800
경기도			0
경기도(29시2군)	717,207	149,790	866,997
강원도			0
강원도(7시11군)	46,796	9,902	56,698
충청북도			0
충청북도(3시8군)	124,194	13,246	137,440
충청남도			0
충청남도(8시7군)	97,835	26,209	124,044
전라북도			0
전라북도(6시8군)	138,537	23,689	162,226
전라남도			0
전라남도(5시17군)	100,276	24,286	124,562
경상북도			0
경상북도(10시13군)	81,679	11,810	93,489
경상남도			0
경상남도(8시10군)	75,415	8,934	84,349
제주특별자치도			0
제주특별자치도(2시)	19,602	6,498	26,100
총계	2,722,148	634,906	3,357,05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내부자료(2017년 7월)

○ 반려동물 중 등록마리 수는 약 76만 마리, 등록대행기관은 3,370개소, 동물보호센터 수는 297개소에 이룸.

표 3-14. 동물등록 및 동물보호센터

단위: 마리, 개소, 개소

시도(유형)	등록마리 수(누계)	등록대행기관 수	동물보호센터 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25구)	247,883	845	5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15구1군)	70,068	188	1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7구1군)	54,389	159	1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8구2군)	71,178	165	10
광주광역시			1
광주광역시(5구)	16,108	90	0
대전광역시			1
대전광역시(5구)	44,327	98	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4구1군)	23,773	66	23
세종특별자치시	1,917	11	1
경기도			
경기도(29시2군)	39,972	935	63
강원도			
강원도(7시11군)	34,146	102	18
충청북도			
충청북도(3시8군)	24,203	82	12
충청남도			
충청남도(8시7군)	19,736	101	14
전라북도			
전라북도(6시8군)	21,461	92	27
전라남도			
전라남도(5시17군)	8,454	133	20
경상북도			
경상북도(10시13군)	11,484	59	11
경상남도			
경상남도(8시10군)	52,565	191	18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2시)	15,159	53	0
총계	756,823	3,370	29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내부자료(2017년 7월)

○ 8종류의 영업장 현황이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고 모두 약 1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이 중 동물판매업이 4,820개소로 가장 많고 동물미용업이 3,263개소, 동물위탁관리업이 1,324개소에 이룸.

표 3-15. 영업장 현황

단위: 개소

시도(유형)	동물 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운송업	동물 미용업	소계
서울특별시									0
서울특별시(25구)	1,477	4	1	0	61	188	0	324	2,055
부산광역시									0
부산광역시(15구1군)	246	1	4	1	61	93	20	254	680
대구광역시									0
대구광역시(7구1군)	195	0	1	1	25	43	0	119	384
인천광역시									0
인천광역시(8구2군)	296	1	31	0	62	213	0	528	1,131
광주광역시									0
광주광역시(5구)	127	0	8	1	39	71	0	56	302
대전광역시									0
대전광역시(5구)	142	2	12	0	10	80	0	116	362
울산광역시									0
울산광역시(4구1군)	112	0	4	0	11	36	0	78	241
세종특별자치시	11		2	1	8	12		34	68
경기도									0
경기도(29시2군)	1,201	1	107	10	321	392	3	1,088	3,123
강원도									0
강원도(7시11군)	130	0	10	0	18	20	0	73	251
충청북도									0
충청북도(3시8군)	121	0	33	3	16	24	0	71	268
충청남도									0
충청남도(8시7군)	187	0	49	3	28	50	0	156	473
전라북도									0
전라북도(6시8군)	118	1	25	1	15	8	0	83	251
전라남도									0
전라남도(5시17군)	116	1	75	0	6	26	0	72	296
경상북도									0
경상북도(10시13군)	79	1	17	0	12	16	0	31	156
경상남도									0
경상남도(8시10군)	230	0	13	1	28	30	0	131	433
제주특별자치도									0
제주특별자치도(2시)	32	0	2	0	13	22	0	49	118
총계	4,820	12	394	22	734	1,324	23	3,263	10,59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내부자료(2017년 7월)

○ 민원건수는 약 15만 9천건에 이릅니다.

-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뺏겨 담당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표 3-16. 민원건수

단위: 건수

시도(유형)	국민신문고	전화	방문 등 기타	소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25구)				
부산광역시				0
부산광역시(15구1군)	240	22,898	4,875	28,013
대구광역시				0
대구광역시(7구1군)	227	6,205	221	6,653
인천광역시				0
인천광역시(8구2군)	370	12,956	472	13,798
광주광역시	60	300	50	410
광주광역시(5구)	109	1,958	410	2,477
대전광역시	50	738	10	798
대전광역시(5구)	97	7,308	276	7,681
울산광역시	4	50	12	66
울산광역시(4구1군)	52	9,730	515	10,297
세종특별자치시	245	1,595	915	2,755
경기도				0
경기도(29시2군)	1,071	15,991	1,638	18,700
강원도	2		6	8
강원도(7시11군)	62	9,227	276	9,565
충청북도	10	50	10	70
충청북도(3시8군)	291	4,870	70	5,231
충청남도				0
충청남도(8시7군)	385	2,453	292	3,130
전라북도	10	600	10	620
전라북도(6시8군)	252	3,880	124	4,256
전라남도				0
전라남도(5시17군)	188	4,411	419	5,018
경상북도				0
경상북도(10시13군)	178	2,105	425	2,708
경상남도				0
경상남도(8시10군)	69	26,317	6,799	33,185
제주특별자치도	4	12	3	19
제주특별자치도(2시)	101	3,800	43	3,944
총계	4,077	137,454	17,871	159,40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내부자료(2017년 7월)

- 유실유기동물 구조건수는 8만 5천 건에 이르고, 동물보호법 단속건수는 1만 4천 건에 이르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마리 수는 3만 2천 마리에 이르며, 식용견 농장수는 2,50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표 3-17. 기타 유관 업무

단위: 건수, 건수, 마리 수, 개소

시도(유형)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	동물보호법 단속 건수	길고양이 (TNR)마리 수	식용견 농장 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25구)	8,648	102	8,524	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15구1군)	6,081	1,066	3,422	7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7구1군)	4,386	551	1,717	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8구2군)	5,567	4,382	1,146	6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5구)	2,904	144	405	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5구)	4,556	118	520	2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4구1군)	3,082	78	786	43
세종특별자치시	384	1,298	267	48
경기도				
경기도(29시2군)	17,561	1,430	10,339	543
강원도				
강원도(7시11군)	3,939	219	546	226
충청북도				
충청북도(3시8군)	3,859	18	720	198
충청남도				
충청남도(8시7군)	4,441	860	1,454	298
전라북도				
전라북도(6시8군)	3,672	1,464	807	213
전라남도				
전라남도(5시17군)	3,048	167	142	306
경상북도				
경상북도(10시13군)	2,203	26	41	254
경상남도				
경상남도(8시10군)	6,595	2,001	1,267	1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2시)	3,588	10	224	124
총계	84,514	13,934	32,327	2,5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내부자료(2017년 7월)

제 4절 심층면접(FGI) 분석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일시: 2017년 12월
- 조사대상: 지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의 업무 담당 공무원
-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 응답수: 총 87곳(광역자치단체 13개, 기초자치단체 74개)
- 주요 설문 문항
 - 행정조직 현황
 - 동물복지 업무 전담 부서 여부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 수행 업무에 대한 어려움 여부
 - 현재 인력 현황과 추후 소요 인력에 관한 사항
 - 새롭게 충원될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 업무의 작업강도
 - 향후 동물복지업무에 관한 조직개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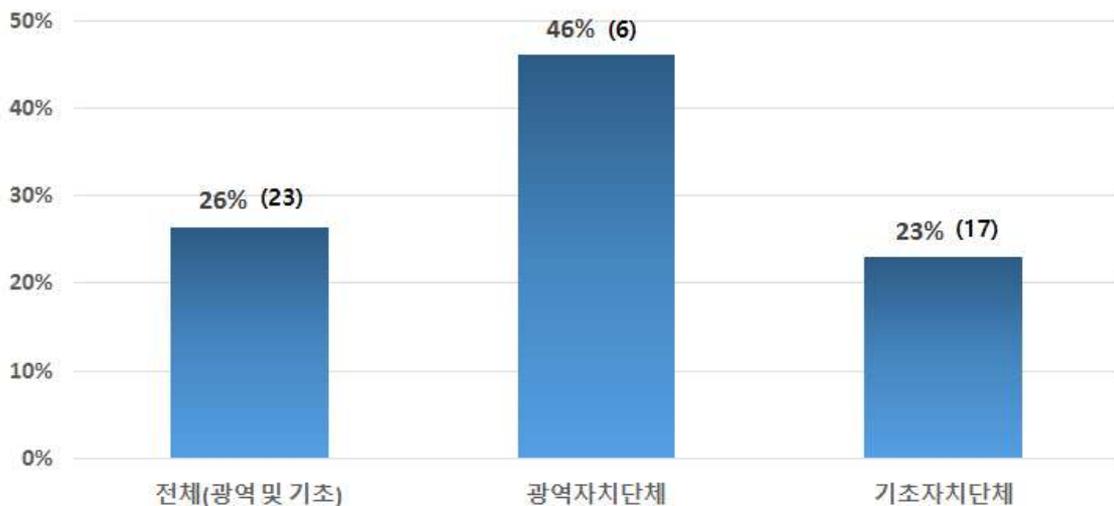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정리

(1) 전담 부서 여부

- 조사에 응답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87곳 중 소속된 부서에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곳은 총 23곳으로 전체 응답의 26%를 차지함(그림 3-1).
 - 조사에 응한 광역자치단체 13곳 중 전담부서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6곳으로 전체 응답의 46%를 차지함.
 - 조사에 응한 기초자치단체 74곳 중 전담부서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17곳으로 전체 응답의 23%에 불과함.

그림 3-1. 소속조직에 동물보호·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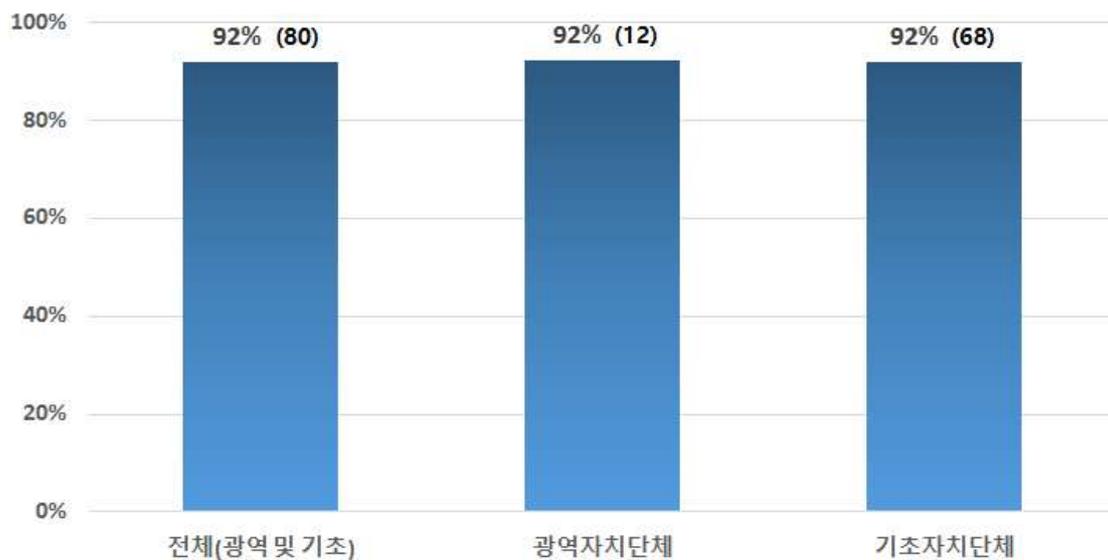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 수임.

(2) 동물보호복지 업무 수행의 어려움 여부

- 조사에 응답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87곳 중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향후 증가하는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총 80곳으로 전체 응답의 92%를 차지함(그림 3-2).
 - 조사에 응한 광역자치단체 13곳 중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2곳으로 전체 응답의 92%를 차지함.
 - 조사에 응한 기초자치단체 74곳 중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68곳으로 전체 응답의 92%를 차지함.

그림 3-2. 향후 증가하는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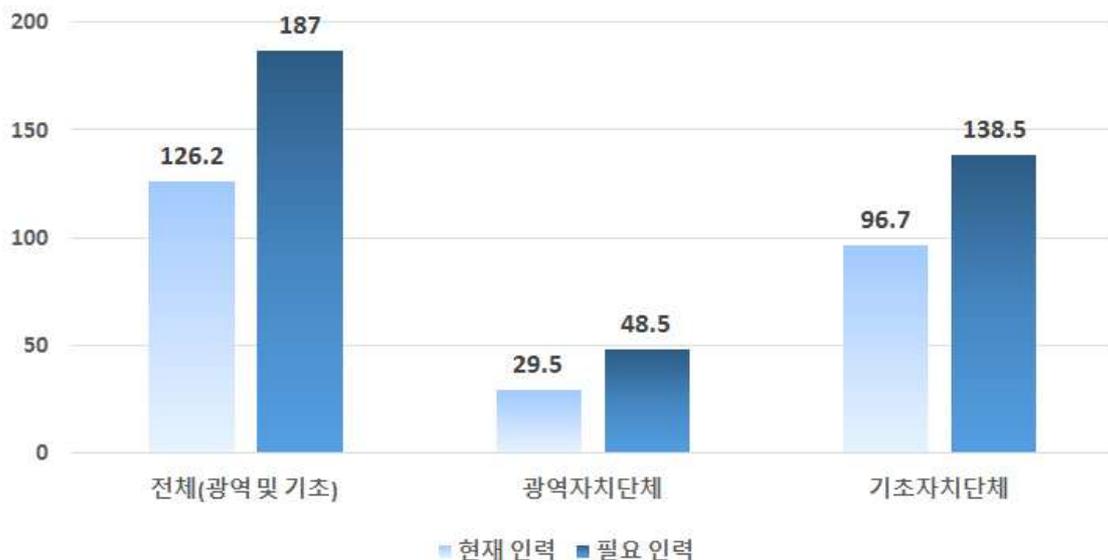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 수임.

(3) 현재 동물보호복지업무 근무 인원과 향후 필요(소요) 인력 조사

- 전술의 동물보호복지 업무 수행의 어려움의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한 자의 소속 부서에서 현재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맡은 인원과 향후 필요한 인력을 조사한 항목임.
- 조사에 응답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87곳 중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맡은 인원은 약 12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동물보호복지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의 수는 총 187명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3-3). 현재 인력보다 약 1.5배 정도 규모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조사에 응한 광역자치단체 13곳 중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맡은 인원은 약 30명으로 향후 필요한 인력의 수는 약 49명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인력보다 약 1.6배 정도 규모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조사에 응한 기초자치단체 74곳 중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맡은 인원은 약 97명으로 향후 필요한 인력의 수는 약 139명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인력보다 약 1.4배 정도 규모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3-3.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현 근무 인원과 향후 필요한 인력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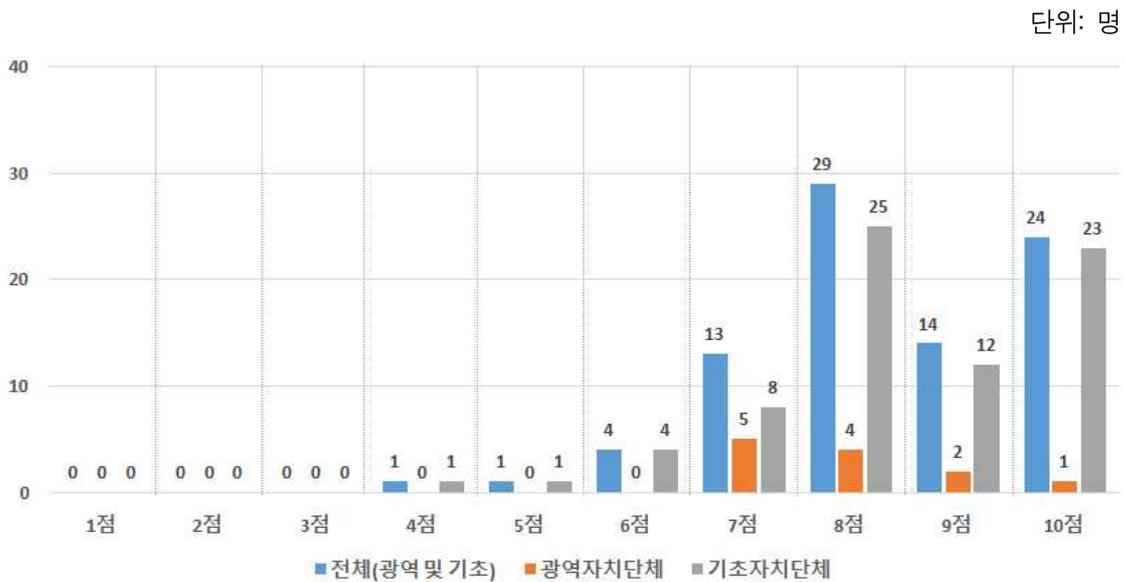
단위: 명



(4)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작업 강도

- 본 항목은 10점을 만점으로 일반 공무원의 업무 강도 평균 점수를 5점이라고 할 때, 점수가 증가할수록 동물보호복지 업무 강도가 강함을 의미함(그림 3-4).
- 전체(광역 및 기초) 응답자의 업무 평균 강도는 8.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은 7.9점,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은 8.5점으로 조사됨.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강도가 조금 더 높게 조사됨. 이는 전담부서 부재와 인력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조사에 응답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87곳 중 8점이라고 응답한 곳이 2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점이 24곳, 9점이 14곳으로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대부분이 동물보호복지의 높은 업무 강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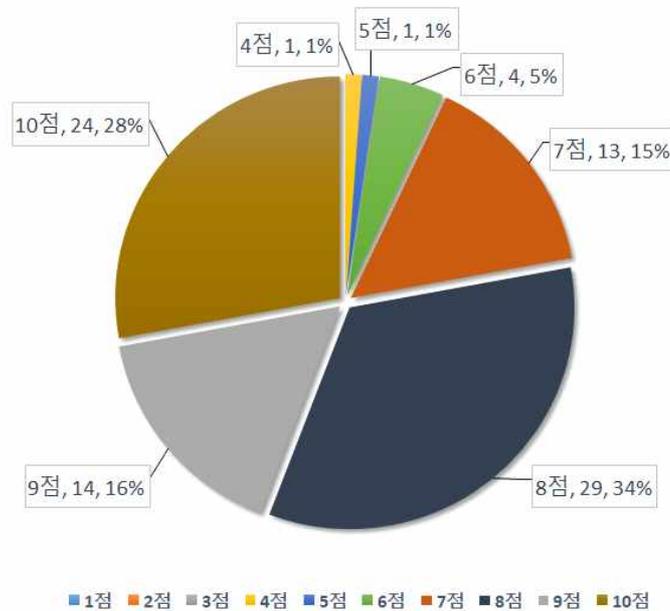
그림 3-4. 동물보호·복지 업무 담당자의 업무 강도별 응답자 수



- 동물보호·복지 업무 담당자의 업무 강도별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음(그림 3-5). 8점이 전체 응답자의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10점이 전체 응답자의 28%, 9점이 전체 응답자의 16%를 차지함.
- 전체(광역 및 기초) 응답자 중 업무강도가 8점 이상(8점, 9점, 1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8%로 대다수의 관련 공무원이 업무 강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이는 전담 조직의 부재, 인력부족, 동물복지 담당 인력이 타 업무와 겸행하는 등의 이유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5. 동물보호·복지 업무 담당자의 업무 강도별 응답 비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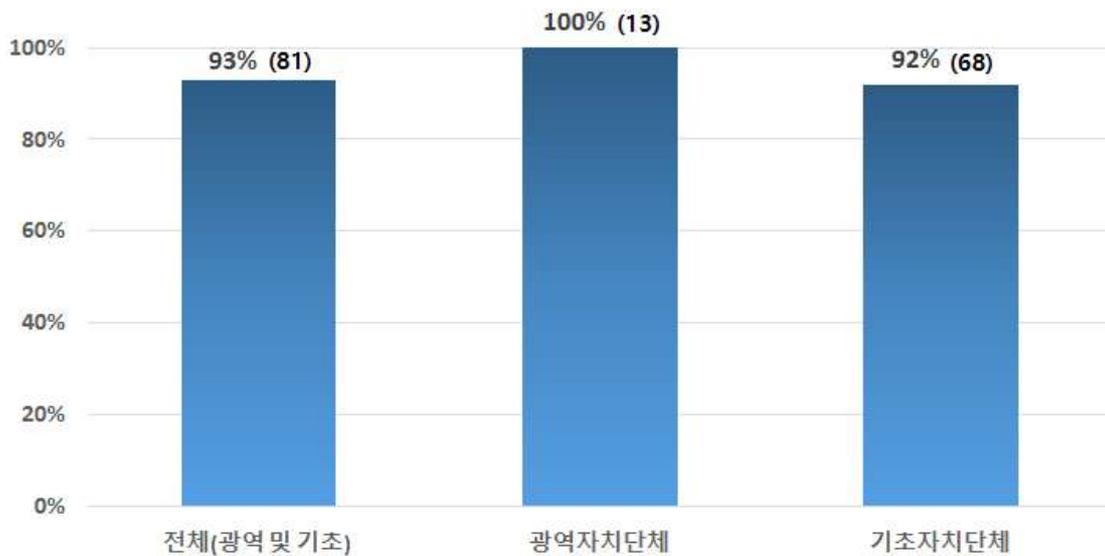


(5)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직확대와 인력충원 요구

- 조사에 응답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87곳 중 원활한 동물보호·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조직이 개편 혹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곳은 총 81 곳으로 전체 응답의 93%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3-6).
 - 조사에 응한 광역자치단체 13곳 중 13곳 모두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직이 개편 혹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조사에 응한 기초자치단체 74곳 중 68곳이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직이 개편 혹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의 92%를 차지함.
 - 동물보호·복지 관련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강도와 조직 개편과 인력충원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행정조직에 대한 올바른 조직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6.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직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명



(6) 향후 충원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

- 본 항목은 동물보호·복지의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서가 충원 인력이 배치될 경우 담당해야 할 업무에 대해 응답한 것을 정리한 것임.
- 광역자치단체는 향후 충원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함.
 -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 명예동물보호감시원 운영, 동물보호 관련 민원(심야, 명절, 공휴일, 전화, 국민신문고 등) 및 주민 간 갈등 관리, (광역)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동물학대 신고 민원 관리, 육견(전통시장 내) 등 관련 민원 해결방안 강구, '개 물림 사건' 등 최근 불거지는 사회 문제 대응책 고안,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동물보호 정책 발굴
 -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동물보호법 제도 및 위반사항 점검, 동물보호법 관련 시 조례 개정
 - 유기동물 관련 업무: 유기동물 민원상담 및 처리,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 유기동물 입양 후 관리감독(모니터링), 유기동물 구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 길고양이 관련 업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운영
 - 동물등록제 관련 업무: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관리감독, 2018년도 동물관련신고업소 신설에 따른 동물관련업소(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업 등) 등록 및 관리
 - 반려동물 관련 업무: 반려동물 축제 기획 및 운영, 반려동물 기반시설(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놀이터, 반려동물공원 등) 조성 및 관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확대 추진(타 시·도 우수 사례 반영),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사업,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 지도·단속
 - 축산동물 관련 업무: 축산동물 복지 업무 관리, 동물복지농장 활성화 및 지원
 - 기타: 동물보호업소 인허가 관리,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관리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담당, 실험동물 보호 및 관리, 도우미견나눔센터 전문훈련시설 조성사업 등 시설업무
- 기초자치단체는 향후 충원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함.

-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생활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상시 인력 보충, 주기적인 민원발생 장소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의 업무, 동물보호 정책 홍보 및 계도, 민원(전화, 국민신문고 등)처리, 동물복지 행사 및 사업 진행, 동물 관련 분쟁 해결(사육에 따른 소음, 악취, 배설물, 혐오감 등), 동물 보호 관련 교육(초등학생, 사육자, 비사육자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 실시), 동물보호·복지 업무 등과 관련된 수의직렬 채용 확대 방안 강구
-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법관련 인허가 업무, 동물보호법 관련 민원처리,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단속, 동물복지 관련 법령 홍보 및 교육 실시, 수의사법 및 약사법 관련 업종의 등록 허가 관리, 동물보호법 상 영업자 점검 등 관리, 동물보호법 신고포상금 업무 처리
- 유기동물 관련 업무: 유기동물 포획 및 수송, 유기동물 관련 단속 및 홍보 전담 업무, 유기동물 보호사업(유실·유기동물 보호사업), 동물병원 및 유관기관 협조유도를 통한 유기동물 분양의 활성화, 유기동물 처리 사업, 유기동물 분양센터 설치 운영 및 분양된 동물 모니터링 사업
- 길고양이 관련 업무: 길고양이급식소 설치 및 운영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관리, 길고양이 관련 주민의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길고양이 관련 주민간의 이견 조정
- 동물등록제 관련 업무: 2018년도 동물관련신고업소 신설에 따른 동물관련업소(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업 등) 등록 및 관리, 등록 동물을 대상으로 한 목줄 미착용·분변 미수거 등에 대한 단속 및 행정 처분 업무, 등록 동물을 대상으로 한 등록 미실시 단속 및 행정 처분, 동물등록 및 동물관련 인허가 담당 업무, 동물등록 활성화 및 등록상황 관리(지방 지자체 등의 동물등록 대상 전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로인해 등록 대상의 동물의 정확한 수요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등록된 동물의 정보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인허가 업무
- 반려동물 관련 업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관리, 반려동물 문화정착 단속업무, 반려동물 학대 방지 캠페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확대 추진(타 사·도 우수 사례 반영), 반려동물 관련 축제·문화교실 개최, 반려동물 케어 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 인식제고 홍보 및 에티켓 교육, 반려동물 전문지

- 식을 갖춘 인력의 분양 및 입양 업무, 저소득층 반려동물 관련 지원 사업
- 축산동물 관련 업무: 축산동물 복지 업무 관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관리, 사료제조업, 가축 방역업무(상황근무, 역학조사, 유사시 현장투입)
- 기타: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등의 인허가 업무

(7) 향후 조직개편 방향

- 동물보호·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 혹은 팀 구성의 필요
 - 동물복지·보호업무는 크게 영업장 관리, 동물보호센터 관리,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TNR 사업, 기타 지자체별 자체사업 등의 행정업무와 동물학대신고, 동물등록제, 단속 및 민원처리 등의 현장업무로 나눌 수 있음. 증가하는 이들 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됨.
 - 다른 업무와 병행하지 않고 업무를 분리하여 동물보호·복지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전담부서 신설 후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축산사업 등 축산·수의업무와 분리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현재 가축재해, 가축재해보험, 가축통계, 한우경쟁력사업, 양봉농가 지원 사업, 국공유재산 관리, 방역약품 지원 사업, 축산차량등록제, 공수의 관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광견병 및 구제역 예방접종, 축산물위생업소 인허가, 축산물 위생점검, 축산물수거검사 FTA 피해보전사업, 유기질비료지원, 폐영농 자재 수거 사업, 양돈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 돼지 소모성질환 방역 등의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AI 업무 등 가축질병이 현안과제로 떠오르는 방역대책기간에는 동물보호·복지업무를 함께 소화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물복지 혹은 보호팀이 신설되어 심층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보다 동물복지·보호를 전담하는 과가 많음. 전담 부서가 없는 경우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유관 부서에서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전담부서를 확대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천만 인 시대에 맞추어 맞춤형 축산 및 동물복지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 최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구조에 119 구조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려

운 상황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구조업무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이므로 전문포획팀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예. 2~3개 시·군 당 1개 이상
의 포획전문팀 신설 필요).

- 시·군·구의 규모가 작아 전담부서 편성이 제한되는 경우 인근 지역과 통합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남.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한 뒤, 센터 내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 전담부서를 개설하
여 운영하는 방안도 제기됨.
- 대통령 공약사항과 더불어 반려동물관련 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
호 및 복지에 관한 요구와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업무량
도 대폭 증가함. 반면 관련 인원은 전혀 보강되지 않고 조직부서의 인식부족
등으로 자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예산
과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 부서 배치와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의 전문화 및 과중
해결

- 동물관련 등록제, 현장 단속과 민원 전담팀, 동물복지팀 등으로 업무를 분리
시켜 업무의 전문화를 높이고 과중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동물 자체를 무서워하거나 혐오감을 가진 공무원도 상당 수 많아 현장 출장을
나갈 경우 대형견, 길고양이 등 동물을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청의 경우,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공무원이 매우 부족한 실
정인 것으로 나타남. 가축방역(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동물용
의약품 취급 규칙, 사료관리법, 곤충육성관련 법, 방사선취급규칙, 동물보호법
업무를 모두 병행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타남.
따라서 전문직렬(수의직) 채용 확대방안을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의 포상금 제도 및 2018년도 동물관련신고업소 신설에
따른 동물관련업소(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업 등) 추가 등 법 개정으로 인
한 인력의 수요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동물보호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길고양이 TNR수술, 가축
전염병 등)의 전문행정인 채용 필요성도 제기됨.
- 직영 유기동물보호소를 설립 및 운영 시에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전담공무원

- 이 필요하며, 시간선택제 및 기간제 직원이 다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 대부분의 동물보호·복지 업무 담당자가 업무강도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최대 2년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순환근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 현장업무의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 감독 업무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도 수행 가능하다 판단되며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지도원’에 준하는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단속 및 지도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민간 법인 신설의 의견도 제기됨.
 - 동물보호 지도 단속 전담반을 자치구에서 편성 및 운영하기는 어려우므로 시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예. 5개 자치구를 권역으로 하여 주 1회 순회 지도 단속 실시)도 제기되었음.
- 소음 등 법적으로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없는 현장민원처리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법의 개정사항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동물보호·복지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 민원 대응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현장출장에 경찰의 동행이 필요하거나 직원이 여러 명 동행되어야 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특히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법의 위반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문제가 떠오름. 필요 시 경찰과 협의하여 함께 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반려견으로 인한 층간소음과 같은 생활불편으로 주민간 감정이 고조된 상태로 민원이 제기할 경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구축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이웃분쟁조정센터에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과 반려견주 모두가 센터에 방문을 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동물보호·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중재에 나서야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 길고양이에 관심이 많은 주민(예. 캣맘)과 혐오하는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야생동물 혹은 야생화 된 유기견의 포획을 반대하는 주민과 공포감, 혐오감 및 아이들의 안전 차원에서 포획을 찬성하는 주민 간 갈등의 중심에 있음.

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민원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민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법농장, 소음, 캣맘, 동물사업 관련 등으로 분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특성상 민원이 많기 때문에 출장 근무의 경우 대직자가 업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 에 따라 단속 및 관리감독 강화로 인해 잦은 출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 처리가 더뎠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응급동물병원과 계약하여 관련 법령과 상황을 초월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도 나타남.

○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 규제

- 반려동물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소음 및 진동관리법에 이를 명시하여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애매한 경우(예.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품종을 정확히 명시) 구체적인 기준을 설립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과 관련된 분양업체에서 동물등록 후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유기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규제를 통해 유기동물을 예방해야 함.
- 무분별한 동물사육이 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의 법적 규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려견주도 일정교육을 이수하여야 입양이 가능토록 하여 동물보호업무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민원에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해야 함.

제 5절 국내 주요 민간 기구

1. 동물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미션

-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마음
- 배려와 생활방식의 변화
- 동물의 대변자
- 과학과 생명윤리의 합리적 기반
- 문화로 정착되는 동물보호
- 협력과 성실

○ 동물자유연대 프로그램

표 3-18. 동물자유연대 프로그램 주 내용

프로그램	주 내용
반려동물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회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동물학대 예방과 감시활동 전개 - 중성화수술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동 동물병원 운영 및 개와 고양이 개체수 관리 - 캠페인 전개를 통한 반려동물 보호자 및 잠재적보호자 책임성 강화, 유기동물 발생예방 - 바른 돌봄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반려동물의 복지향상
농장동물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동물의 사육, 운송 및 도축에서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 및 입법 추진 - 동물운송차량의 과속운행, 밀집운송, 비인도적인 도구 사용의 금지 - 암태지의 스톨사육과 암탉의 배터리케이지 사육, 동물의 신체훼손 금지 캠페인 전개를 통한 비인도적 산업 관행을 종식 - 주요 유통업체 동물복지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동물 복지형 축산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인식 강화

개·고양이 도살 금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인한 개·고양이 도살 금지 캠페인 전개를 통한 지지자층 확대와 다양화 - 사육 및 도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객관적인 동물 학대 기준에 대입하고 알림으로써, 도살을 사회적 문제로 확산 - 개 도살 감소 유도, 도살 금지 입법 추진
실험동물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의 입법 추진 - 동물을 이용한 임상 실습과 교육에서 치료 목적 외 살아있는 동물 이용의 금지 - 화장품의 동물실험금지
동물원·동물쇼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이 유흥과 오락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며, 영화·광고의 동물출현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학대 요인 방지 - 소싸움 금지를 위한 지지자 결집 - 동물원 동물 복지 캠페인과 입법 추진

자료: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www.animals.or.kr)

○ 동물자유연대 인력

- 서울본부, 부산지부, 반려동물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총 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서울본부에는 교육본부(2), 정책국(7), 운영지원국(2), 모금홍보팀(4)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반려동물복지센터에는 반려동물복지센터 총괄(1), 시설/동물학대 총괄(1), 결연·입양·사무(2), 동물훈련(1), 동물학대(1), 시설/동물돌봄 관리 및 실무총괄(1), 시설/동물돌봄 관리(1), 동물돌봄관리(9)로 구성되어있음 (2017년 8월 28일 기준).

2. 한국동물보호협회

- 한국동물보호협회는 동물학대행위방지, 유기동물보호조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보존 등 동물보호로 우리사회 정서함양과 박애정신 구현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 4일 설립 허가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재단법인임.
- 현재 고양이 제1보호소, 고양이 제2보호소, 강아지 보호소로 총 3개의 동물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음.

3. 사단법인 나비아사랑해

- 사단법인 나비아사랑해는 사람과 길고양이들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어려움에 처한 길고양이들의 구조, 치료, 임시보호, 입양 그리고 중성화 수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현재 1대표자, 2상근자, 1반상근자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인원은 총 18명임.
- 나비아 사랑해 1과 2, 두 센터를 운영 하면서 약 100여 마리 이상의 유기고양이들이 입양을 기다리며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음.
- 이리온 동물병원과 나비아 1:1 매칭 그랜트 "희망이 프로젝트"를 2014년 2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23번째까지 학대와 방치 속에 있던 희망이들이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입양을 갔으며, 현재 23번째의 희망이가 치료 중임.
- 보호소 근처를 시작으로, 봉사자들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TNR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길고양이들의 개체수 조절에 힘쓰고 있음.
- 나비아 사랑해는 2015년 서울시와 함께하는 도심의 가족공원의 길고양이 관리정책에 참여 하여 "용산가족 공원"에 급식소와 TNR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매해 정기검진 사업을 추진함.
- 정기적 바자회를 통해 나비아와 그 외 도움이 필요한 개인단체에 물품을 전달함.

4. 동물보호시민운동단체 케어

- 케어는 동물들을 돕고 싶은 열정이 넘치는 활동가들이 모여 2002년 설립된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동물권단체인 '케어'와 동물보호소운영단체인 '뽕큐애니멀스'로 각각의 활동특성을 살리고자 분리, 독립운영하며 서로 지원을 하고 있음.
- 케어는 세상 모든 동물들의 고유한 존엄성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력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 알리고, 이 여론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음. 아울러 동물들을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오용, 남용, 과용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모든 인간위주의 권력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성숙하고 인도적인 시민의식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고 있음.

○ 케어의 주요 역할

- 첫째, 우리 사회의 동물권 여론 주도
- 둘째, 시민들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 변화
- 셋째, 대한민국 주요 동물보호법 개정
- 넷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동물구호활동
- 다섯째, 동물권 문화를 주도
- 여섯째, 전문 활동가들을 양성
- 일곱째, 동물운동 영역을 세분화, 전문 활동 지원

○ 케어의 활동

- 후원안내: 케어는 시민단체(advocacy)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의 독립을 추구함. 정부지원 없이 순수 후원금 및 회비로만 운영됨.
- : 케어는 공동구매 등의 수익활동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음.
- 구조활동: 집단으로 아사되던 순창의 소들, 꽃마차를 끌며 죽어가던 말들, 도축장으로 몰래 팔려가던 동물원의 동물들을 구호해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게 긴급 구호활동을 펼침.
- 입양센터 운영: 케어는 국내 최초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를 만들어 운영해 왔으며, 강아지 공장 등의 문제를 시민에 알리고 직접 보이콧하고자 펫샵의 메카인 중구 충무로 옆 대로변에 국내 최초로 입양센터를 설립하여 반려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음.
- 학대고발: 동물 관련 기관들이나 동물을 이용한 업체 및 시민들의 동물학대에 대한 고발을 통해 케어가 조사하고 법적 고발하여 바로 잡고 있음. 또한 동물학대 및 처벌 사례를 모아 동물보호법을 더 강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 아카데미: 농장동물, 전시·오락동물, 야생동물, 모피·실험동물, 길고양이, 개식용 금지 등 고통 받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동물 생태 고유의 본성과 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

5.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 동물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삶을 통해 국내 동물관련 문제를 해결해 가며 동물

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과 삶을 추구하는 모임임.

- 현재 1대표, 4이사, 1감사로 이루어져 있음.
-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
 - 유기동물과 반려인을 연결(입양)하여 해당동물에게는 새로운 삶을 부여하고 반려인은 생명의 소중함, 사랑, 교감 등 정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시민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인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숙한 문화 확산
 - 단시안적 방편(예: 동물학대나 방치 등 개별 건에 대한 고소, 고발, 민원) 보다는 국민의 사고를 개선해야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만연한 동물관련문제(유기동물 발생, 빈번한 동물학대 발생 및 이에 대한 가벼운 처벌, 동물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인식, 개 식용 문제)를 국민 인식을 계몽하고 의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해결

6. 한국동물보호연합(<http://www.kaap.or.kr/>)

-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동물권리 및 동물복지의 향상에 힘쓰며,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사랑과 동물보호 의식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함.
- 한국동물보호연합(www.kaap.or.kr)은 사회 전반에서의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동물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적 여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 홍보, 교육, 필드 활동 등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임.
- 캠페인 사업
 -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매년 개 식용반대, 동물학대예방, 모피반대, 잔인한 동물 실험반대 등 동물보호 캠페인과 각종 시위, 계몽 홍보 등을 통해 대국민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
- 조사 및 활동
 - 동물살처분감시단, 유기동물보호소 방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등 학대받는 동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각종 조사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동물관련 세미나와 학회 등에도 참여하여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넓혀가고 있

음.

○ 대정부 정책 제안

-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동물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에 참여하여 동물 복지와 동물권리를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 아울러 외국 동물보호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발전적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7. 생명체학대방지포럼(<http://www.voice4animals.org/>)

○ 개고기 식용문제,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 실험용으로 쓰이는 동물, 식용으로 사육되는 농장동물의 고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임. 이 포럼은 작은 생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뜻 있는 이들을 위한 작은 모임임.

○ 생명체학대 반대를 위한 활동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의 교육시간을 줄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현재의 한나절 교육(8시간)에서 반나절교육(4시간)으로 바꿈.
- 서울대학병원의 영장류센터의 사육조건에 대한 문제제기
- 수의과학검역원에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동물실험지침의 작성을 요구함.
- 대학로 및 명동 예술극장에서 시민들에 대한 동물실험의 학대내용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진행함.
- 동물보호단체의 동물실험윤리위원 추천에 대해 동물단체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촉구함.
- 실험동물생산업체인 오리엔트 바이오의 실험용 비글 대량생산에 대한 항의 캠페인을 진행함.
- 오리엔트 바이오에 대한 항의, 비글 살리기 걷기 대회

제 4장 해외 사례 검토

제 1절 미국

1.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정부조직 및 업무⁷⁾

1.1. USDA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가. 조직

- 미국은 농림부(USDA) 산하기관인 동식물검역본부(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관장함.
 - APHIS의 목표는 미국의 농업과 자연자원의 가치와 건강을 보호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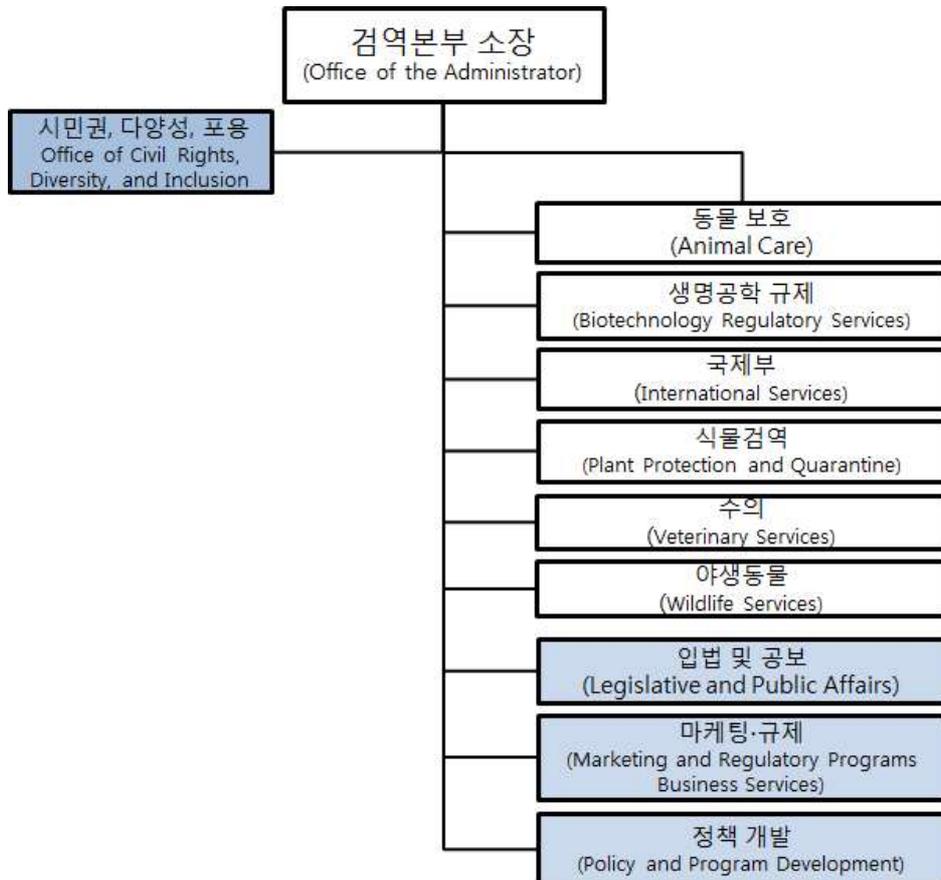
- APHIS는 6개의 운영 프로그램과, 3개의 관리 지원과, 연방정부를 지원하는 1개의 사무소로 구성됨.
 - APHIS의 조직은 동물보호과(Animal Care), 생명공학 규제과(Biotechnology Regulatory Services), 국제부(International Services), 식물검역과(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수의과(Veterinary Services), 야생동물과(Wildlife Services), 입법·공보과(Legislative and Public Affairs), 마케팅·규제과(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Business Services), 정책개발과(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시민권·다양성·포용과(Office of Civil

7) 미국 USDA와 APHIS 홈페이지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Rights, Diversity and Inclusion)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중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동식물검역본부 내 동물보호(Animal Care)과에서 담당함.

그림 4-1. USDA APHIS 조직도



자료: APHIS 홈페이지.

나. 역할 및 업무

- 동식물검역본부(APHIS)는 1972년 설립된 기관으로 미 농림부(USDA)의 주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음. 미국의 농업과 건강 보호 및 홍보, 유전자 조작 생물 규제, 동물 복지법 시행 및 야생동물 피해 관리 활동 수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이러한 업무를 통해 식량, 농업, 천연 자원 및 관련 문제를 보호하고 증진하

는 미국 농림부를 지원함.

- 농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APHIS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미국의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
 - 예를 들어 지중해 과실 파리와 아시아의 딱정벌레 해충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생산 및 마케팅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비슷하게 미국에서 구제역이나 병원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외국의 수입국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생산자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우려되는 해충이나 질병이 발견된 경우, APHIS는 피해를 신속하게 관리하고 근절하기 위해 피해 국가와 비상 대책 및 파트너를 구축함.
 - 이러한 적극적인 접근방법은 APHIS가 미국 농업에 대한 해충과 질병과 같은 잠재적인 위협을 성공적으로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줌.
- 국제무역 분야에서 미국 농업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APHIS는 교역 파트너와의 과학기반 표준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농산물 수출이 부당한 재제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있음.
- 미국민과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APHIS의 임무는 야생동물 피해 및 질병 관리와 같은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 APHIS는 유전자 조작 작물 및 동물복지 규정, 해충 및 병원균에 취약한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및 안전, 다양성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미국 농업 분야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임.

다. 인원 및 예산

- APHIS는 약 5,000명의 직원이 항구, 국경 및 농장에 감찰관으로 배치되어 활동 중임.

- APHIS의 총 예산은 2017년 기준 약 11억 9,600만 달러(1조 5,548억 원: 1달러=1,300원 환산)로, 이 중 동물보호에 사용되는 예산은 2,900만 달러(377억 원) 수준임.

표 4-1. APHIS 및 동물보호 예산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동물보호	29 (1.4)	29 (2.5)	29 (2.4)
APHIS	2,115(100)	1,178(100)	1,196(100)

자료: USDA, Budget(<https://www.usda.gov/our-agency/about-usda/budget>).

1.2. 동물보호과(Animal Care: AC)

가. 조직 구성 인원

- APHIS의 동물보호(AC) 직원은 동물보호 및 축산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됨. AC 프로그램을 통해 APHIS는 동물의 인도적 보살핌 및 치료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 APHIS는 이러한 표준을 구현하고 검사, 교육 등을 통해 산업계, 정부, 비정부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함.
- 2016년 3월 현재 AC의 인력은 「동물 복지법」 및 「말 보호법」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검사를 수행하는 동물보호 검사관과 동물용의약관 등 112명으로 구성됨. AC는 또한 조류, 코끼리, 해양 포유동물, 외래 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갖추고 있음.
- 2016년 3월 현재 1,015개의 연구시설과 2,266명의 브리더를 포함하여, 총 7,435명의 면허등록자를 관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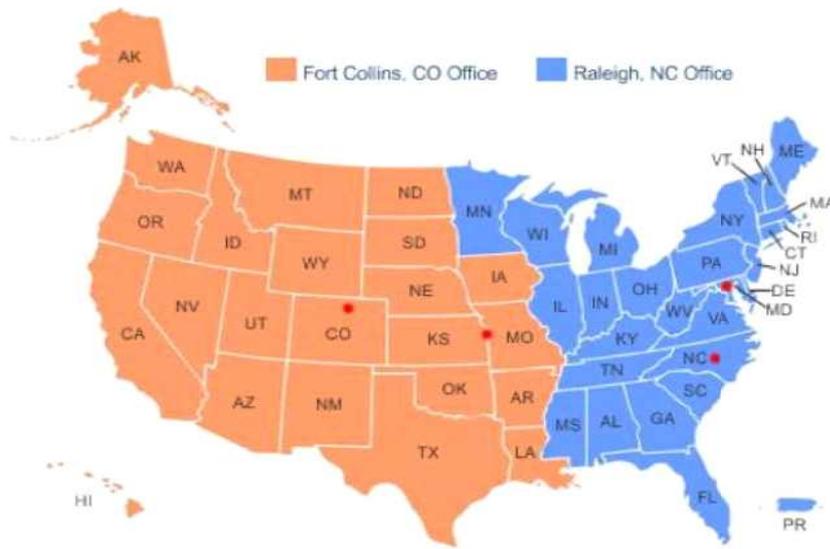
나. 주요 업무

- 미국 농림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본부(APHIS)의 동물보호과(Animal Care)는 「동물 보호법(Animal Welfare Act)」과 「말보호법 (Horse Protection Act)」을 관리함.
- 「동물 보호법」은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에 관한 요구 사항을 정하고, 재판매 목적으로 살아있는 개의 수입에 대한 관리, 투견 등 동물 싸움의 금지, 개인 애원동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함.
- 「말 보호법 (Horse Protection Act)」은 말이 전시회, 쇼, 판매 또는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고통(말이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자극을 받게 하는 과정)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물보호과(Animal Care)의 산하기관인 동물복지센터(Center for Animal Welfare: CAW)는 다른 동물복지단체와 협력하여 국내 및 국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규제 관행을 개선하며, USDA의 전통적 규제 역할을 넘어서서 복지, 교육 및 교육 자원을 개발하려는 USDA의 노력에 중심역할을 수행함.
- 동물보호과(Animal Care)의 “비상대응요령(Emergency Response Component)”은 재해 발생 시 애원동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함. 비상사태 시 동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애원동물 소유자의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임.

다. 지역 사무소

- 동물보호과는 메릴랜드 리버데일, 콜로라도 포트콜린스,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의 3개 지역에 있으며, 1개는 미조리 캐자스시티의 동물복지센터임.

그림 4-2. 미국의 동물보호과 사무소



1.3. 동물복지센터(Center for Animal Welfare: CAW)

가. 설립 및 조직

- 동물복지센터는 2010년 가을에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설치되었으며, 외래동물, 사육장, 생물 물리학, 훈련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업무

-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와 업계 파트너가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지침과 교육 및 지도를 요청할 경우, APHIS의 동물복지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

- 동물복지센터는 정부차원에서 교육 및 봉사 활동; 「동물 복지법」 및 「말 보호법」을 지원하는 과학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동물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개발과 분석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함.
 - 동물복지센터는 국내외 전문가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이해 관계자 및 업계 파트너에게 정확한 편견 없는 과학기반 정보를 제공함.
- 동물복지센터와 그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연방 기관, 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타 국가에 대한 모범 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들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대응 과정에서 동물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공함.
- 동물복지 관련 과학기술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 보호 관련 정책 분석도 수행함.

다. 교육 활동

- 동물보호과(Animal Care)는 식품안전보건센터(the Center for Food Security and Public Health)와 협력하여 애완동물 브리더와 유통업자의 면허취득 및 규제 요건과 함께 관련 수의사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적절한 수의과적 치료는 해당 동물이 인도적 보호와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동물보호 법은 규제기관이 수의사를 채용하여 수의과적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또한 「동물 복지법」 과 상업 시설에 대한 동물보호 및 축산에 관한 모범 사례에 따라 면허 이전 절차 및 요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업용 개 브리더를 위한 입문 과정
 - 기니피그, 햄스터 또는 토끼의 상인 과정 입문 과정
 - 전시를 위한 입문 과정(예정)

라. 개 사육자 가이드

- 동물보호과는 「동물 복지법」에 따라 규제되는 상업용 개 브리더를 위한 행동 지침 기준인 “Dog Breeder Resource Guide”를 만들어 운영함.
 - 첫 번째 섹션은 개 사육자에게 적합한 사실 자료 및 기술 노트와 같은 간행물과 관련 문서를 수집함.
 - 두 번째 섹션에서는 동물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사업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추가 자료를 제공함. 또한 기록 보관에 필요한 가장 일반적인 문서 샘플을 제공함.
 - 마지막 절에서는 「동물 복지법」, 동물복지 규정 및 상업용 개 사육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함.

- 이 지침서는 개 브리더들이 연방정부의 규정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임.

2. 반려동물 관련 제도

2.1.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 동식품검역본부(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내의 동물보호과는 「동물 복지법」을 관리함. 이 연방법은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에 관한 요구 사항을 정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살아있는 개 수입에 대한 제한, 동물 싸움에 대한 금지 및 개인 애완동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함. 「동물 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대중에게 전시되거나, 애완용으로 판매되거나, 연구에 사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운송되는 특정 동물에 대한 인도적 치료를 위한 기준을 제시함. 규제 목적으로 규제 동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 위생, 영양, 수질 및 수의 치료를 제공해야하며 극한 기온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함. 규정은 또한 재판 목적으로 개를 수입하기 전에 충족시켜야 하는 특정 요구 사항을 포함함.

- 미국 전역에 위치한 고도로 숙련된 USDA 검사관은 「동물 복지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모든 시설에 대해 시설에 대해 「동물 복지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일상적인 예고 없이 조사함.
 - 검사관은 수의사 또는 동물보호검사관으로 분류됨. 모든 수의사는 수의과 대학을 졸업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USDA 동물보호과에 합류하기 전에 사설 수의사로 일함.
 - 동물보호검사관은 생물, 과학, 교육 및 동물보호와 취급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동물보호과는 특정 동물 종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와 연구 또는 운송과 같은 동물 분야의 전문가도 고용함.

- 검사관은 동물에게 제공되는 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동물 복지법」 표준 및 규정을 사용함. 시설과 서비스, 치료 등이 연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검사관이 연방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품목을 확인하면 USDA 동물보호센터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품목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수정하도록 지도함. 비준수가 시정되지 않거나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 USDA는 적절한 법규 준수 및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

- 1966년 제정된 「동물 복지법」은 모든 유형의 활동과 동물을 포괄하지는 않음. 식용이나 섬유(모피, 가죽 등)에 사용되는 농장 동물; 냉혈동물(양서류와 파충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말, 물고기, 무척추동물(갑각류, 곤충 등), 또는 조류, 쥐,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사육된 생쥐, 조류(연구를 위해 자란 사람들을 제외한)는 「동물 복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규제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음.

2.2. 동물관리 비상 프로그램

- 동물관리 비상 프로그램은 재해 발생 시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됨. 재해 발생 시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임.

- 동물관리 비상 프로그램은 재난 시 애완 동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국가적 리더십 제공
 - 지역, 주, 부족 및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계획을 추진
 - 재해 발생 시 애완동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
 - 고도로 숙련된 동물관리 직원을 동원하여 기술 지원, 자원 관리 및 대응 제공

가. 배경

-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의회는 재해 발생 시 애완동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대중의 부끄러움에 대한 응답으로 PETS(Pets Evacua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s)법과 PKGRA(Post-Katrina Emergency Response Act)를 통과시킴.

나. 역할과 책임

- 2008년 국가대응체계(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는 긴급지원기능(ESF)을 재정의하고, 연방 ESF 시스템 하에서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을 추가함. USDA-APHIS 및 기타 연방기관은 비상 계획과 대응을 지원함. 연방법령은 연방비상대응기구(FEMA)가 애완동물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USDA APHIS를 포함한 다른 연방기관은 NRF에 정의된 지원 역할을 함께 담당함. FEMA와 USDA APHIS는 재해 발생 시 애완동물 관리에 아래와 같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제공함.
 - 동물 배려 응급 프로그램에 대하여
 - 동물 복지 법 비상 계획 최종 규정

다. 훈련

- 동물 응급 관리 소개
- 인시던트 명령 시스템 (ICS) 및 관련 교육
- 기타 교육
- 실무 그룹

라. 감찰관을위한 봉사 활동 자료

- 봉사 활동 자료
- 봉사 활동 지침

마. 계획

- 조류 인플루엔자 (AI) 감시 계획
- ACEP 운영 계획의 연속성 (COOP)
- 가정용 애완 동물 응급 대응 계획
- ACEP 동원 가이드

바. 협력기관

- 국가 비상 사태 관리 협회 (NEMA)
- 국가 동물 건강 비상 대응단 (NAHERC)
- 국가 동물 및 농업 긴급 프로그램의 국가 연립 (NASAAEP)
- 국가 동물 구조 및 보호 연합 (NARSC)
- 가정용 애완 동물 지원 태스크 포스 (HPSTF)
- 수의 의료 지원 팀 (VMAT)
- National Veterinary Response Teams (NVRT)
- 기타 리소스

3.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민간 조직

3.1. 미국 켄넬 클럽(American Kennel Club)⁸⁾

- American Kennel Club(AKC)은 미국의 순종 개 혈통을 등록하기 기관임. AKC는 개의 가계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웨스트민스터 켄넬 클럽 도그쇼(AKC 공식 개막 전 연례 행사, 전국 개 쇼 및 AKC 내셔널 챔피언십)를 포함한 순종

8) 위키백과사전의 American Kennel Club 내용을 정리한 것임.

개 행사를 주관함.

- 이전에는 AKC/Eukanuba National Championship이었던 Royal Canin이 후원함. 다른 나라의 켄넬클럽과는 달리 AKC는 세계애견연맹(Cynologique Internationale International: World Canine Organization)의 멤버가 아님.

가. 역할

- 켄넬 클럽은 품종 기준을 유지하고, 혈통을 기록하며, 개 건강 검사 및 재판에 대한 규칙을 발행하고 판사의 승인을 받음. 그들은 성인 순종 개 목록과 순종 부모에게 태어난 강아지의 새끼 목록을 제공하는 자주적 등록기관임. 켄넬 클럽은 직접 또는 회원 단체를 통해 대표하는 개 품종의 모든 측면을 관리함.
- 오늘날 켄넬 클럽은 개 또는 개 품종을 전문적으로 취급함. 오늘날의 견해에서 혼합 품종 개를 키우는 클럽이 성장하고 있으며, 때때로 켄넬 클럽으로 분류되기도 함. 그러나 켄넬 클럽의 원래 목적은 순종의 육종과 보급이었으며, 이것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로 남아 있음.
 - The Kennel Club, American Kennel Club, United Kennel Club, Canadian Kennel Club과 같이 널리 알려진 켄넬 클럽은 도그쇼 행사 및 훈련 프로그램과 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함.

나. 역사

- 1800년대 초 영국은 강아지의 아름다움보다는 강아지의 기능에 관심을 갖게 됨. 이 유행이 북아메리카에 퍼지면서 1877년 웨스트 민스터 켄넬클럽이 조직 됨. 1876년 창립된 내셔널 아메리칸 켄넬 클럽(National American Kennel Club)은 1879년에 혈통대장을 공식 발표하기 시작함.
- 1884년에는 13개의 품종 클럽(10개의 미국 클럽과 3개의 캐나다 클럽)이 모여 미국 켄넬 클럽을 설립함. 이 13개 클럽은 "순종 개들의 혈통연구, 육종, 전시,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AKC는 개인 이 클럽에 직접

가입할 수 없으며, 더 작은 규모의 품종별 클럽을 회원으로 유치함. 1886년에 미국과 캐나다 품종 클럽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서 캐나다 클럽은 2년 후 캐나다 케넬 클럽(Canada Kennel Club)을 설립함.

- 1894년 미국 케넬 클럽(American Kennel Club)은 미국의 혈통이 없는 캐나다 개들이 미국 순종 가축 조직의 유행을 따라 쇼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함. 1906년 미 농무성은 AKC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으로 수입된 개는 의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함. 이것은 나중에 1911년에 변경되어 본국에 있는 케넬 클럽에 등록된 개가 면세로 입국할 수 있게 됨. AKC, CKC 및 KC가 개를 모국에 있는 클럽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나머지 두 클럽도 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나, 1909년에 통합됨.

다. 등록

- AKC는 미국에서 가장 큰 순종 개 등록기관이며,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일한 비영리 등록기관임. 순종 개를 AKC에 등록하려면 강아지의 부모를 AKC와 동일한 품종으로 등록해야하며, 태어난 새끼도 반드시 AKC에 등록해야 함. 부모견이 AKC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새끼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AKC가 특별 등록 조사를 통해 등록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일단 신청이나 등록 기관 조사에 의해 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개는 AKC에 순종으로 등록 될 수 있음. 등록은 강아지의 부모가 인정된 품종으로 등록되었음을 나타냄. 그것은 반드시 강아지가 건강에 좋거나 품질이 우수한 혈통 라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는 않으며 등록은 반드시 육종가의 품질이나 강아지의 양육 방식이 반영되어야 함.

3.2. American Pet Association⁹⁾

- 미국애완동물협회(American Pet Association)는 1991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설립됨.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 플로리다, 콜로라도에 지사를 두고 있음. 미국애완동물협회는 25명의 직원이 있음.
- 이 조직은 1992년부터 "Guardian" 및 "Guardian VIP" 멤버십을 제공하는 애완동물 소유자를 위한 회원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회원은 약 25만 명임.
- 1995년부터 연구 및 통계를 포함한 미디어 서비스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동물보호단체에 가입하여 기금 모금 지원 등 "인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2009년 애완동물 관련 분쟁을 경험하는 사업 및 커플을 돕는 애완동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또한 2009년에 학교 기금 모금과 적절한 애완동물 치료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학자금 모금" 프로그램을 시작함.
- 2010년에는 애완동물 제품 및 애완동물 사업 승인 프로그램을 시작함. 테스트, 검사, 백그라운드 검사에 대한 독점적인 비즈니스 승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비자 피드백 시스템을 제공함.
- 2011년에는 주거용 아파트 단지 및 기타 지역 사회에 "애완동물 공동체 계획"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애완동물 계획" 프로그램을 시작함. 지역 사회를 애완동물 친화 지역으로 만들고, 애완동물에 대한 불만을 관리하고 중재를 제공함.

9) 위키백과사전의 American Pet Association 내용을 정리한 것임.

제 2절 일본

1.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정부조직 및 업무

- 환경성 자연환경국 : 동물의 애호 및 관리,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광견병 대책
-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 동물의 수출입 검역 및 통계
- 후생노동성 건강국 : 광견병 예방법

1.1.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물관리과

- 농림수산성은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과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는 소비·안전국 축수산물관리과 반려동물사료대책반임.
- 소비·안전국은 소비자 보호, 표시·규격, 식품 안전, 농림 수산물의 생산 단계에서의 위험 관리 (농약, 비료, 사료, 동물 의약품 등), 토양 오염 방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쌀 유통 감시 업무를 수행함.
- 축수산물관리과에서 주로 수의사, 동물의료, 약사안전, 약사 심사, 약사 감시 지도, 사료안전 기준, 애완동물용 사료 업무를 담당함.
- 반려동물사료대책반에서 애완동물용 사료의 기준 및 규격 인정·지도, 제조업자 등의 신고 업무를 관리함.

그림 4-3. 일본 농림수산성의 주요조직 및 역할



주: 지방파견기관 및 소관기관은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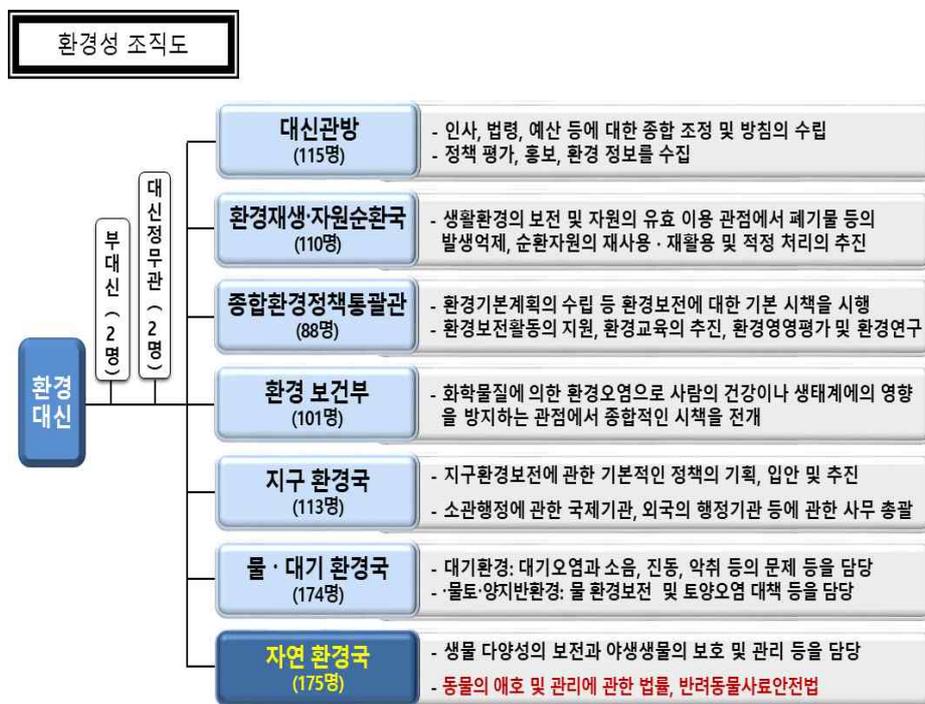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2017. 8. 다운.

12. 환경성 자연환경국

가. 조직

- 환경성에서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반려동물 사료안전법”과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국은 자연환경국으로 167명의 조직으로 구성됨.
- 자연환경국내에는 국립공원과, 생물다양성센터, 자연환경계획과, 총무과,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정비과가 있으며, 총무과의 동물애호관리실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그림 4-4. 일본 환경성의 주요조직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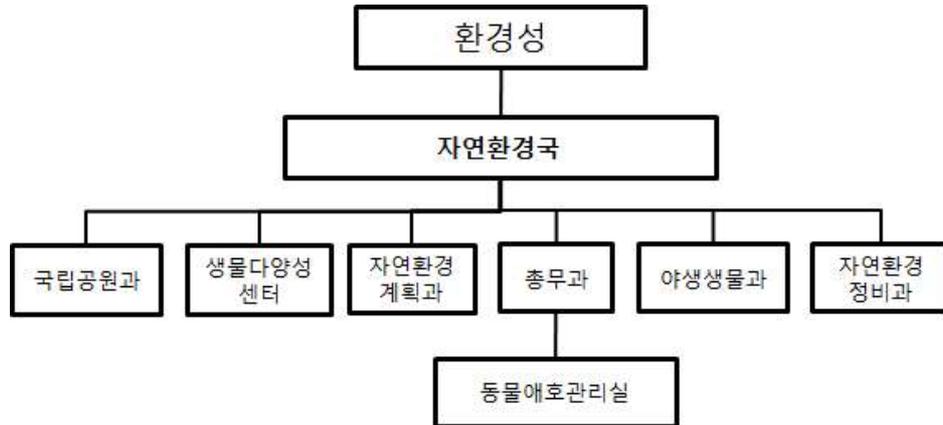


주 1) 부서별 인원수는 2014년 12월 기준이며, 환경성의 총 정원은 2,782명임.

2) 지방과건기관 및 소관기관은 생략함.

자료: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http://www.env.go.jp/>), 2017. 8. 다운.

그림 4-5. 일본 환경성 자연환경국 조직도



자료: 이영무. 2016.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나. 동물애호관리실의 주요업무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애완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및 산업동물 등을 대상으로 동물애호의 문화 유지 및 동물로 인한 사람에게 위해방지 등을 위해 동물애호 및 적정한 사육의 보급개발사업의 실시, 동물취급업의 규제,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 및 동물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여하는 조치, 학대, 유기 방지 등을 추진함.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 동물애호주간행사 등 보급개발사업의 실시
 - 동물의 적정한 사육·보관, 처분을 위한 각종 기준의 마련
 - 동물취급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의 마련
 - 위험동물의 지정(정령)
 - 지방자치단체 지원

13.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광견병 예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는 건강국임.

그림 4-6. 일본 후생노동성의 주요조직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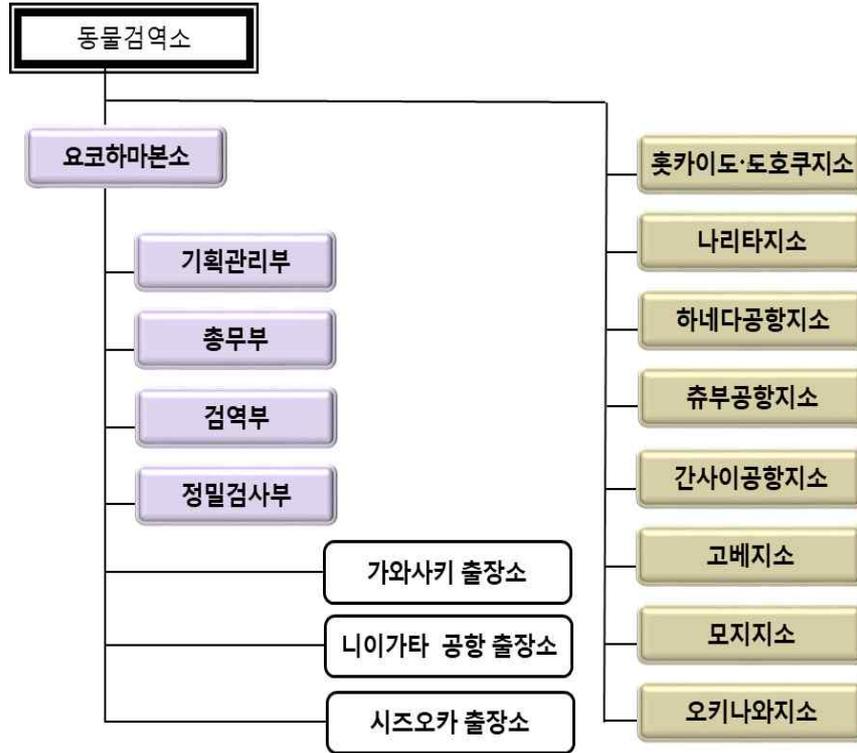
주: 지방과건기관 및 소관기관은 생략함.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 2017. 8. 다운.

14. 동물검역소

- 동물검역소는 농림수산성의 소관기관이며, 2016년 정원은 466명임. 본소는 요코하마시에 있으며, 전국의 공항 및 한구에 8지소, 16출장소, 4분실이 배치되어 있음. 동물검역소는 동물의 수출입 검역 및 통계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4-7. 일본 동물검역소의 조직현황



주: 지방출장소 및 분실은 생략함.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aqs/>), 2017. 8. 다운.

2.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제도¹⁰

-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제도는 크게 3개 부처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음. 환경성은 동물의 애호 및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견병의 관리를 위해 「광견병 예방법」으로 반려견의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으로 농림수산성과 환경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동물의 수출입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제도의 직접적인 시행을 담당하고 있음.

2.1.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 애호 관리법)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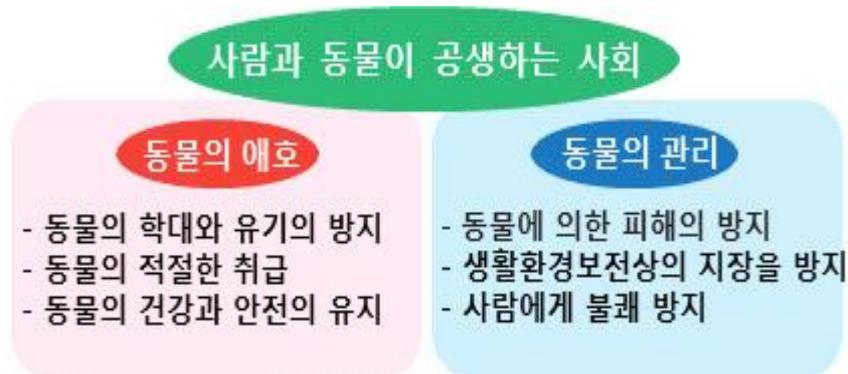
-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후 동물애호관리법)은 1973년 9월에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1999년과 2005년, 2012년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되었음.
- 이 법률은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물의 학대나 유기를 막고 동물의 적절한 취급이나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킴으로써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과 함께 동물을 단순히 귀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키우고 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나 소음과 악취 등 생활 환경상의 지장을 방지하고자 함.

10 본 절의 내용은 지인배 외.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11 자료: 일본 환경성,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 2012년 개정판」2014. 3.을 참고하여 작성함.

- 동물애호관리법의 목적은 동물의 애호 및 동물의 적절한 관리(위해 등의 방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대상 동물은 가정동물, 전시동물, 산업동물(축산동물), 실험동물 등의 사람이 사육하는 동물임.

그림 4-8. 동물 애호 관리법의 목적



자료: 일본 환경성,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 2012년 개정판」, 2014. 3.

가. 기본원칙

- 모든 사람은 “목숨 있는” 동물을 함부로 살상 또는 괴롭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도록 동물의 습성을 잘 알고 적절하게 다루어야 함. 또한 동물을 다룰 때는 동물의 종류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히 먹이나 물을 줘 필요한 건강관리를 하고, 동물의 종류와 습성 등에 따른 환경을 확보해야 함.

나.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

- 동물의 주인은 “목숨 있는” 동물들의 소유자로서 동물을 애호하며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음. 동물의 종류와 습성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양해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위에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또한, 동물의 주인은 최대한 그 동물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적절하게 사육(평생 사양), 무분별한 번식방지를 위해 불임 거세 수술 등, 동물에서 동물로 또는 동물이 사람에게 옮는 질병(전염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예방에 주의, 동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한 마이크로 칩이나 미아방지 명찰 등의 표식을 달아

야 함.

- 근래에는 사육이 포기된 고양이를 원인으로 많은 새끼고양이가 도살 처분되고 있음. 불행한 목숨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도 주인은 끝까지 책임지고 길러야 할 필요가 있음.

다. 동물을 적절하게 취급하는 가이드라인

-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을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적절하게 동물을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음.
- 또한, 동물의 주인(소유자)은 키우고 있는 동물에 마이크로칩이나 미아방지 명찰 등을 달아 소유자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그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 등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져 있음(「동물이 자기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 및 「동물의 도살처분 방법에 관한 지침」).

라.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과 대량사육에 의한 동물 학대의 방지

-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수를 초과하는 동물을 사육함으로써 소음과 악취, 동물 털의 비산(飛散), 위생 해충의 발생 등으로 주변 생활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경우와 동물이 쇠약 하는 등의 학대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주인 등에게 개선에 대한 권고나 명령을 시행함.

마. 동물취급업의 규제

- 애완동물 가게나 애완동물호텔 등 영리성이 있는 업종은 제1종 동물취급업이며, 동물보호시설 등 영리성이 없는 업종으로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마릿수 이상의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2종 동물취급업임.
- 이들 동물취급업을 운영할 때는 동물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후 도도부현 지사 등에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함. 도도부현 등의 동물복지담당은

현장검사를 시행해, 시설이나 동물의 취급방법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나 명령을 시행함. 또한, 악질업자에게는 등록의 거부나 취소, 업무정지 명령을 시행할 수 있음.

바. 위험 동물의 사육규제

-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로 국가에서 정한 위험 동물(특정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함. 사육자는 마이크로 칩 등으로 동물의 개체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물이 도주할 수 없는 구조의 시설을 마련해 적절하게 관리해야 함.

사. 반려견과 반려묘의 회수와 부상동물의 수용

- 도도부현 등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소유자 등이 회수를 요구할 경우 그 동물의 회수를 시행함. 그러나 동물취급업자로부터 회수가 요구되는 경우,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소유자 등으로 부터 회수가 반복해서 요구되는 경우, 번식제한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강아지나 새끼고양이를 여러 번 분만시킨 경우,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질병이나 고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등 평생 사양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회수를 거부할 수 있음.
- 도로·공원·광장 등 공공의 장소에서 질병이나 상처를 입은 반려견이나 고양이 등(부상동물) 또는 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도도부현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도도부현 등은 부상동물이나 사체를 수용함. 도도부현 등은 회수 등으로 수용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원래의 사육자에게 돌려주거나 사육자를 모를 경우에는 새로운 사육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아. 동물 애호주간과 보급 계발

- 국가나 도도부현 등은 학교, 지역, 가정 등에 대한 교육활동, 홍보활동을 통해 동물의 애호와 적절한 사육의 보급계발을 시행함. 또한, 매년 9월 20일부터 26일을 동물 애호주간으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시행함.

자. 동물애호관리 기본지침 및 추진 계획

- 국가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지침(동물애호관리 기본지침)」을 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 시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해 계획적이고 통일된 시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도도부현은 기본지침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동물애호관리 추진계획」을 결정함. 이 추진계획은 10년 계획으로 책정되어 있음.

차. 동물 애호 추진원과 협의회

- 도도부현 지사 등은 동물애호와 적절한 사양을 위해 지역에 있어 동물애호 추진에 열의와 식견이 있는 사람을 “동물 애호 추진원”으로 위촉해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음.
- 동물 애호 추진원은 지역에서 사육자 등에 동물의 적절한 사양에 대한 조언, 번식방지에 대한 조언, 양도알선, 국가나 도도부현 등의 시책에 대한 협력, 재해 시의 동물의 피난보호 등에 필요한 협력 등의 활동을 담당함.

표 4-2. 동물애호관리 기본지침 및 추진 계획

<p>동물 애호관리 기본지침 (국가) (2013년 개정)</p>	<p>[구성] 제1 동물의 애호 및 관리의 기본적인 사고 제2 향후 시책전개의 방향 제3 동물 애호관리 추진계획의 책정에 관한 사항 제4 동물애호관리 기본지침의 점검 및 검토</p> <hr/> <p>[마련해야 할 시책] 도도부현 등의 반려견과 반려묘의 회수 마릿수는 2023년도까지 2004년 대비 75% 감소한 약 10만 마리를 목표로 함. 소유자에게의 반환과 새로운 소유자에의 양도를 추진해 도살 처분율의 한층 더 감소를 도모함.</p>
<p>동물 애호관리 추진계획 (도도부현)</p>	<p>[구성] 1) 시책의 기본 방침 2) 동물의 적절한 사양 및 보관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해 시의 시책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체제정비에 관한 사항 5) 보급 계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 사항</p>

자료: 일본 환경성,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 2012년 개정판」, 2014. 3.

카. 벌칙

- 애호 동물을 함부로 살상한 자, 무관심 등의 학대를 저지른 자, 동물을 유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 동물(특정 동물)을 사육한 자, 등록하지 않고 제1종 동물취급업체를 운영한 자는 벌금이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것들을 법인소속의 종사자가 업무로 시행했을 때는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표 4-3. 동물애호와 관련된 주요처벌

내 용	처벌
애호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
애호동물을 함부로 학대한 자	100만엔 이하의 벌금
애호동물을 유기한 자	100만엔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동물을 사육·보관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등록을 하지 않고 제1종 동물취급업을 영위한 자	100만엔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고 제2종 동물취급업을 시행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
부적절하게 많은 두수를 사육하는자가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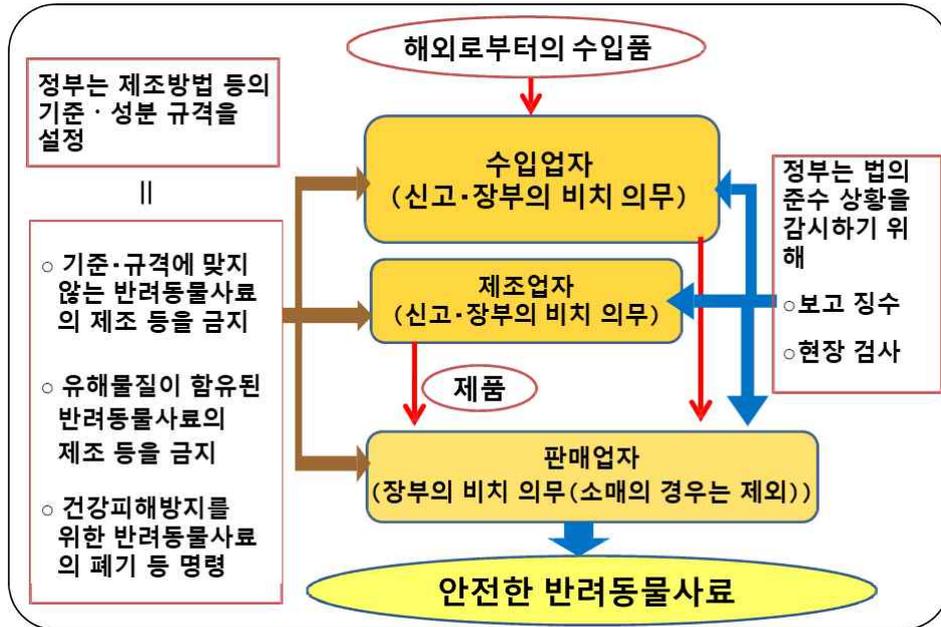
자료: 일본 환경성,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 2012년 개정판」, 2014. 3.

2.2. 반려동물 사료안전법(농림수산성·환경성)

- 2007년 미국에서 반려동물 사료에 의해 반려견과 반려묘가 잇달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일본에서도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은 2007년 8월에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확보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였음. 이 연구회에서는 ① 동물 애호의 관점에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확보는 시급히 시행해야 하며, ② 제조, 수입, 판매 등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③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법적 규제 도입이 필요한 것 등을 제안하였음. 이 제언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은 2008

년 6월 18일에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을 공포하였음.

그림 4-9. 반려동물사료안전법의 개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반려동물안전법의 개요」, 2015. 2. 1.

2.3. 광견병 예방법(후생노동성)

- 1950년 이전 일본에서는 많은 반려견이 광견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사람도 광견병에 걸려 사망하였음. 이로 인해 1950년에 「광견병 예방법」이 시행되어 반려견 등록, 광견병 예방주사, 들개 등의 억류로 7년이라는 단기간에 광견병을 퇴치하였음. 현재 일본에서는 반려견 등을 포함하여 광견병은 발생하지 않지만, 일본의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광견병 예방법」의 목적은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의 방지 및 이를 박멸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임. 「광견병 예방법」에 따라 생후 91일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과 매년 광견병 예방주사가 의무화되어 있음. 반려견의 등록은 동물관리센터, 보건소, 위탁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광견병 예방 주사는 동물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반려

견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등으로 예방 주사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는 동물 병원에서 유예절차가 필요함.

3.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민간 조직

3.1. 일본 애완동물식품협회¹²

- 일본 애완동물식품협회는 1969년 일본 사료산업협회로 설립되어 1975년 애완동물식품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9년 4월 1일부터 일반사단법인 애완동물식품협회로 명칭을 변경함.
- 본 협회는 일본에서 애완동물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93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애완동물 사료시장의 90 % 이상이 회원사에 의해 커버되어 있음. 2017년 10월 1일 현재 정회원 59개사, 찬조 회원 34개사임.
- 협회의 비전은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애완동물 식품을 제공해 나갈 위해 애완동물의 식품안전 · 품질 향상 추진과 계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애완동물과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애완동물과 행복한 생활"을 실현하는 것임.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
 - 1) 동물 용 사료의 안전성, 품질 향상 및 보급·계발
 - 2) 애완동물의 올바른 사육 방법과 사육 확대에 관한 계몽
 - 3)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 식품에 관한 정보 발신
 - 4) 다른 단체, 정부 기관과의 협조 조직의 강화
 -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애완동물 사료의 보급 계발
 - 매년 가을에 도쿄에서 개최되는 「동물 애호 주간 중앙 행사와 2 년에 한번 개최되는 재팬펫페어」, 「동물 애호 심포지엄」, 「동물과의 만남 사진 콘테

12 일본 애완동물식품협회 홈페이지(<http://www.petfood.or.jp/>)내용을 정리한 것임.

스트」 등 전국 수준의 행사 적극적으로 협찬함.

- 각종 자격시험을 주최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펫푸드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 향상에 기여함.
- 또한 애완동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테마로 한 “애완동물의 국제 박람회” 및 “인터펫”의 주최, 애완동물 사료에 관한 각종 강연회에 참가하여 업계의 올바른 지식 향상에 노력함.

○ 자원 봉사 활동

- 운젠후겐다케 분화, 한신아와지 대지진, 홋카이도 우스 분화, 미야케지마 분화, 니가타 현 집중 호우, 니가타 현 주에쓰 지진, 동일본 대지진 등의 재해 동물 구호를 위한 애완동물 사료의 제공 및 회원의 기부금 원조를 실시함.

○ 조사 활동

- 고양이의 사육두수 및 사육에 관한 의식 조사 등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유일한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조사 자료로서 다방면으로 활용함.
- 또한 농림수산 생산기관에서 매년 열리는 애완동물 식품 유통량 조사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것이 업계의 시장 규모를 추산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함.

제 3절 영국

1. 영국의 반려동물 관련 정부조직 및 업무¹³

1.1. 환경식품농업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 DEFRA)

가. 조직 및 업무

- 영국은 정부 부서 26개 중 하나인 환경식품농업부(DEFRA)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함. DEFRA는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환경 보호, 식품 생산, 농업, 수산 및 농촌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임.
- DEFRA는 2001년 6월에 창설되었으며 환경, 교통 및 지역부(DETR) 중 교통 행정기능이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으로 독립하면서 기존의 환경, 지역 업무에서 부분적으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농수산식품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의 행정업무를 환경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통합시킴.
 - 농업, 수산업, 식품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과 연관 분야이기에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환경을 중심으로 이들 업무를 통합
 - 또한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질병을 다루고자 기능을 통합함.
 - DEFRA는 비서관 1명, 장관 1명, 차관 2명과 약 9,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동물 복지 법률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개체에 마이크로 칩을 의무 부여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을 사고 팔 때, 해외에서 반려동물 반입시 필요한 신고 절차가 있음. 이를 수행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DEFRA의 우선적 역할임.

¹³ 영국 DEFRA 홈페이지, 위키피디아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나. 사업 집행 기관

- DEFRA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총 7개로 이루어짐. 사업집행 기관 중 반려 동물 관련 업무는 동물보건수의연구소(Animal Health and 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 :AHVLA)에서 담당함.
- 동물 및 식물 건강 기구(Animal Health and 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는 분리되어 있던 동물 보건(Animal Health)과 수의 연구청(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이 2011년 4월부터 합병된 것임.

표 4-4. DEFRA 사업 집행 기관

사업집행기관명	업무 분야
Center for Environment, Fisheries and Aquaculture Science (환경, 수산업 양식업 과학 센터)	자연보호, 수산, 해양 정책, 생물다양성
Forest Research (산림 조사청)	산림, 자연보호, 대지관리, 홍수, 국립공원, 농촌개발
Forest Enterprise (산림 사업청)	산림, 자연보호, 대지관리, 홍수, 국립공원, 농촌개발
Food and Environment Research Agency (식품 환경 연구 기관, 구 중앙 과학 연구소)	식품, 환경, 대기, 화학 및 농약, 폐기물 처리
Rural Payments Agency(농촌 지불 기관)	농업, 농약, 농촌개발, 지속가능개발
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수의학 이사회)	동물위생 및 복지, 검역
Animal Health and 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 (동물보건수의연구소)	가축전염병 관리, 동물위생 및 복지, 검역, 야생동물 보호, 식품

자료: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선진 방역시스템 선진화 국외연수 결과보고(2011).

- 설립목적은 공중위생, 동물위생 및 복지 그리고 경제 보호 및 연구, 조사, 예찰, 식품안전 확보 등임.
- 주로 가축 전염병을 통제하고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농장, 축산관련업체,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실험실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가축 전염병의 방역과 통제 실시
 - 해외악성전염병의 국제 자문 실험실로의 역할
 - 야생동물 등록을 통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하며, 국제적 책임을 가지고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동물보건수의연구소(AHVLA)는 전국 6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소 당 평균 30명이 근무하고 있음.

2. 반려동물 관련 제도

2.1.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¹⁴

- 영국에서는 농장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법으로서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마틴법(Martin's Act)이 1822년에 제정되었음. 1835년에는 피이즈법(Pease's Act)이 제정되어 동물 간의 싸움을 금지하였으며, 1911년에는 동물보호법(Protection of Animals Act)이 제정되었음. 이후 1996년에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가 제정되었고 2006년에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을 거친 후 현재의 '동물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음.

가. 정의

- “동물”은 인간 이외의 척추동물을 의미하며, 동물이 태아 또는 배아의 형태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보호받는 동물”은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길들여진 동물이어야 하며,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사람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함. 야생 상태일 경우는 “보호받는 동물”로 인정되지 않음.

¹⁴ 영국 법령 홈페이지 및 위키피디아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 “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영구적, 일시적인 상황을 모두 포함하며, 동물을 다루는 것을 모두 ‘책임’으로 여김.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간주됨.
- 영국은 사람이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관리 의무(Duty of Care)”를 강조함.

나. 위반 사항

- 보호받는 동물이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혹은 보호받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허용하지 않음.
 -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고 다시는 동물 사육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음.
- 적절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파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을 절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이와 더불어 개의 꼬리를 짧게 자르는 것(Docking)을 금지함.
- 동물에게 독극물을 투여하거나 혹은 투여를 허가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됨.
- 동물에 대한 싸움을 모두 금지함. 자세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동물을 싸우게 하는 행위
 - 동물 싸움을 허가하거나 공연할 때 돈을 받는 행위
 - 동물 싸움을 가능하게하거나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다른 동물에게 제공하는 행위
 - 동물 싸움에 참여하거나, 동물 싸움의 결과에 내기를 거는 행위
 - 싸움에 참여할 동물을 양성하거나 동물을 싸움에 참석(합법적인 이유 없이)시키는 행위
 - 영국에서 (합법적인 이유 없이) 동물 싸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행위

다. 복지 증진

- 사람은 동물에 대한 보살핌의 의무가 있음. 이 법은 5가지 조건의 “복지” 조건이 있음. 그것은 적합한 환경, 적당한 식단, 정상적인 행동 패턴(예: 운동), 다른 동물들과 함께 살거나 떨어져 있어야 하며 고통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필요로 함.
- 동물은 가족 관계가 아닌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판매 혹은 상금으로 제공 할 수 없음.

라. 동물 복지 위반 시 법적 조치

- 동물을 소홀히 다룬 사람은 동물을 소유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해 자격이 박탈되며 최고 1년의 징역과 2만 파운드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동물 학대라고 확인될 시 징역 기간은 2배로 늘고 약 5천 파운드의 추가 벌금을 선고할 수 있음.

마. 기타

- 스코틀랜드에서도 동물복지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이 영국과 비슷하나 일부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함.
 - 스코틀랜드에서는 동물 복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표준척도에서 레벨 5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선고함.

2.2. DEFRA 규정

가. 반려동물 입국

- 반려동물 입국 시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함.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마이크로칩이 있어야함.
 - 반려동물 여권 또는 제3국 공식 수의사 증명서가 있어야 함.
 - 광견병에 대한 백신접종을 받았으며, 일부 국가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가 필요함.

- 반려동물은 동행자가 영국을 도착하기 전 혹은 후 5일 이내에 도착해야함. 영국과 아일랜드를 여행하지 않는 한 승인된 운송 회사와 노선을 사용해야 함.
 - 사전에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야함.
-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을 최대 4개월 동안 격리시킬 수 있으며 바다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나. 마이크로 칩

- 영국은 태어난 지 8주가 넘어가기 전에 반려견에게 마이크로 칩을 장착하여야 함. 마이크로 칩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 5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마이크로칩 장착은 수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
- 반려견에게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게 되면 각 개체별로 숫자가 주어지며 스캔될 때 확인이 가능함. 확인된 정보를 통해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반려인에게 돌려줄 수 있음.
 - 반려인이 이사를 할 경우 반려견 마이크로칩도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야 함.
- 마이크로칩 정보는 정부 승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또한,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데려갈 때 반려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태그(Tag)를 착용해야함.
 - 반려견을 구입할 때에도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어 있는지 증거자료(마이크로칩 인증서, 수의사 기록, 반려동물 여권)를 요청해야 함.

다. 반려동물 구입시 지침

- 반려동물 구입 시 간단한 지침에 따라 수행할 경우 불법 거래에 대처할 수 있음.
 - 평판이 좋은 공급자로부터 구입 : Dog Advisory Council, Kennel Club, Dogs

- Trust, RSPCA에서는 반려동물 구입 시 필요한 조언을 공개 및 명시함.
- 그 동물의 과거(History)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구입 전 애완동물 여권이나 수의사 증명서가 있는지 확인
- 동물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거래 약속 후 수의사에게 문의 및 신고

- DEFRA는 RSPCA 및 Animal Welfare Foundation에서 Puppy Information Pack을 읽고 강아지 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권고함. 그리고 새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도록 권장함.

2.3. 애완동물법(The Pet Animals Act 1951)

- 애완동물법은 애완동물로 판매되는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는 법임. 애완동물에 대해 판매 및 번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법임.
- 애완동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지방의회에서 면허를 취득해야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동물들은 언제나 적절한 크기, 온도, 밝기, 통풍, 청결함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사육해야 함.
 - 동물들은 적절한 음식과 마실 것이 주어져야 하며, 적절한 간격으로 방문되어야함.
 - 질병과 화재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함.
 - 만약, 불시에 검사했을 때 건물의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또한 애완동물 판매 시 공공장소에서는 반려동물을 팔 수 없음. 12살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반려동물을 팔아서는 안 됨.
- 애완동물 번식업을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함.
 - 1년 이하의 암캐는 교배를 시켜서는 안 됨.
 - 마지막으로 새끼를 낳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끼를 낳게 해서는 안 됨.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개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음.
 -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를 판매하는 행위
 - 생후 8주가 되지 않은 개를 판매하는 경우
 - 허가 받은 번식장에서 태어나지 않은 개를 사육장 주인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

2.4. 동물행동법(The Performing Animals (Regulation) Act 1925)

- 동물행동법은 수행 동물(Performing Animals)에 대해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됨.
- 수행 동물의 훈련 및 전시는 지방 당국에 등록이 되어야 함.
- 이 법에 따라 수의사, 지방 의회의 경찰과 임원은 동물이 훈련 및 전시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잔인하게 방치 된 것이 발견되면 훈련이나 전시회를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음.
- 해당 동물의 동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부여 된 등록을 중지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이 법에 따라 평의회는 DEFRA에게 인증서의 사본을 보내야 함.

2.5. 개 사육 및 판매(복지)법(Breeding and Sale of Dogs (Welfare) Act 1999)

- 개 사육 및 판매법은 1973년과 1991년 개 사육법(Breeding of Dogs Act 1991, Breeding of Dogs Act 1973)을 개정 및 연장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사육시설에 있는 개를 보호하는 법임.
- 개 사육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방 의회에서 면허를 취득해야함. 12개월 동안 5마리 미만의 개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면허가 필요하지 않음.

- 면허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함.
 - 동물에게 적합한 숙박 시설, 음식, 물 및 침구 제공
 - 적당한 간격으로 적절히 운동 및 방문
 - 개들의 질병 확산 예방·통제

- 개들의 번식 시기와 빈도에도 제한이 있음. 암컷은 1살이 되기 전에 짝짓기를 할 수 없으며 일생동안 6마리 이하의 강아지만 생산할 수 있음. 또한 12개월 동안에는 1마리의 강아지만 생산할 수 있음.

- 개 사육업을 하는 사람은 번식 및 사육 기록을 보관해야 함. 또한 사육장에서 길러진 강아지는 면허가 있는 애완동물 판매시설에서만 거래가 가능함.

2.6. 승마시설법(Riding Establishments Act 1964 and 1970)

- 승마 시설은 지방의회에서 허가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면허 발급이 이루어짐.
 - 신청인 또는 관리자의 적합성
 - 숙소와 목장
 - 말의 건강, 복지 및 운동에 대한 조항의 적절성
 - 화재 및 질병 예방 조치
 - 그들이 보유하고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말의 적합성

2.7. 동물숙박시설법(Animal Boarding Establishments Act 1963)

- 동물 숙박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은 지방 의회에 허가를 요청해야 함. 동물숙박 시설법은 다른 사람들의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임.

- 숙박시설의 적합성은 지방 의회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며 동물이 질병 및 화재로부터 잘 보호되고 있는지, 식량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등이 고려사항으로 포함됨.

3. 영국의 반려동물 관련 민간 조직¹⁵

- 영국은 독일과 함께 가장 오래된 동물보호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강력한 법제정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한 집행, 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을 ‘동물보호단체’에 일임함. 따라서 영국은 반려동물 관련 민간조직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영국에는 약 2,000여 개의 동물보호단체가 있으며, 보호단체에서는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각 단체별로 동물보호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음.

3.1. 왕립동물학대방지기구(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of Animals, RSPCA)

가. 운영

- 왕립동물학대방지기구(RSPCA)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동물복지 단체로 예산을 지자체나 국에서 보조받지 않고 회비 및 기부금에 의존하여 운영 중임.
 - 2012년에는 후원금으로 1억 3,280파운드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약 1,600명 이상의 직원(수의사, 수의 간호사, 수사관(감시원), 관리요원, 행정요원, 자원 봉사자 관리 인원 등)이 근무하고 있음.

¹⁵ 관련단체 홈페이지 및 위키피디아에서 활용하여 작성

- RSPCA는 1824년에 동물학대방지기구(SPCA)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1840년 빅토리아 여왕이 ‘왕립(Royal)’명칭을 부여하도록 하여 왕립동물학대방지기구(RSPCA)로 명칭을 변경함.
- 이 기구는 독자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의사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 3개 야생동물 병원과 4개의 동물병원, 100개 이상의 동물 진료 및 수용보호 센터, 그리고 약 200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음. 연간 7만 마리의 동물을 입양하고 있음.
 - RSPCA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만 관할하고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는 비슷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됨.

나. 역할

- RSPCA의 사명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모든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친절을 도모하며 고통을 완화하고자 한다”로 동물 복지와 학대에 대한 예방을 실시하는 조직임.
- 영국의 동물보호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단체이며 로비, 캠페인, 교육활동을 수행 중임.
 - 연간 120만 통의 전화를 받고 330명의 동물보호감시원(Inspectors), 150명의 구조·구호 요원(ACOs)이 있음.
 - 동물보호감시원이나 구조·구호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별 훈련이 필요함.
 - 2016년에는 약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구조 및 수집함.
- RSPCA는 동물 보호에 대한 조언과 마이크로 칩 장착, 중성화 및 보조 동물 치료 등도 수행하고 있으며 약 1,000개의 매장(Shop)을 운영하고 있음.
- RSPCA는 국내 활동은 물론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타국의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
 - 태국에는 수의학 관련 장비를 제공하였으며 터키의 동물 보호소 개선, 크로아티아에는 동물 앰블런스 등을 지원하였음. 20개국을 방문하여 교육기관과 비

정부 기구를 통해 동물복지 교육을 실시함.

3.2. Dogs Trust

- Dog Trust는 이전에 National Canine Defense League로 알려져 있었으며 개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의 자선단체임.
- 이 조직은 유기견의 재활 및 새로운 입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입양을 하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씩 개를 후원하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또한 이유 없는 안락사 및 유기견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영국과 해외에서 마이크로칩 장착과 중성화 수술을 시행함.
- Dogs Trust는 유기견의 집 또는 새주인을 찾아주는 활동을 주로하고 있으며 영국 전역에 20개의 rehoming 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 이동 주택인 도그 모바일(Dogmobiles)을 2개 운영하고 있음.
 - 2009년 11월에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최초의 국제 rehoming센터 운영을 시작함.
- 이 조직은 Hunting Act 2004에 따라 여우 사냥이 금지된 이후 개의 불필요한 안락사와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는 캠페인을 벌임.
- 해외의 다른 국가에서 무료로 중성화 시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생 동물 집단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자선 단체를 통해 국제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 중임.

3.3. 동물복지연합회(Universities Federation for Animal Welfare, UFAW)

- 동물복지연합회는 영국의 자선단체로 동물복지의 진보를 뒷받침하고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 및 지원하여 동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임.
- 1926년 런던동물복지협회가 설립되었으며 학술 기관 간의 지원 기반이 커지고 런던동물복지협회가 옹호했던 동물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을 알기 위해 더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UFAW가 설립됨.
- UFAW의 목표 및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연합 회원은 야생 동물과 가축을 대신하여 영향력 행사
 - 교육 및 기타 방법으로 영국 및 해외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 촉진
 - 연합회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람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과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
 - 동물 복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 입수·배포
 - 동물 보호에 관한 법안 추진 및 홍보
- UFAW는 “Animal Welfare”라는 과학 기술 저널을 발표함. 이는 동물 복지와 관련된 과학 및 기술 연구를 소개하는 자료임. 그 외에도 동물복지 위반 사례, 윤리적·법적 문제에 관한 논문도 발표함.
- UFAW는 과학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데 3R원칙의 개념을 도입하였음.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물 복지를 위한 지침 원칙으로 받아들여짐.
 - Replacement(대체): 가능하다면 동물이 아닌 피험자를 사용하고 새로운 비 동물 연구 및 시험 모델의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연구 필요
 - Redution(감소):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더 나은 연구 설계 혹은 적절한 통계 방법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과 같은 동물의 수를 최소화하도록 함.
 - Refinement(개선) - 동물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험 절차 및 주거환경 개선

제 4절 네덜란드

1. 네덜란드의 반려동물 관련 정부조직 및 업무

1.1. 식품복지국(Nederlandse Voedsel-en Warenautoriteit: NV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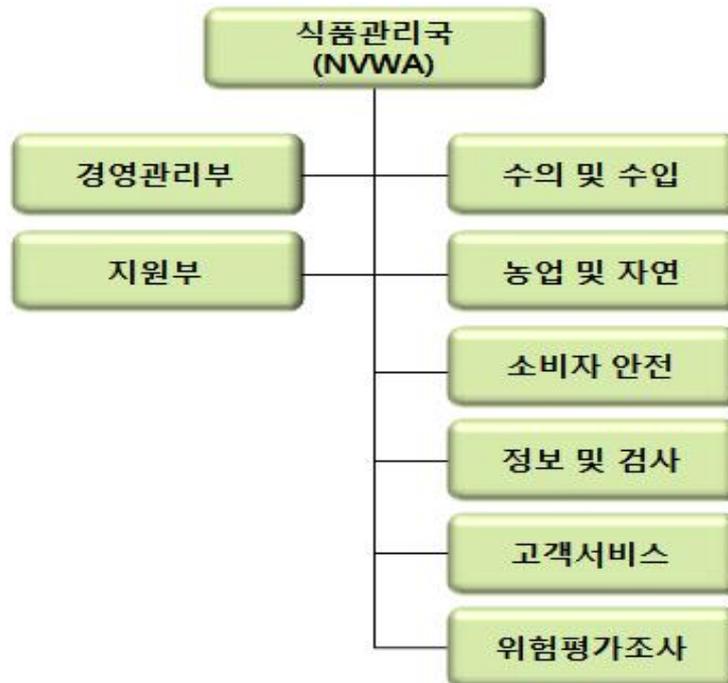
가. 조직

- 네덜란드는 경제부(Ministerie van Economische Zaken:EZ) 산하기관인 식품복지국(Nederlandse Voedsel-en Warenautoriteit: NVWA)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관장함.

나. 역할 및 업무

- NVWA은 동물건강(예방)을 위해 발생 가능한 질병의 모니터링 및 보고, 운송 수단 청소 및 동물 원산지 관리와 동물관련 사건 및 질병 발생 시 질병관리센터를 통해 질병 제어와 통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동물복지법에 입각하여 법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의 샘플을 검사하거나 도축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 수의사, 상인들을 관리 및 통제함.
- HACCP(Hazard Analysis of HACCP)분석을 기반으로 200개가 넘는 도축장과 500개 이상의 동식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바른 비료 사용을 위한 컨베이어 및 프로세스를 점검함.
- 이 밖에도 식물 및 자연 보호와 식품산업안전 관리, 사료와 동물 부산물 관리, 유럽 및 국가 보조금 제도 관리, 수출 및 수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4-10. NVWA 조직도



자료: NVWA 홈페이지(<https://www.nvwa.nl>)

12. 동물당(Partij voor de Dieren: PVDD; Party for the Animals)

가. 조직

- 동물당은 동물의 권리 증진을 위해 2002년 10월 28일에 창당된 세계 최초의 네덜란드 정당임. 2006년 상원 2석, 하원 2석을 , 2017년 3월 총선에서 상원 71석 중 2석, 하원 150석 중 5석을 차지하였음.

나. 역할 및 업무

- 동물당의 주요 목표는 동물권리 증진 및 동물복지 향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 및 먹거리 등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음. 2014년에는 모피생산을 위한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5년에는 서커스에 동물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과 트로피헌팅(동물 선택 사냥)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음.
- 동물당은 현재 산란계 케이지사육을 금지하고 동물 도축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과도한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운동을 진행 중에 있음.

그림 4-11. 동물당 로고



자료: 네덜란드 동물당 홈페이지(<https://www.partijvoordedieren.nl>)

13. 동물사역위원회(Raad Voor Dierenaangelegenheden: RDA, The animal Affairs Council)

가. 조직 구성 인원

- 동물 사역위원회는 야생 동물, 취미 동물, 애완용 동물, 생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동물 정책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35명의 위원들과 9명의 RDA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역할 및 업무

- RDA는 동물복지, 동물건강 및 생명공학 분야의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문제에 대한 정책제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14. 동물복지경찰(Dierenpolitie, Animal Welfare Police)

가. 조직 구성 인원

- 현재 동물복지경찰은 125명이나 2017년 연말까지 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동물복지경찰은 4개월간 동물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됨.

나. 역할 및 업무

- 동물복지경찰은 2011년 법무부 장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물학대, 동물방치, 밀렵 등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4-12. 동물복지경찰 활동사진



자료: 네덜란드동물보호협회(www.dierenbescherming.nl)

2. 네덜란드의 반려동물 관련 민간 조직

2.1. 네덜란드 동물보호 협회(Dieren bescherming)

- 협회는 동물들의 긴급구조와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유기 동물들에 대한 치료 및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동물복지 관련 정책제언을 하고 있음.
- 네덜란드 동물보호 협회는 7명의 직원과 18명의 국립 동물보호 검사관(Landelijke Inspectiedienst Dierenbescherming:LID)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4-13. 동물보호협회 로고 및 활동사진



자료: 네덜란드동물보호협회(www.dierenbescherming.nl)

3. 반려동물 관련 제도

3.1. 동물건강 및 복지법(Animal Health and Welfare Law)

- 네덜란드의 동물복지 요구사항은 농가가 소유한 모든 동물에 적용되며 가축, 돼지, 육계 병아리 및 모피동물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
- 반려동물의 사육, 판매 또는 보급하는 경우 판매자의 신원파악과 예방접종프로그램 및 동물주거 시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이 규칙은 생산자, 동물거래자, 반려동물용품 판매점, 동물구조센터 및 사육장에 적용되며 동물을 취급하는 모든 장소에는 네덜란드 기업청(RVO.nl)에 고유 사업자 번호(UBN)를 신청하고 부여받아야 함.

- 반려동물 판매의 경우 16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동물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동물에 관한 서면정보를 제공해야 함. 반려견을 사육하는 경우, 반려견은 7주가 된 시점까지 마이크로 칩을 사용해야 하고 1주 이내에 승인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함.
- 다른 국가에서 반려묘, 반려견 또는 흰 족제비를 가져오는 경우 승인된 수의사가 발행한 유럽 반려동물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 흰 족제비를 네덜란드에 반입 시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동물보호법의 법규 위반 시 행정절차 및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에는 형량에 따라 6개의 범주로 분류됨. 첫 번째 범주는 €335, 두 번째 €3,350, 세 번째, €6,700, 네 번째 €16,750 ; 다섯 번째 €67,000, 여섯 번째 범주는 €670,000가 부과됨.

표 4-5. 동물복지 및 보호에 관련된 주요처벌

내 용	처벌
합당한 목적없이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일으키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번째 범주벌금(€16,750)
장관(Minister)이 지정하지 않은 동물을 보관하는 행위	
동물 싸움을 조직하거나 동물싸움에 참여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수의학 의약품 사용	
동물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세 번째 범주벌금(€6,700)
수술을 허가받지 않은 수의사가 수의학 행위를 한 경우	

자료: 네덜란드정부정보서비스 및 홍보가이드 홈페이지(<http://wetten.overheid.nl>)

제 5절 덴마크

1. 덴마크의 반려동물 관련 정부조직 및 업무

1.1. 수의 및 식품관리국(Danishi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DVFA)

가. 조직

- 덴마크의 환경 및 식품부 산하기관인 수의 및 식품관리국(Danishi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DVFA)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관장함.

- 덴마크 수의 및 식품관리국(DVFA)는 수의부, 식품안전부, 방역검사부, 정보통신 및 혁신부, 재정관리부 총 5개부서와 전국에 8개의 지소로 구성됨.
 - DVFA 조직은 수의부(Veterinary Office), 식품안전부(Food safety office), 육류검사부(Meat inspection office), 정보통신 및 혁신부(Communication and Innovation), 재정관리부(Financial office)로 이루어져 있음.
 - 수의부는 북(North), 남(South), 동(East) 3개의 수의검사지소, 식품안전부는 시랜드/퓌렌(Sealand/Funen), 코펜하겐(Copenhagen), 북동(North East), 남서(South West) 4개의 식품검사지소, 육류검사부는 1개의 육류검사지소를 포함하고 있음.

- 이중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수의 및 식품관리국 내 수의부(Veterinary Office)에서 담당함.

그림 4-14. DVFA 조직도



자료: 덴마크 수의 및 식품관리국 홈페이지(www.foedevarestyrelsen.dk)

나. 역할 및 업무

- 수의부에서는 동물건강과 동물복지 및 동물용의약품을 관리하고 가축사육검사와 가축질병 및 응급조치를 담당하고 있음.
- 식품안전부는 식품 및 사료안전, 화학 및 식품품질, 식품영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원료의 검사와 시설검사, 위생 및 표시 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육류 검사부는 도축 전 모든 동물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의 쇠고기, 돼지고기 및 가금류의 도축과정과 가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함.
- 정보통신 및 혁신부는 고객서비스분야와 국제 협력, 국제 무역, 법률 서비스 및 고객 서비스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정관리부는 재무 및 회계, 인사, IT, 실험실 및 운영부서를 담당하고 있음.

다. 예산

- DVFA는 약 1,535명의 직원이 수의 및 식품관리국과 전국지소에 배치되어 활동 중임.
- DVFA의 총 예산은 2015년 기준 약 1억 5000만 유로(1936억 500만원: 1유로 =1,291원 환산)수준임.

12. 덴마크 동물복지센터(DANISH CENTRE FOR ANIMAL WELFARE: DCAW)

- 덴마크 동물복지센터는 2010년 1월에 설립됨. 덴마크 수의 및 식품관리국소속으로, 농민, 수의사, 연구원, 애완동물 소유주 등 관련 산업 이해 관계자에게 동물복지 지식을 전달함.
 - 동물복지 연구 및 지원
 - 각종 연구시 동물복지 관련 데이터 제공
 - 덴마크의 동물 복지 자료와 입법을 타 유럽 국가와 비교 등 업무 수행
- 동물복지센터는 수의 및 식품관리국, 농림수산부, 오르후스 대학교, 코펜하겐 대학교의 동물복지 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함.

13. 덴마크 동물보호협회(ANIMA)

- 덴마크 동물보호협회는 2010년 반려동물, 실험동물, 축산업 및 모피동물에 중점을 두고 동물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됨.
 - 직원은 7명이며, 자원봉사자들 모집하여 운영
 - 덴마크 개와 고양이 판매금지, EU에서 화장품 동물 실험 중지, 덴마크 슈퍼마켓에서 푸아그라 판매 금지, 투우 지원 금지 등 캠페인 시행 중

2. 반려동물 관련 제도

2.1. 동물건강 및 복지법(Animal Health and Welfare Law)

- 동물건강 및 복지법은 동물의 고통, 통증,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 치료를 하고 동물을 보호해야 함. 또한 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은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생리, 행동, 건강 등을 고려하여 취급해야 함. 동물을 사육하는(기르는) 장소는 사료와 음수, 운동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함.
 - 농림수산부 장관은 동물보호소와 동물의 생활공간 등에 규칙을 정할 수 있음.

가. 도축 및 수술

- 동물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동물이 최대한 빨리, 고통없이 죽어야 함. 특히 익사에 의한 도축은 없어야 함.
 - 농림수산부 장관은 도축(도살)에 관한 규칙 및 특정 유형의 도축(도살)의 금지, 수의사가 애완동물을 죽이는 규정을 포함하여 동물을 죽이는데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일시적인 통증 외에 동물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수술은 수의사가 수행해야 함. 또한 통증과 통증은 최소 범위로 제한되어야 함.
 - 동물의 외양을 바꾸기 위한 수술은 금지되며, 농림수산부 장관은 거세, 마킹, 발톱 및 기타 신체부위 제거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또한 특정 유형의 수술을 금지할 수 있음.

나. 전시 및 판매

- 동물에게 피해가 갈 경우 전시, 서커스 공연, 영화 촬영 등을 위해 사용하거나 옷을 입혀서는 안 됨.
 - 동물들은 전시되어서는 안 되며, 동물원 등은 덴마크 수의 및 식품관리국(DVFA)의 허가 없이 만들 수 없음.

- 농림수산부장관은 놀이 공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물 금지 및 금지와 같은 동물 보호 및 표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동물의 상업적 교역 및 육종(단, 농업 목적의 교역과 육종은 제외)은 DVFA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동물보호소 및 동물원 운영뿐만 아니라 동물의 운송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를 철회 할 수 있음.
- 농림수산부장관은 동물을 상업적으로 개인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물의 적절한 관리와 보살핌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서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다. 감독관

- 수의사는 동물이 학대를 받았다거나 무책임하게 대우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경찰에게 보고해야 함.
 - 수의사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치유할 수 있고, 치유가 불가능한 동물들을 안락사 시킬 수 있음.
- 동물이 부당하게 취급받는다면 경찰은 동물의 치료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경찰청장은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면 죽이는 것을 알릴 수 있음.

라. 동물위원회(The Animal Council) 구성

- 농림수산장관은 윤리적 평가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함. 위원회는 동물복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장관의 요청에 따라 동물복지법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함.
 - 동물위원회는 의장과 최소 10명의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임. 농림수산부장관은 위원회 의장 및 기타 의원을 임명함. 동물복지단체, 농업 단체,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임명함.

22. 개에 관한 법률

- 덴마크 개에 관한 법률은 1938년 1월 입법되었으며, 1992년, 2003년, 2010년, 2014년 개정되었음.
- 덴마크에서 반려견주는 개가 8개월이 되기 전 분류 및 등록을 해야 하며, 4개월 이상이 된 개는 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목걸이를 착용 시켜야 함.
-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개의 분류 및 등록시스템을 관리할 조직을 지정하고 반려견주는 반드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2010년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13종의 개는 사육 및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덴마크 경찰은 해당 개를 안락사 시킬 수 있음.

제 6절 독일

1. 정부 조직의 체계와 역할

- 독일 연방정부 조직 체계

- 연방식품농업부(BMEL;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의 주요 5 가지 업무
 - 식품안전
 - 농촌지역
 - 농산업
 - 동물복지 (동물복지형 축산 지향)
 -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 “동물복지”에 대한 연방식품농업부의 정책 목표: 동물복지형 축산 지향
 - 동물 사육과 축산은 독일 농업 부문의 중요한 핵심
 - 이와 관련한 동물의 건강은 동물의 복지와 생산성의 핵심
 - 이를 위한 안전한 사료 공급, 수의학 의약품의 책임 있는 사용 및 동물 질병의 예방 및 통제는 동물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
 - 민간 영역의 모든 동물 사육자는 동물 복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농장 동물의 축산과 관련하여 동물의 번식, 축산, 치료, 운송 및 도살에 대한 몇 가지 요구 사항을 규정함. 동물들의 필요에 따라 불필요한 고통과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동물복지형 축산의 세부 업무 내용
 - ① 동물복지: 독일기본법에 국가 목표로 명시, 동물복지법에 규정
 - 농식품부: 동물복지를 위한 각종 규정 및 제도 개선
 - 동물 복지 관련 연구 프로젝트 지원

- 동물 복지 원칙에 부합하는 가축 축산 시스템에 대한 투자, 동물 실험 대안 개발
 - EU 및 국제 수준에서 동물 운송을 포함한 동물 복지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 동물복지라벨 도입 지원: 독일동물복지협회(Germ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산업계, 학계 및 확장 서비스 파트너와 협력
- ② 동물건강: 건강한 동물은 농업 부문의 효율성과 식품 안전에 중요한 역할
-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산 환경이 좋고, 동물 질병 및 동물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한 사료 및 허가 된 수의학 의약품이 필요
 - 독일에서는 동물 건강이 법률 및 수의학 관리에 의해 보호
 - 동물 질병이 국경에서 멈추지 않으므로 연방 부처는 다른 회원국 및 제 3 국의 수의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 농업에서의 항생제 사용 문제
- ③ 가축사육: 동물 사육과 축산은 독일의 농업 부문의 중요한 요점
- 축산업의 목적은 우유와 고기와 같은 음식을 생산하고 양모, 가죽 또는 펠트와 같은 동물성 제품을 얻는 것
 - 목표로 삼은 동물 육종은 장기적으로 동물의 건강과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 경제 상황과 소비자 기대는 동물 복지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축산에도 큰 영향을 미침.
 - 연방식품농업부(BMEL)는 동물 복지, 환경 영향, 산업 보건 및 안전 및 경쟁력에 관한 개선을 가져 오는 축산 방법 개발에서 과학 및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 옵션 제공
- ④ 애완동물 및 동물원 동물: 애완 동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실한 동반자
- 애완 동물을 얻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동물에 맞는 방식으로 동물을 실제로 키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음.
 - 애완 동물을 키우기 위한 명확한 규칙은 동물 복지 보장을 위해 필요함.
 - 동물을 키우고, 돌보고, 거래하는 사람은 동물의 복지에 책임을 져야함.
 - 동물 보호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애완동물을 기르기 위해 동물 복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제품이 필요한 것을 이해해야 함.

2. 민간 조직의 체계와 역할

○ 독일 베를린 동물보호협회

- 단체 개요

- 1841년에 최초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TierschutzVerein)
- 운영시간
 - 동물보호소 및 입양소 : 화 ~ 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 동물 입소 : 매일 오전 8시 ~ 오후 4시
 - 동물병원 : 화 ~ 금 오전 11시 ~ 오후 5시 30분,
토 ~ 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월 오전 11시 ~ 오후 1시 (응급진료)

- 기능 및 역할

- 동물보호소: 모든 동물 수용, 사육포기동물 인수, 보호동물 입양 등
- 동물병원: 동물보호소 입소동물 치료, 수의과 전공자 실습교육
- 교육: 청소년대상 체험교육, 양로원 방문교육, 수의보조 및 동물원 관리자를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
- 시민 자원봉사 기회제공: 동물보호소 운영의 핵심
- 반려동물추모시설 운영
- 기타 동물보호활동: 고양이 중성화수술 장려, 3명의 동물복지 상담사를 통한 사육 및 습성 안내, 수의학 및 야생동물에 관한 상담 등

- 재원확보

- 연간 800만 유로의 기금을 운영, 15,000명의 회원 및 10,000명의 기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 사육포기동물은 인수 수수료를 징수
- 입양동물은 입양수수료를 징수

표 4-6. 베를린 동물보호협회 (TierschutzVerein für Berlin) 수수료

(단위 : 유로)

구분		내용				
인수수수료	동물종	개	고양이	소형동물	조류	특수동물
	수수료	60~115	20~85	5~30	15~50	20~30
입양수수료	동물종	개	고양이	토끼	친칠라	조류
	수수료	250 이상	60~100	20~30	40~50	20~30

자료: 2016 서울시 반려동물 보고서

○ 독일의 동물복지형 축산 인증제도

- 독일의 연방식품농업부(BMEL)에서는 독립적인 동물복지 라벨(label)과 같은 인증제를 도입하여 농장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한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EU수준의 동물복지 인증 도입을 지원하고 있음.
- 동물복지 라벨의 도입은 식품이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제조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
- 독일의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는 민간기업 및 단체가 주도적으로 선제적 동물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선제적 동물복지와 공동(축산농가, 육가공업체, 소매업체)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소매업체들이 고기와 소시지 등을 판매할 때 1kg당 4센트를 적립하여, 참여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동물복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독일의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하나로 독일동물복지협회에서 시행하는 동물복지라벨(Tierschutzlabel)을 들 수 있음. 동물복지라벨은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시설 환경을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라벨의 단계는 Entry level(별 1개), Premium level(별 2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Entry level은 법정 최저 기준 이상이 공간과 사육시설 등에 대한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며
 - Premium level은 보다 넓은 공간 및 적절한 수준의 사육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음.

그림 4-15. 독일의 동물복지라벨 인증 마크



자료 : <http://www.tierschutzlabel.info/tierschutzlabel/>

3. 관련 정책 및 제도

○ 독일의 동물복지 전개과정

- 독일 동물복지 관련 법령은 1933년 제정된 “제국동물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1972년 “동물보호법”으로 대폭 개정되었음.
 - 이 법률은 동물에 대한 인간들의 책임을 바탕으로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누구도 동물에게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고통, 질환 또는 상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의 대부분 동물보호 정책과 규정은 EU의 정책과 법령을 기초로 제정되었음.
- 2002년 독일 기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가 국가 존립목적 중 하나로 규정에 삽입되어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운영 중임.
- 헌법정책에 의한 동물복지
 - 연방식품농업부(BMEL)는 헌법을 바탕으로 한 정책 목표 구현을 통해 동물 복지를 달성하고자 함.
 - 연방정부 원칙의 초점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것임.
- 독일에서는 산란계에 대한 축산시스템이 최근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복지 수준도 크게 향상됨.
 - 배터리(battery) 케이지에서의 사육이 2010년 1월 1일 이후 금지됨. 산란계는 오직 소규모의 그룹사육이거나, floor housing, 방목시스템 또는 유기생산

시스템에서 사육하는 것만 허용됨. 2011년 현재 산란계의 86%가 floor housing, 방목 또는 유기생산시스템에서 사육되고 있음.

○ 독일의 동물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

- 독일의 주요 동물복지 관련 법령과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동물보호법
- 가축사육법
- 농장동물보호법
- 동물건강법(동물병예방법)
- 동물 수송에 관한 규정

- 독일 동물 보호법의 기본 원칙

- 각각 동물의 보유, 동물의 살해, 동물에 대한 시술, 동물실험, 기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독일의 농장동물보호법

- 축종별로 육우, 돼지, 산란계, 육계 등 농장동물의 사육규정 내용으로 구성.

표 4-7. 독일 동물 보호법의 기본원칙

분류	내용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을 그 동물의 종류와 본능에 맞게 적절하게 먹이를 제공하고, 돌보아야 하며 행동에 맞게 기거하도록 하여야 함. - 동물에게 그 종에 따른 행동을 제한하여 고통, 질환 또는 상해를 가해서는 아니 됨. - 해당 동물에 적합한 먹이, 보호 및 행동에 맞는 기거에 필요한 지식과 자격이 있어야 함. - 동물에게 아래와 같은 공격적인 행위에 의해서 훈련시키거나 길들이는 행위를 금지함. -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에게 해당 동물의 상태가 명백하게 감당할 수 없거나 명백하게 해당 동물의 힘을 초과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 -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 질환이나 상해와 연결되는 교육이나 조련을 금지함.
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추동물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상태(마취 등)에서만 도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취가 불가능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의 특별허가가 있을 경우 마취를 취하지 않아도 됨. - 조류의 도축에 대해서는 마취의무를 예외 시킬 수 있음.
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경우를 제외하고 척추동물에 대해서는 마취 없이 고통이 수반되는 시술을 할 수 없음.
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규정된 목적으로만 진행될 수 있음. - 척추동물에 대한 실험은 그 실험을 통해서 기대되는 고통, 질환 또는 상해가 실험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윤리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음. - 무기, 탄약 등 시험을 금지함. - 염연초생산물, 세탁제, 화장품의 실험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 명령을 통하여 예외를 규정할 수 있음. - 동물실험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학문적 지식수준, 실험자의 전문지식 수준 등 준수사항 포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추가교육을 위한 시술 및 처치 - 동물의 사육 및 보유, 동물의 매매 - 반입, 통상 및 보유 금지 - 동물보호를 위한 기타 규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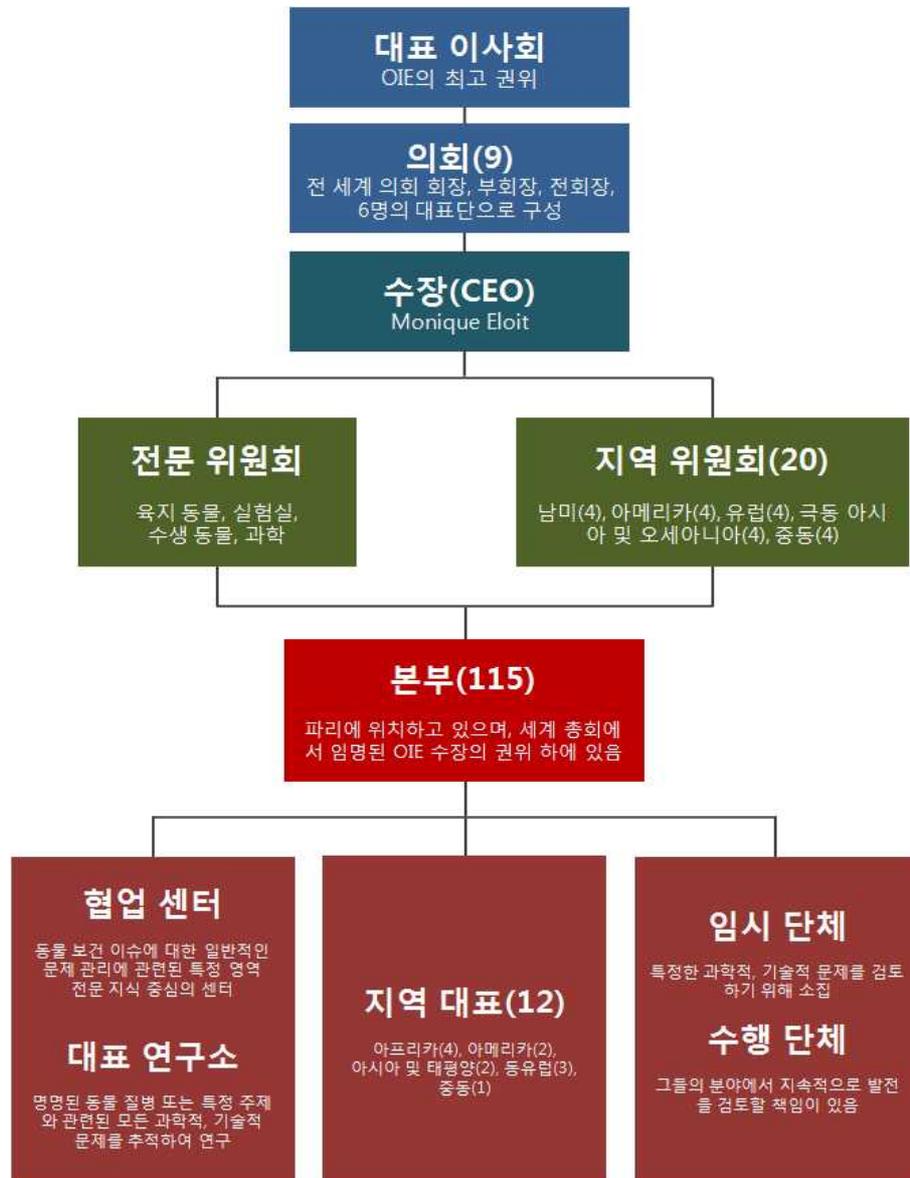
자료: 독일,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독일 동물보호법해외법률소개, 제 242호.

제 7절 기타 기구

1. OIE(국제수역사무국)

가. 행정조직

그림 4-16. OIE(국제수역사무국) 행정조직도



자료 : OIE 공식 홈페이지

나. 역할과 업무

○ 주요업무

- 투명성 : 국제적 동물성 질환의 상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각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에서 발견되는 동물 질병을 보고할 의무를 가짐. OIE는 각 회원국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 이 정보에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과 병원균의 의도적(비자연적) 도입(유입)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정보는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즉시 또는 일정 주기적으로 발송됨. 이러한 업무는 자연 발생 그리고 비자연적 발생 병원균에 걸리는 질병에 적용됨. 보급은 전자 메일, 질병 정보 및 세계 동물 보건 정보 데이터베이스(WAHID)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짐.
- 과학정보 : 가축 과학 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 OIE는 동물 질병 통제에 관한 최신 과학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이 정보는 회원국들이 이러한 질병을 통제하고 박멸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게 제공됨..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에 걸쳐 2011년 OIE의 협력 업체 및 참고 문헌 연구소의 네트워크에 의해 작성됨. 과학적 정보는 또한 OIE가 발간한 다양한 보고서와 정기 간행물을 통해 배포되고 있음.
- 국제적 연대 : 동물 질병의 통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연대를 장려
- OIE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하여 동물 질병 통제와 박멸 수을 요청하는 회원국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OIE는 특히 축산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가축의 손실을 야기하고,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다른 회원국들을 위협하는 동물의 질병을 통제함. OIE는 각 국가별 내 지역 및 국제 금융 기관들과 동물관련 기관, 협회들이 동물 질병 및 동물원성 감염증(사람에게 전염되는 동물성 질병)통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 내 지역 및 국제 금융 기관과 지속적인 연대관계를 맺고 있음.
- 위생 안전 : 동물과 동물관련제품의 국제 무역에 대한 보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무역을 보호
- OIE는 회원국들이 질병과 병원균의 유입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규칙과 매커니즘에 관련된 문서를 개발함. OIE의 주요한 규범은 육상 동물 건강 강령, 육상 동물의 진단 테스트 매뉴얼과 육상 동물을 위한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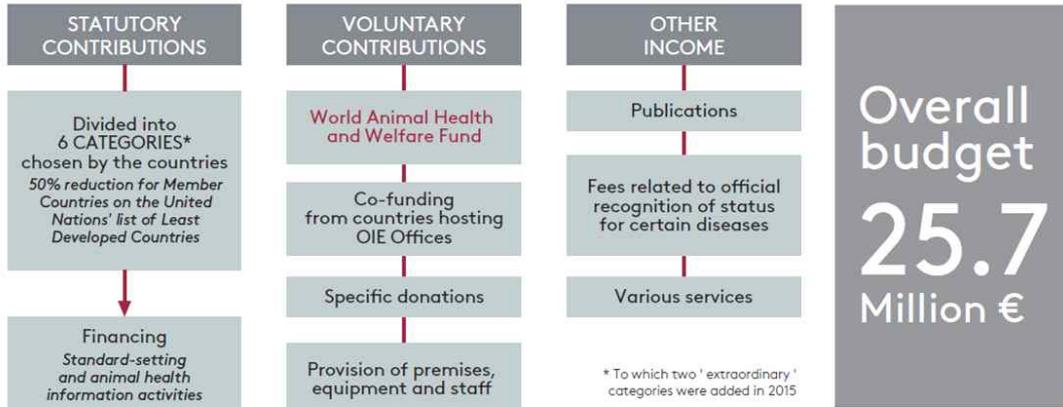
신, 수생 동물의 건강 강령 그리고 수생 동물의 진단 테스트 매뉴얼임. OIE의 표준은 세계 무역 기구로부터 국제 위생 규범으로 인정받고 있음. 그들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과 함께 선출된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이 관계자들 대부분이 OIE의 과학적 목표에 부합하는 약 310곳의 협업 센터와 참고 문헌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국제표준은 OIE의 대표 이사회에 의해 채택됨.

- 수의 서비스 촉진 : 국립 수의 과학 검역원의 법적 체계와 자원 개선
 - 개발 도상국의 수의 서비스 및 수의 과학 연구소개도국의 위생 및 위생 증진을 위함과 동시에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 자원 및 용량을 제공을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 사항 지원을 통해 질병이 없는 다른 나라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동물 질병 전염 위험을 낮출 수 있음. OIE는 수의 과학자들이 공공 투자 우선순위로서 국제 표준(구조, 조직, 자원, 용량, 준정직)을 글로벌 공공 부문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식품 안전 및 동물 복지 : 과학적 근거 및 과학 기반 접근법을 통해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제공
 - OIE의 회원국들은 OIE의 활동과 국제 규격 위원회의 활동 사이에서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동물의 원산지 출처를 더 명확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함. 이 분야에서 OIE의 활동은 동물의 도축 과정 또는 동물 관련 가공 식품(육류, 우유, 계란 등)에서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춤. OIE는 설립 이래로 동물건강을 위한 국제 기준을 정립하고 국가들의 인정을 받으며 모든 회원국들과 수의 과학자들과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 즉, OIE는 회원국들의 동물 복지 및 동물 건강을 위한 국제적인 기구의 필요성 인식 및 그 요청에 의해 설립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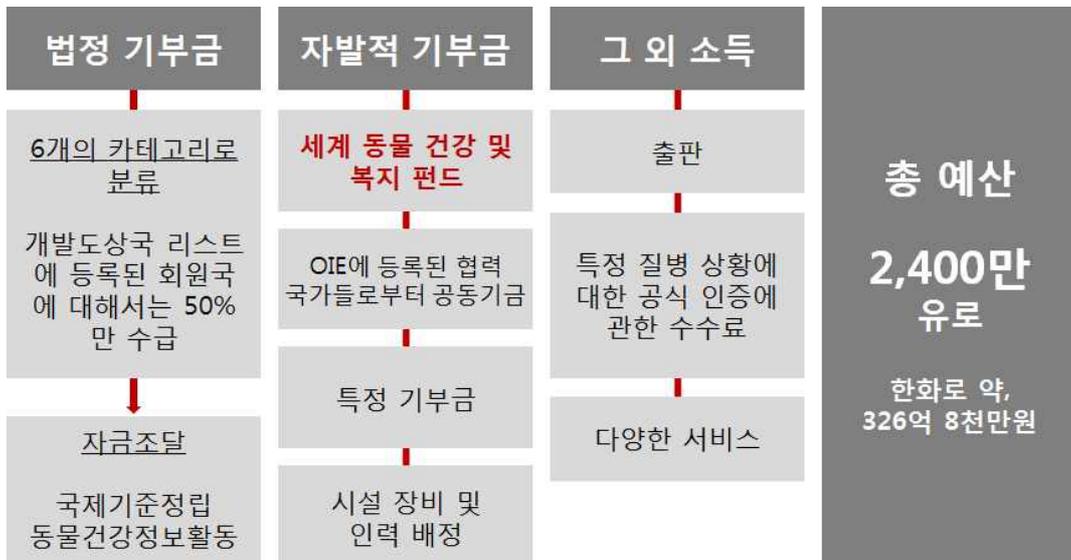
다. 인력과 예산

그림 4-17. OIE(국제수역사무국) 인력 및 예산

OIE activities are financed through various types of contrib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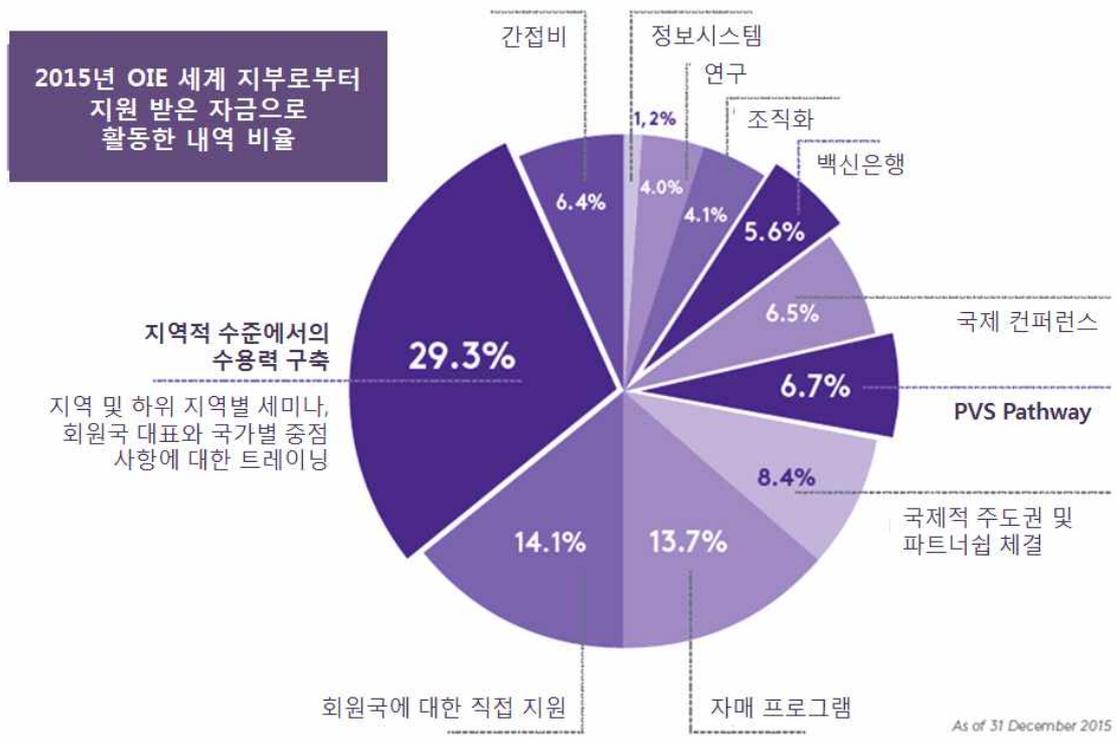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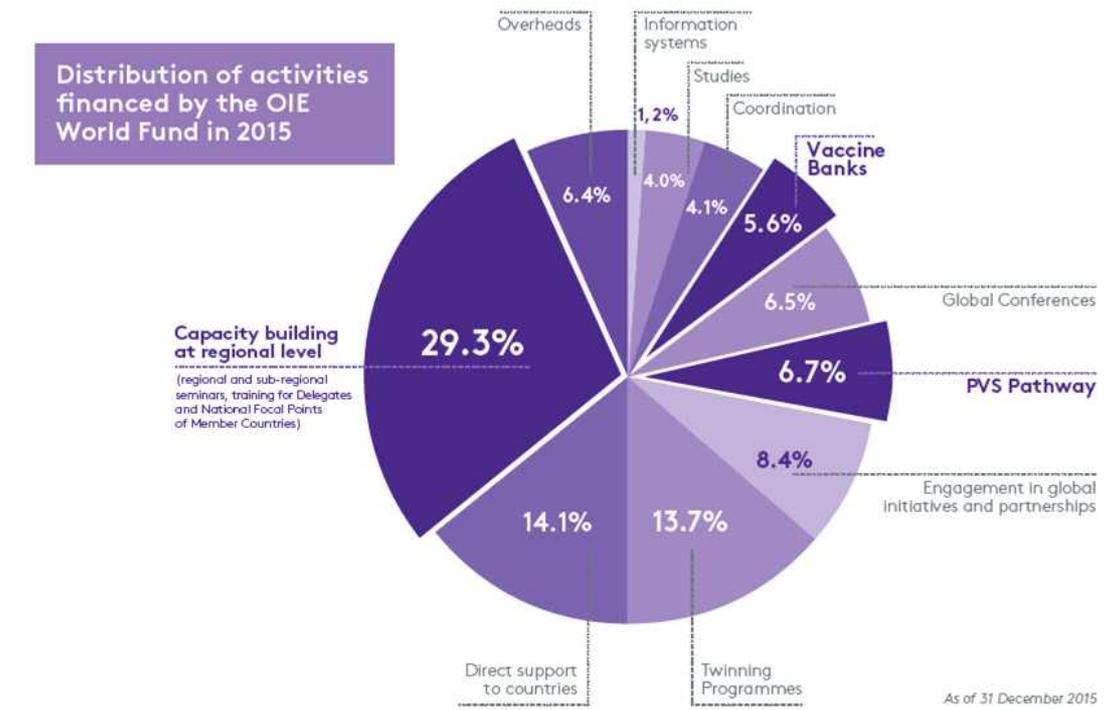
The scientific and educational services provided by the 301 OIE Reference Centres (in kind) must be added to these resources, which represent a considerable non-budgeted contribution towards the fulfilment of the mandate of the OIE.



○ OIE의 활동은 다양한 경로의 기부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고 있음.

○ 총 예산이 한화로 약 326억 원에 이룸.

그림 4-18. OIE(국제수역사무국) 예산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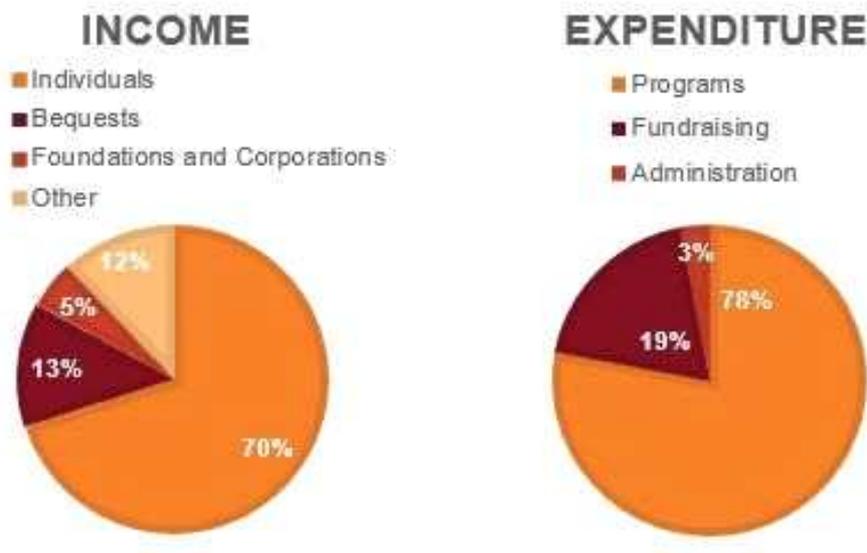


자료 : OIE Annual Report (2015)

2.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 1950년 세계동물보호협회가 형성된 이래 협회에서는 동물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중단시키고, 동물 보호에 관련된 의제가 세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동물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보도하고, 동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2016년, 10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재해로부터 60만 마리의 동물들을 구출하였으며, 백만 마리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베이팅(동물이나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사냥터나 낚시터에 음식을 뿌려놓는 것.)으로부터 여덟 마리의 곰을 보호하였음.
- 협회에서는 매년 기부자들로부터 모인 기부금을 통해 동물 보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2016년 협회의 수입은 약 61억 원이며, 그중 동물 보호 프로그램에 사용된 지출액은 51억 원임.

그림 4-19. 세계동물보호협회의 수입 및 지출 현황



자료: 세계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

○ 지역 사회에서의 동물보호

- 협회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정부가 개의 개체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 또한 애완동물을 소유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하며, 동물들이 학대받거나 과로하지 않도록 방지함.
- 협회에서는 개를 도태시켜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따라서 전 세계의 정부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인도적으로 개의 개체수를 관리할 방법을 지향하고 있음.
- 협회는 International Companion Animal Management(ICAM)을 통해 개의 개체 수 관리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며 정부가 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동물들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협회는 애완동물의 주인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개 등록, 광견병 예방 접종, 재활 등을 통해 애완동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한 정부 정책 실행에 관한 진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에 관한 보호

-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사육 환경에 관한 문제는 동물 복지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2050년 가축 생산량은 2000년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700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해마다 식량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이중 3분의 2가량의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자연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동물들은 대부분 스트레스와 고통을 수반한 상태에서 도축에 이르게 됨. 협회에서는 사육 단계부터 도축의 전 과정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가축에 대한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동물들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동물들의 습성을 반영하고, 최대한 인위적인 간섭을 줄이는 사육 방식은 집중 번식 사육보다 사료, 연료, 식수를 덜 사용함으로써 사육비와 공해를 줄일 수 있음. 또한 동물복지농장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며 먹거리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음. 가축과 함께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온실 가스 배출량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세계동물보호협회에서는 사육 여건을 개선하여 가축들이 서로 공격하는 일이나, 꼬리 도킹과 같은 가축 학대를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음.
- 닭고기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축산물로, 닭고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에 따라 매년 60억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으며, 그중 3분의 2는 자연채광이 없거나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된 우리에서 자라게 됨. 사육 밀도가 높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며 부화한지 5주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살 과정에 이르기까지 분노 위에서 생활하기에 이룸. 현재 세계동물보호협회에서는 패스트푸드 업체인 KFC에 닭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원서 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재해로부터의 동물 보호

- 사람들은 애완동물의 동반자뿐만 아니라 식량, 생계유지, 건강유지 등의 이유로 동물에 의존함. 따라서 동물과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협회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해로부터 고통 받는 동물의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60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을 보호함.
- 협회는 글로벌 대응 네트워크 팀을 보유하여 재해 발생 지역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구호 프로그램을 설정함. 응급치료 제공, 음식 배포, 위험으로부터의 동물 대피, 재해로 분리된 동물과 소유자의 재결합 활동 등이 있음.
- 협회는 정부, 국제단체, 비정기구 및 지역의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재해로부터의 재건 대책을 수립함. 재해 발생 후 동물 보호를 위한 지역민 교육, 지역 사회 비상 계획 개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동물 보호소 건설 및 강화와 확보, 백신 접종 프로그램 운영, 재난 발생 시 동물 보호에 관한 공익 광고 발표 등이 있음.

○ 야생동물 보호

- 해마다 640,000여 톤의 낚시 장비들이 바다에 버려짐. 이러한 장비는 매년 수십만 마리의 고래, 물개, 거북이 등 해양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함. 해마다 136,000여 마리의 물개, 고래 등이 죽음을 당하고 있음. 바다에 폐기된 약 1톤의 장비는 잡힌 고기의 125톤에 상응함.
- 협회에서는 2018년까지 백만 마리의 동물을 구하는 'Sea Change Campaign(바

다 변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 사향고양이 보호

- 사향고양이의 배설물을 커피 원료로 생산한 시빗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고급 제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함. 시빗 커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남 아시아에서 올가미나 사냥개를 이용한 사향고양이의 포획과 학대가 확대됨.
- 사향고양이 사육농장에서는 좁은 우리에서 커피 열매만을 사료로 먹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육됨. 협회에서는 자연 서식지에서 자란 사향고양이가 배설한 커피 원두를 수집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학대로부터 생산된 시빗 커피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음.

○ 담즙 사업의 확산 방지

- 협회에서는 몸보신, 질병 치료용으로의 곰 밀매, 사냥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음. 특히 담즙 사업은 아시아에서 가혹한 방법으로 수의학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 확산되고 있음.
- 불법 포획, 사육되는 곰은 극단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자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빨을 부러뜨리는 등의 학대를 당함.
- 최근 협회는 정부, 세계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곰 담즙 농장의 폐쇄, 불법 농장으로부터의 곰 구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음.

제 5장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제 1절 관련 법령 제·개정

1. 해외 사례 검토

- 해외의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대체로 농업, 식품, 방역, 환경과 관련된 부서들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관된 법률을 근거로 정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들이 동물보호법 외에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외에 말보호법,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애완동물법, 동물행동법, 개사육 및 판매법, 승마시설법, 동물숙박시설법, 가축사육법 등 다양한 법률에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해외와 비슷하게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임.
 - 관련 법령은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대략 10여개가 있음.
 - 외국과 달리 동물보호·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이 덜 세분화되어 있음.

표 5-1. 국가별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 검토

	담당 부서	법령	산하 조직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동물보호법, 말보호법	동물복지센터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물안전관리과, 동물위생과)	반려동물사료안전법	
	환경성(자연환경국 동물애호관리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사료안전법,	
영국	환경식품농업부 (: 동물보건수의연구소)	동물복지법, 애완동물법, 동물행동법, 개사육 및 판매법, 승마시설법, 동물숙박시설법,	
	왕립동물학대방지기구		
네덜 란드	식품복지국	동물건강 및 복지법	
	동물당		
덴마크	수의 및 식품관리국 수의부	동물건강 및 복지법, 개에 관한 법률	동물복지센터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동물보호법, 가축사육법, 농장동물보호법, 동물건강법, 동물수송에 관한 규정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수의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2. 국내 법령 제·개정

(1) 법령 제·개정의 당위성

- 한국의 반려동물의 연관산업의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2조원에서 2020년에 약 5.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연관 산업의 성장속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수요 증가에 미루어 볼 때 현행 동물보호법의 내용만으로는 산업의 성장속도와 사회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한국의 ‘동물보호법’을 보면, 하나의 법률에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내용 등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주관 부서도 서로 달라 향후 사회적 수요와 효율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거나 보완될 필요성이 큼.
 - 특히, 최근 반려동물 수의 증가(2017년 현재 개와 고양이만 약 330만 마리, 전체 반려동물 대략 900만 마리)하고 있음.
 - 연관산업의 전체적 규모는 10년 내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연관 산업의 경제적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2017년 현재 사료 6,600억원, 보건·의료 6,200억원, 관련용품 4,000억원, 반려동물 케어 2,000억원 등).
 - 연관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 거래,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민원이 커지는 상황에서 거래 표준(인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장동물에 대해서만 인증을 다루고 있음.
 - 반려동물 사육가구의 증가와 연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속에서 관련된 동물보호시설, 위탁시설, 지원기관 등의 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에 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동물보호법”의 개정 및 “반려동물관련산업” 관련 법안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2) 법령 제·개정의 범위와 내용

① 현행 동물보호법의 세분화

-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내용 등을 하나의 법률 안에서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음.
 -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의 목적이 서로 상이함. 농장동물의 경우 제 4장 제29조~제31조에 걸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최근 살충제 계란과동(2017년 8월) 이후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농장동물보호법’을 따로 제정하여 농장동물을 반려동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한국도 위 사례를 검토하여 관련법 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령은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사육, 관리, 운송, 도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동물의 구조·보호,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의 보호와 관리와 영업의 종류와 등록 등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음(지인배, 2017).
 - 반려동물의 보호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관련 연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연관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본 법은 반려동물의 정의, 종합계획 수립, 통계 및 실태조사, 육성전담기관, 창업지원, 영업자 관리, 전문인력 양성, 우수업체 지원, 분쟁위원회 설치 등 반려동물의 사육과 연관산업의 관리·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일본의 경우 1973년 제정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반려동물의 사육과, 학대방지, 유기, 교육, 홍보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인 판매, 보관, 대여, 훈련, 전시, 경매·알선, 양수 사육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필

요시 제·개정해야함(윤익준, 2017).

-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
-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소유자에 대한 관리책임의 문제도 강화해야 함.
- 반려동물 생산업의 문제, 불법유통 및 운송상의 문제, 질병관리에 관한 비용 부담 문제, 유기 반려동물의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연관산업을 건전하게 육성시켜야 함.
- 반려동물연관산업법 제정 방향은 다음의 사항들을 구체화해야 함.
 - 반려동물의 등록: 등록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반려동물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도 등록해야 하고, 반려동물 유실 등에 대해 소유자 등의 신고를 의무화 함.
 -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반려동물 호텔 혹은 미용 등에 대한 시설과 인력기준, 관리방법 등을 구체화해야 함.
 -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 반려동물 요양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반려동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② 동물보호·복지 관련 추가 입법

-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담고 있어 향후 사회적 정책 수요에 비교해 볼 때 보다 세부적인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말보호법’, 영국의 ‘개 사육 및 판매법’, 덴마크의 ‘개에 관한 법률’ 등 필요에 따라 반려동물 중 사회적 중요도가 있는 동물의 경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반려동물사료안전법’의 경우처럼 반려동물 자체가 아닌 연관 산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필요에 따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애완동물법’, ‘동물행동법’, ‘동물숙박시설법’ 등과 같이 단순 동물보호를 넘어서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위한 법률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필요시 관련법을 제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한국도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필요 법률을 세분화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됨.¹⁶

- 최근 개물림 사고(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함) 등이 빈발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임. 따라서, 견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필요함. 예를 들어, 영국이나 덴마크의 경우처럼 ‘개와 관련된 법률’ 등을 새롭게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영국은 지난 1991년 맹견 사육제한과 관련하여 ‘맹견법’을 제정, 맹견을 키우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고 대인배상보험에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도 39개 주에서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해, 이들 견종 소유주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한국도 이 사례를 검토하여 법 제정과 더불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사회적 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관련 법안 제정을 검토함.

- 사료 수출액은 2011년 1,257만 달러에서 2016년 1,352만 달러로 연평균 1.5% 증가하였고, 사료 수입액은 2011년 1억 113만 달러에서 2016년 1억 7,133만 달러로 연평균 11.1% 증가하였음.
- 주요 수입국은 미국, 호주, 중국, 프랑스, 태국 등이며, 최근에는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에서도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반려동물사료안전법’의 경우처럼 필요시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함. 반려동물 사료의 적정량 확보 및 안전한 유통, 적절한 수급관리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해야 함.

○ 반려동물에 대한 서비스가 보다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법안도 필요시 보다 세부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함.

- 2017년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영업 종류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총 8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었고(제32조), 2018년 3월 22일부터 시

16 <http://www.hankookilbo.com/v/5ea181e0162b43d89b8350c64ba6c9b2> (한국일보, 2017.11.14.)

행됨.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판매업체수는 3,961개소이며, 동물수입업체수는 32개소, 동물생산업체수는 406개소, 동물장묘업체수는 24개소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수의업 중 반려동물 부분의 매출액은 2011년 3,549억 원에서 2014년 6,55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 2015년 기준,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동물등록제 등록 건수 대비 0.2%임. 영국과 미국의 보험 가입률 20%와 10%와 비교할 때, 향후 보험가입률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매출액도 2009년 80억 원에서 2014년 338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위해서 영국의 ‘애완동물법’, ‘동물행동법’, ‘동물숙박시설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필요시 반려동물 서비스업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고 운영함.

제 2절 행정 조직 개편

1.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 동향

○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추진경과

- ① 동물보호법 제정('91.7.1)
- ②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보호과 신설('16.3월), 농식품부에 동물복지계 신설('07.11월)
- ③ 동물보호법 개정 및 동법 하위법령 제정·시행('08.1월)
- ④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08.1월)
- ⑤ 제2차 동물보호·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 발표('14.12월)
- ⑥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발표('16.7월,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후속 세부대책 마련('16.12월)
- ⑦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팀 신설('17.2월)
- ⑧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17.3월, 시행 '18.3월)
 -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유기행위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4종(전사·미용·위탁관리·운송) 추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년1회 이상 영업자 교육 및 정기점검 의무 신설 등

2. 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과 업무량 비교 분석

(1) 중앙부서

□ 동물보호·복지 담당 부서 주요 업무량 분석

○ 담당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향후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아래 표에 정리하였음.

- 현재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주무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내 동물복지팀 1개팀 6명의 인원이 전담하여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업무와 더하여 관련산업의 성장, 반려동물 사육가구수 및 등록 수 증가, 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 증가, 동물 학대행위 단속 및 처벌 증가, 각종 민원 증가 등에 따른 전반적인 정책 기획, 운영, 관리 업무 증가가 예상됨.

표 5-2. 동물보호·복지 담당 부서의 현재 업무와 업무량 증가 예상 부분 정리

업무	동물보호·복지	
부서명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동물복지팀 (1팀에서 업무 전반 담당)	
인원수	6명	
	현재 업무	업무량 증가 관련 주요 사항
업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 및 관련 행정규칙운용 ○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 수립·운영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운용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결산 대응 ○ 동물보호 교육·홍보사업 총괄 ○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 사항 ○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총괄 ○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총괄 ○ 윤리적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 총괄 ○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교육·훈련과정 사항 ○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복지 정책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대책 수립 총괄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 및 국가공인 관리 ○ 반려동물 관련 단체, 협회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산업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내 3배 이상 성장 - 관련영업종 8개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 ○ 반려동물 사육가구수의 꾸준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약 0.3%P 증가(유기영, 2016) ○ 반려동물 등록 관리 업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등록율 30% 이상 증가, 향후 증가예상 - 현재 반려동물 등록율은 10% 정도 ○ 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사회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센터 281개소(직영 26, 위탁 250, 시설위탁 5)->직영 전환에 따른 업무 증가 ○ 동물학대 고발/기소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160/70 → '15년 287/115 -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단속강화 ○ 각종 민원수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5만건('17년) ○ 전반적인 정책 기획, 운영, 관리 업무 증가

□ 업무량 대비 동물보호·복지 업무량 대비 행정 조직 체계 미흡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연관산업의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2조원에서 2020년에 약 5.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기준, 전체 반려동물의 수도 대략 900만 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연관 산업의 성장속도를 반영하여 ‘동물보호법’에도 관련 영업분야를 8개 업종(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이를 담당할 관련 행정 조직과 인원은 충분히 정립되고 확보되지 못함.
 -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내 동물복지팀에서 6명이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 비교를 위해, 가축 방역과 위생과 관련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내에 하나의 국으로 방역정책국이 전담하고 아래 3개과(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 40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관련 산업의 꾸준한 성장, 관련 산업에 대한 민원수 증가, 관련 정책 입안과 집행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조직 체계와 인력으로는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역정책국에 준하는 정도의 행정조직 신설이 필요함.
 - 40명의 인원이 가축방역/위생 업무를 전담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6명의 인력만으로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반을 기획, 관리,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표 5-3. 가축 방역/위생과 동물보호·복지 조직과 업무량 비교

	가축 방역/위생	동물보호·복지
담당부서	1국 3과	과내에 1팀
부서명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동물복지팀
인원수	40명	6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제도 및 예산 ○ 방역기획 ○ 방역상황관리 ○ 살처분보상금 ○ 대동물 질병관리 ○ 축산물위생관리 ○ 축산물 안전관리HACCP 운용 등) ○ 대동물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구제역 등) ○ 구제역 방역 ○ 방역관리 ○ 뉴캐슬병 등 가금질병 방역관리 ○ 개, 고양이 및 꿀벌 질병 방역관리 ○ 가축방역 사업 평가 ○ 소가축 방역 대책 ○ AI 방역 ○ AI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 및 관련 행정규칙운용 ○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 수립·운영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운용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결산 대응 ○ 동물보호 교육·홍보사업 총괄 ○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에 관한 사항 ○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총괄 ○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총괄 ○ 윤리적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 총괄 ○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교육·훈련과정 사항 ○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복지 정책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대책 수립 및 총괄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 및 국가공인 관리 ○ 반려동물 관련 단체, 협회 지도·감독

(2) 지자체

□ 서울시와 광역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조직과 업무량 분석

○ 반려동물마리수(개와 고양이 기준)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특별시는 63만2천마리로 전국의 약 19%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197천 마리에 비해 약 3배 가량이 많음.

- 광역시 7 곳 중 서울특별시만이 동물보호·복지 전담 조직으로 1과(동물보호과) 3팀(동물정책, 수의공중보건, 동물관리)이 운영 중임. 총 인력은 13명이 배치됨.
- 부산과 대전에 전담팀이 각각 1개씩(부산: 동물보호팀 3명, 대전: 반려동물보호TF팀 3명)이 운영 중임.
- 나머지 광역시는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이 없으며 농축산 관련과에서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해당 업무를 보고 있음.

○ 광역자치 도(道) 9곳 중 경기도의 반려동물 마리수는 전국의 약 26%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에 비해 약 4배 가량이 많음.

- 광역자치 도 9 곳 중 경기도만이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직으로 동물방역위생과 내에 3팀(동물보호팀 1명, 도우미견나눔센터팀 6명, 반려동물테마파크TF팀 3명)을 운영중임.
- 나머지 도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전담 조직이 없이 대부분 축산관련 담당부서에서 축산관련 업무를 주로 하면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 도별 산하기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방역·위생,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병행함.

○ 서울특별시를 벤치마킹하여 다른 광역지자체도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할 과와 팀 단위의 행정조직을 신설하고 필요인력을 증원해야 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1과 3팀 13명의 인원으로 약 63만 마리의 반려동물(개+고양이)을 담당하고 있음.
- 이 비율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보면, 약 340만 마리의 반려동물(개+고양이)에 대한 업무 담당을 위해서는 약 5배의 인력(총 65명)이 필요함.
- 서울시와 광역지자체의 담당공무원(서울,부산,대전,경기)이 현재 총 28명이므로

로 약 40여명의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이를 지자체별로 할당해보면 지자체 당 2~3명 이상의 담당공무원을 충원하여 담당 팀과 나아가 담당 과를 신설할 필요가 큼.

□ 기초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조직과 업무량 분석

○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업무 관련부서와 인력은 다음과 같음.

- 서울은 25개의 구 중 5개, 인천은 10개의 구 중 2개, 부산은 16개 중 2개만 전담과는 없고 전담팀만 있음. 나머지 광역지자체(대전, 울산, 대구, 광주)는 전담과도 없고 전담팀도 없음.
- 경기도는 7개 시, 전라북도는 1개 시, 전라남도 1개 시에 전담과는 없고 전담팀만 있을 실정이며, 기타 나머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임.

○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담 부서가 없어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다하고 노동 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각 시·군·구의 경우에 대부분 농축산업 관련 부서에서 1명이 다른 업무들과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담당하고 있음.
- 농업관련전반, 축산관련전반, 방역·위생, 동물보호·복지 등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 부하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관련 공무원들의 1~2년 내 퇴직비율이 타 부서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특히, 동물 관련 민원의 경우, 민원인들을 상대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조사됨.
- 민원 관련 전화 업무량도 많아 타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1일 평균 전국 민원건수는 약 500여건에 이룸. 지자체별로 하루에 약 5~10건 내외의 민원이 매일 발생하고 있음. 민원에 대한 전화 대응, 현장 출동, 갈등 해결, 그리고 동물 보호, 포획 및 구조, 등록 등 일선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임.

표 5-4. 서울시와 지자체의 반려동물 수 대비 조직과 인원 비교

	반려동물 마리수(개,고양이)	전국대비 비중	전담조직유무		전담공무원 인원수
			과	팀	
서울	632,513	19%	1	3	13
부산	269,191	8%		1	3
대전	106,287	3%		1	3
대구	316,196	9%			
인천	47,388	1%			
광주	189,754	6%			
울산	69,019	2%			
세종	50,800	2%			
경기	866,997	26%		3	9
강원	56,698	2%			
경북	137,440	4%			
경남	124,044	4%			
충북	162,226	5%			
충남	124,562	4%			
전북	93,489	3%			
전남	84,349	3%			
제주	26,100	1%			
합계 (평균)	3,357,053 (197,474)				

표 5-5. 서울시와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조직과 업무량 비교

	마리수(개, 고양이)	등록마리 수 (누계)	등록대행 기관수	동물보호 센터수	영업장수 (8개업종)	민원건수 (전체)	구조 건수	동물보호법 단속 건수	길고양이 (TNR)수	식용견 농장 수
서울	632,513	247,883	845	53	2,055		8,648	102	8,524	0
부산	269,191	70,068	188	12	680	28,013	6,081	1,066	3,422	7
대전	106,287	54,389	159	12	384	6,653	4,386	551	1,717	9
대구	316,196	71,178	165	10	1,131	13,798	5,567	4,382	1,146	67
인천	47,388	16,108	90	1	302	2,887	2,904	144	405	9
광주	189,754	44,327	98	1	362	8,479	4,556	118	520	23
울산	69,019	23,773	66	23	241	10,363	3,082	78	786	43
경기	866,997	39,972	935	63	3,123	18,700	17,561	1,430	10,339	543
강원	56,698	34,146	102	18	251	9,573	3,939	219	546	226
경북	137,440	24,203	82	12	268	5,301	3,859	18	720	198
경남	124,044	19,736	101	14	473	3,130	4,441	860	1,454	298
충북	162,226	21,461	92	27	251	4,876	3,672	1,464	807	213
충남	124,562	8,454	133	20	296	5,018	3,048	167	142	306
전북	93,489	11,484	59	11	156	2,708	2,203	26	41	254
전남	84,349	52,565	191	18	433	33,185	6,595	2,001	1,267	156
제주	26,100	15,159	53	1	118	3,963	3,588	10	224	124
계	3,357,053	756,823	3,370	297	10,592	159,402	84,514	13,934	32,327	2,524
(평균)	209,816	47,301	211	19	662	9,963	5,282	871	2,020	158

3. 행정조직 개편 방향

(1)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심사항 반영

- 동물보호·복지업무는 59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중 세부 실천과제로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조성’에 포함됨.
 - 세부실천과제 주요 내용으로 ‘중앙과 지자체 동물보호 지원체계 강화’가 포함되었고, 이는 다른 세부 실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

-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비전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임.

- 이를 위해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반려등록마리수를 ‘15년 979천두에서 ‘20년 1,500천두로 늘림.
 -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규모를 ‘15년 1.8조원에서 ‘20년 3.5조원으로 늘림.
 -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14년 2만7천명에서 ‘20년 4만1천명으로 늘림.

- 추진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임.
 -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내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함.
 - 관련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관련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함.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는 4가지(세부 18과제)임.
 -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 이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조직과 인력만으로는 달성성이 어려움.

- 중앙부서의 경우, 1팀 6명만이 담당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이 전담부서가 없어 축산 방역/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겸업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부서와 지자체의 관련 행정조직에 대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을 통해 정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해야 함.

(2)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가칭 ‘동물보호국’ 신설

- 국내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법은 동물보호법으로 하나의 법률에 대해 관련부서가 서로 나뉘어져 있고, 법률, 행정조직,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늘어나는 정책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조직과 인원만으로는 한계가 많음.
 - 현재 동물보호·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내 동물복지팀으로 6명이 전담하여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오직 ‘1개 팀’만이 중앙부서에 존재함.
 - 반면, 가축방역/위생 업무에 대한 담당 부서는 ‘방역정책국’ 1국 내에 ‘3과’(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총 37명의 인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향후,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마리수 증가와 연관산업 성장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가축방역/위생을 담당하는 조직에 버금가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물보호·복지를 전담하는 ‘국’을 신설해야 함.
 -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반을 기획, 관리, 운영하고 전담할 가칭 ‘동물보호국’을 신설함.
 - 동물보호국 내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개의 과를 두어 업무를 수행함. 동물보호·복지 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기획할 ‘동물정책기획과’, 관련 산업(현재 8개 업종)을 관리하고 운영할 ‘동물산업경영과’, 동물 보호, 구조, 교육, 홍보, 인증 등을 담당할 ‘동물보호복지과’ 등을 세분화하여 신설함.
 - 기타 관련 업무(관련 통계 확보 및 처리, 연관산업 자료 처리와 정리, 동물 등록, 생산, 사육, 사료, 관련 서비스업 등에 대한 자료 구축 및 정리 등)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 민간 지원조직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지자체 부서에 동물보호·복지 전담 팀과 과를 신설

□ 현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행정 조직 운영 현황

○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보면, 동물보호·복지를 전담하는 ‘과’가 없고(서울 제외) 하위 부서인 전담 ‘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광역지자체의 경우, 서울만 유일하게 ‘1과 3팀’이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2017년 동물보호팀이 신설되었으나 현재 팀장만 1명 배치된 상태임.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경우 전담 부서가 없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임.

–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1명이 동물보호·복지업무 외에 다른 십여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관련 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높아(가장 힘든 것은 민원처리에 대한 감정노동) 타 부서의 공무원들에 비해 중도 퇴직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절실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자체의 경우 일단 필요한 것은 ‘팀’ 단위의 부서를 만들어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갖추는 것임. 현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여 동물보호·복지 업무에 충실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팀’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시급함. ‘팀’ 단위가 신설되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과’ 단위의 부서를 새롭게 만들어 보다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현재 가장 동물보호·복지 운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행정조직을 진단하고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함.

-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본 광역지자체의 행정 조직 개편 방향
- 서울시는 동물보호·복지를 전담하기 위해 1과3팀(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수의공중보건팀/동물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음(주요 업무는 아래 표 참조).
- 반려동물수를 기준으로 서울시와 타 광역지자체의 비율을 비교하고 그로부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행정조직을 도출해 보았음.
 - 서울시에서는 1과 3팀으로 약 63만여 마리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를 기준삼아 타 광역지자체에 적용할 경우, 부산과 대전(이미 1개 팀이 존재)을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 1개 팀을 새롭게 신설해야 함. 대구는 2개팀을 신설해야 함. 경기도에는 현재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1개팀을 신설하고 담당 과도 1개 신설해야 함.
 - 광역지자체에 모두 신설해야하는 과는 1개, 팀은 15개로 추정됨.

표 5-6. 서울시와 광역지자체의 반려동물 수 대비 행정조직 신설 검토

	반려동물 마리수(개,고양이)	전국대비 비중	전담조직(현재)		신설 필요 조직	
			과	팀	과	팀
서울	632,513	19%	1	3		
부산	269,191	8%		1		
대전	106,287	3%		1		
대구	316,196	9%				2
인천	47,388	1%				1
광주	189,754	6%				1
울산	69,019	2%				1
세종	50,800	2%				1
경기	866,997	26%		3	1	1
강원	56,698	2%				1
경북	137,440	4%				1
경남	124,044	4%				1
충북	162,226	5%				1
충남	124,562	4%				1
전북	93,489	3%				1
전남	84,349	3%				1
제주	26,100	1%				1
합계 (평균)	3,357,053 (197,474)				1	15

- 서울시의 경우,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음.
 - 하나는 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동물정책팀이고, 두 번째는 수의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수의공중보건팀이고, 세 번째는 유기동물 관리와 동물보호센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관리팀임.
 - 이 중 두 번째 수의공중보건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기존의 축산 방역과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그 부서로 해당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대신, 최근 증가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가칭 ‘동물산업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새롭게 신설하는 팀(팀수는 앞 페이지 참조)을 두되 관련된 업무는 크게 세 가지 부류(동물정책팀, 동물산업팀, 동물관리팀)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단은 1개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되, 업무량 증가에 따라 팀 수를 확대해 가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표 5-7. 지자체의 신설 행정조직 담당 업무

서울시		지자체 신설 조직으로 팀 신설시 담당 업무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	동물정책팀(동물보호·복지 업무 기획, 운영)
	수의공중보건팀	=> 동물산업팀(연관산업 관리, 운영)
	동물관리팀	동물관리팀(동물보호, 구조, 민원처리 등)

(4) 지원부서 설립 검토

- 중앙부서와 지자체의 경우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부서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물보호·복지 업무 중 상당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향후 반려동물 등 관련 연관 산업의 성장속도를 볼 때 이를 담당하고 정부 조직과 연결시켜 줄 지원 (민간) 조직의 필요성이 큼.
 - 동물보호·복지 업무에 대한 기획, 예산, 정책 집행 등은 국가 조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 모두를 담당하기에는 현재의 정부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늘어나는 사회적 수요와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조직의) 지원부서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 정부조직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각종 대책수립과 집행, 동물의 생산, 등록, 판매, 관리, 유기 및 학대에 대한 감시와 처리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벽찰 것으로 판단됨.
 - 연관 산업(동물 생산, 판매, 사료, 교육 및 훈련, 미용, 장례, 보험, 각종 자격증 등)의 성장 속도를 볼 때, 이러한 연관 산업을 담당할 민간기구의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동물복지센터’나 덴마크의 ‘동물복지센터’와 같이 정부와 관련 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 동물복지에 대한 지침, 교육, 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고, 동물복지관련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파트너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무는 환경성의 자연환경국 동물애호관리실과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의 반려동물용사료 대책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에서는 광견병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본과 같이 여러 부처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려동물과 연관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설립이 시급함(지인배, 2017).

- 타 (민간) 지원기관을 참고하여 지원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축산정책국 내 축산경영과와 축산정책과의 업무와 연관된 지원기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원 업무는 등급판정자료, 도매가격, 유통정보, 이력관리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의 업무와 연관된 지원기관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음. 지원업무는 축산악취개선, 가축분뇨자원화, 축산환경 교육컨설팅, 축산환경정보관리, 축산환경시책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를 참고하여, 동물보호·복지 업무에 대한 (민간) 지원기관으로 가칭 ‘동물보호복지원’을 신설함. 지원업무로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통계(등록제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통합관리, 동물보호복지시설 통합관리, 교육홍보컨설팅 프로그램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함.
 - 정부 중앙부서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각종 대책 기획, 수립, 집행, 운영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기관이 연관된 업무를 보조하여 효율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함.

표 5-8. 지원조직 사례와 적용

중앙부서		지원기관	지원 업무
축산 정책국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자료, 도매가격, 유통정보, 이력관리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
	축산환경복지과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악취개선, 가축분뇨자원화, 축산환경 교육컨설팅, 축산환경정보관리, 축산환경시책지원 등
‘가칭’ 동물 보호국		‘가칭’ 동물보호복지원	동물보호복지 관련 통계(등록제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통합관리, 동물보호복지시설 통합관리, 교육홍보컨설팅 프로그램 관리 등

(5) 인증제의 도입 검토(최종권, 2017)

□ 공신력 있는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검토

○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제 4장 29조에서 농장동물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기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은 관련 내용이 충분치 않아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불만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농장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로 인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재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 부족으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 위생적인 반려동물 생산기준의 부족,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수태 및 출산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증가
- 동물유통업: 위생적인 반려동물 유통기준 부재, 반려동물 운송기준의 부재
- 반려단계에서의 관리: 치료체계의 부실, 동물의약품 관리 부족, 보험체계의 미숙, 동물간호사의 전문성 부족

○ 따라서, 앞서 언급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통한 다양한 기능(표준제정기능, 공적 확인기능, 안전확보기능, 정책유도기능 등)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은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 동물생산업: 반려동물 혈통인증, 품질인증, 건강상태 인증 등
- 동물유통업: 분양기준 인증, 분양기관 인증 등
- 반려단계
 - 펫용품 및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한 기준 마련,
 - 미용, 카페, 호텔 및 훈련사 등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 인증제 도입 시 운영상 고려사항

- 규율의 목적, 대상 및 정도 등을 기준으로 법적 규제대상과 인증대상을 선택
- 인증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인증의 대상과 기준을 설정
- 인증제를 관리하고 운영할 주체 선정에 대한 검토: 이를 위해 민간 기구와 협력하거나 지원부서설립을 통해 이를 전담할 기구에 대한 검토 필요

(6) 민간 기구와 협력 체계 구축

- 동물보호법 제 5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
 - 동물보호·복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동물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민간 기구와 협력

- 국내에도 약 10여개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민간단체가 활동 중임.
- 이들은 동물보호·복지와 관련하여 감시, 교육, 홍보, 캠페인, 구조, 치료, 보호, 입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일부는 정부의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민간 후원금에 의지하며 활동을 하고 있음.
- 민간 기구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효율성 제고

(7) 일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준 제고

○ 경제적 인센티브 제고

-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업무량이 많아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력 보충, 근무하는 직원의 복지를 신경 써야 함.
- 담당 직원의 경우 민원, 소음, 냄새 등의 문제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음.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특수업무수당과 관련하여, 특수행정분야에 장려행정수당 상하수도업무관장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장려수당을 지자체 규정에 의해 줄 수 있음.
- 그러나, 동물보호복지업무가 처음 생기다 보니 이 규정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장려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명시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함.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 자원하여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어 관련 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율이 매우 높은 실정임.

- 민원인 상대에서 오는 감정 노동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응 조치 마련
 - 동물보호·복지 업무 중 특히 민원인에 대한 상대적 감정 노동에 따르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동물보호·복지만이 아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대한 인권과 처우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제 3절 인력 충원

1. 인력증원 필요성

- 앞 2절 행정조직개편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앙부서와 지자체의 현재 행정조직으로는 늘어나는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움.
 -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동물보호·복지 업무에 대한 업무량과 늘어나는 정책 서비스 수요를 감안할 때 축산 방역/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정책국 정도의 국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중앙부서는 현재 1개팀(축산환경복지과 내 동물복지팀)이 담당하는 업무를 1국(가칭 동물보호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지원할 (민간) 지원조직의 설립도 검토함.
 - 지자체는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가 가장 앞서가는 모범 사례로 이를 벤치마킹하여 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이를 근거로 소요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중앙정부의 경우, 동물보호·복지 업무에 대한 전담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소속 6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에 10여명에 불과함.

- 지방정부의 경우, 지난 5년간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 담당자는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동물보호 전담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시(동물보호과 9명)가 유일하며, 나머지 시도, 시·군·구에는 대부분 1명이 동물보호·복지업무를 담당하거나 가축방역, 축산진흥업무와 중복해서 수행 중임.
 - 반려동물 마리수, 소유가구가 늘어나면서(연평균 0.3%p, 유기영 2016) 이와 관련된 업무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담 조직, 인력 부족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서비스 곤란한 상

향임.

- 대표적 처리민원으로는 공동주택 등 층간 소음, 길고양이, 맹견 물림 사고, 동물학대, 반려동물 사체 처리,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사육포기동물 인수 등이 있음.

○ 특히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아래 표 참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선 공무원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고충을 고려할 때 인력 충원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

표 5-9. 5년간 동물보호감시원 업무 증가 추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증가율 ('12년 대비)
반려동물 사육 (천 마리)	5,556	-	-	7,023	-	126.4%
동물등록 (마리)	20,737	479,147	887,966	979,198	1,070,707	5,163%
영업장 (개소)	2,045	2,553	2,834	3,491	4,180	104.9%
유실·유기 동물 처리 (건)	99,254	97,197	81,147	82,082	89,732	90.4%
길고양이 TNR (건)	-	-	-	26,306	30,450	-
길고양이 (천 마리)	-	1,000	-	-	-	-
등록대행 ·보호센터 (개소)	972	2,821	3,239	3,602	3,696	380.2%

- 주 1. 반려동물 사육: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2. 동물등록: '12년도 동물등록은 시범사업 수준임
 3. 유실·유기동물 처리: '14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길고양이가 유실·유기동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실·유기동물 처리건수 감소

2. 인력부족 시 문제점

- 미성숙한 반려동물 인식으로 다양한 동물학대행위가 발생되고 있고, 초기 현장 출동이 지체되어 많은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는 사례 다수 발생함.
- 기존 4개 업태의 영업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이들 영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동물보호법 개정('17.3월, 시행 '18.3월)에 따라 지자체장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함.
 -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함.
 - 동물미용·위탁관리·동물운송·동물전시 등 4개 영업이 신설('16년 말 기준 4,188개소)되고 관련산업 증가로 더 늘어날 전망이나 현 지자체의 인력수준으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관련 이웃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중재·완화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제기가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주거지역 내 길 고양이에 대해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함.
 -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함.
- 반려동물 중 위험성이 큰 동물(예, 맹견)에 대한 사람 물림사고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됨.
-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안 될 경우, 질병 감염률이 높아 공중보건상 위해요인이 되고, 들개 등으로 야생화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
 - 소방본부에서 유실·유기동물 단순포획 업무 지원 중단 입장을 전달('17.6.21)함에 따라 지자체 직원들이 직접 동물 구조·보호에 참여해야하는 상황임.

3. 필요인력 산출

(1) 중앙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축산환경복지과에서 6명이 맡고 있는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국 단위의 동물보호국(가칭)을 만들어 전문 부서로 신설할 경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르는 소요 인력은 다음과 같이 추산됨.
 -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축산 방역/위생 업무의 경우 1국 3과 37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업무량 분석결과,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경우에도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1국 3과 3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가칭’ 동물보호국 내에, 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기획할 ‘동물정책기획과’, 관련 산업(현재 8개 업종)을 관리하고 운영할 ‘동물산업경영과’, 동물 보호, 구조, 교육, 홍보, 인증 등을 담당할 ‘동물보호복지과’ 등을 세분화하여 신설함.

표 5-10. 중앙 행정 조직 동물보호·복지 관련 부서와 인력 현황

축산 방역/위생 업무			동물보호/복지 업무 (신설 조직)		
(총 37명)	방역정책과	12명	‘가칭’ 동물보호국 (총 30명)	동물정책기획과	10명
	구제역방역과	12명		동물산업경영과	10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13명		동물보호복지과	10명

(2) 광역 지자체

- 서울특별시를 벤치마킹하면, 반려동물수 대비 필요 공무원수를 산출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됨.
 - 서울특별시의 경우 1과 3팀 13명이 약 63만여 마리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소요인력 추정결과, 광역지자체에서 1과 15팀의 신설 조직이 필요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모두 42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표 5-11. 광역지자체의 행정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 산출

	반려동물 마리수 (개,고양이)	전담조직(현재)		신설 필요 조직		인원수	
		과	팀	과	팀	현재	필요인력
서울	632,513	1	3			13	-
부산	269,191		1			3	3
대전	106,287		1			3	-
대구	316,196				2		6
인천	47,388				1		1
광주	189,754				1		4
울산	69,019				1		1
세종	50,800				1		1
경기	866,997		3	1	1	9	9
강원	56,698				1		1
경북	137,440				1		3
경남	124,044				1		3
충북	162,226				1		3
충남	124,562				1		3
전북	93,489				1		2
전남	84,349				1		2
제주	26,100				1		1
				1	15	28	42

(3) 동물보호감시원 수 증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250명이나 대부분 동물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가축방역, 축산진흥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동물보호·복지업무는 최소한으로 수행 중임.
 - 지자체 담당자들은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잦고, 신규 직원이 담당하여 전문성이 떨어짐.

- 지자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보호·복지수준 제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감독,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341명 이상(+α)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자세한 사항은 표 참조).
 - 시도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인력수요는 40명, 시·군·구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인력수요는 301명 이상이 필요함.
 - 현재 인력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이 지원되어야 신설되는 업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함.
 - 영업 4종 등록관리, 전체 영업자 년 1회 이상 점검,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관련 신고포상금제, 동물학대행위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신설업무량이 증가하였음.

표 5-12. 동물보호감시원 수

단위: 명

시도(유형)	동물보호감시원 수		
	현행	추가소요 희망 인원	소계
서울특별시	9	5	14
서울특별시(25구)	33	42	75
부산광역시	3	1	4
부산광역시(15구1군)	16	13	29
대구광역시	1	4	5
대구광역시(7구1군)	8	8	16
인천광역시	1	1	2
인천광역시(8구2군)	10	7	17
광주광역시	1	3	4
광주광역시(5구)	5	9	14
대전광역시	3	1	4
대전광역시(5구)	5	6	11
울산광역시	1	1	2
울산광역시(4구1군)	5	5	10
세종특별자치시	1	4	5
경기도	1	5	6
경기도(29시2군)	31	64	95
강원도	1	2	3
강원도(7시11군)	18	21	39
충청북도	1	2	3
충청북도(3시8군)	11	22	33
충청남도	1	1	2
충청남도(8시7군)	15	19	34
전라북도	1	2	3
전라북도(6시8군)	14	18	32
전라남도	1	1	2
전라남도(5시17군)	22	32	54
경상북도	1		1
경상북도(10시13군)	6	10	16
경상남도	1	4	5
경상남도(8시10군)	20	21	41
제주특별자치도	1	3	4
제주특별자치도(2시)	2	4	6
총계	250	341	591

주: 1. 반려 목적의 동물 관련 업무로 한정
 2. 감시원 지정 수와 별개로 실제 업무 담당 인력

참고문헌

- 시·군·구 홈페이지.
- 강혜정, 우병준. 2011. 농장동물복지의 도입 가능성과 과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과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사회학회.
- 김남교. “영국의 동물 보호 제도: 왕립동물학대방지기구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 오마이뉴스 2000. 8. 17일자
- 김선희. 2013.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네덜란드 동물당 홈페이지(<https://www.partijvoordedieren.nl>), 2017.11. 다운.
- 네덜란드 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www.dierenbescherming.nl), 2017.11. 다운.
- 네덜란드 식품복지국 홈페이지(<https://www.nvwa.nl>), 2017. 11. 다운.
- 네덜란드 정부정보서비스 및 홍보가이드 홈페이지(<http://wetten.overheid.nl>), 2017.11. 다운.
-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happylog.naver.com/happyanimal)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보호시민운동단체 케어(fromcare.org)
- 동물자유연대(www.animals.or.kr)
- 덴마크 환경 및 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foedevarestyrelsen.dk>), 2017. 11. 다운.
- 덴마크 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https://anima.dk>), 2017. 11. 다운.
- 덴마크 법률정보 홈페이지(<https://www.retsinformation.dk>), 2017. 11. 다운.
- 미국 농림부 동식물검역본부 홈페이지(<https://www.aphis.usda.gov/aphis/home/>), 2017. 10. 다운.
- 미국 쉼넬 클럽 홈페이지(https://en.wikipedia.org/wiki/The_Kennel_Club), 2017. 10. 다운.
- 미국 쉼넬 클럽 위키백과사전(https://en.wikipedia.org/wiki/American_Kennel_Club), 2017. 10. 다운.
- 배정환, 강혜정, 조광호, 정해영. 2011.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물에 대한 지불의의액 추정, 농업경제 연구, 52(1).
- 사단법인 나비아사랑해(happylog.naver.com/nabiya)
- 생명체학대방지포럼(<http://www.voice4animals.org/>)
- 송영한 외. 2014.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강원대학교 동물자원연구, 25(2).
- 신동민. 2015.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소비자인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농업자원경제학과 경제학석사학위논문.
- 안병일. 2008.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 추정, 농업경영·정책연구, 35(3).
- 영국 환경식품농업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 2017. 11. 다운.
- 영국 법령 홈페이지(<https://www.legislation.gov.uk>) 2017. 11. 다운.
- 우병준. 2014. EU 동물복지 정책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병준, 허덕, 김현중. 2010. 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기영, 이종찬. 2016.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 유선봉. 2008. 미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그 시사점 -한국의 동물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암법

: 26.

- 윤유경. 2014. 가치소비추구에 따른 동물복지인증 달걀의 이용실태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익준. 2017. 반려동물관련산업 육성법령 제정안 마련.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본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2017.10.13.).
- 윤창호. 2012. 동물복지형 축산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대. 2016.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법무법인 수호.
- 이정임, 이수진. 2015.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경기연구원.
- 이종인 외. 2014. 해외 동물복지 축산정책 현황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반려동물안전법의 개요」 2015. 2. 1.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2017. 8. 다운.
- 일본 동물검역소 홈페이지(<http://www.maff.go.jp/aqs>), 2017. 8. 다운.
- 일본 환경성, 「알고 납득! 반려동물사료의 표시」, 2011. 2.
- 일본 환경성,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 2012년 개정판」, 2014. 3.
-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http://www.env.go.jp/>), 2017. 8. 다운.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 2017. 8. 다운.
- 지인배.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염순. 2009.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추진동향과 국내 정책과제, 대한수의사회, 45(1).
- 최염순. 2012. 농장동물 복지에 관한 국제 동향과 국내 과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2, (KISTI), 57(0).
- 최종권. 2017. 반려동물관련산업 육성법령 제정안 마련.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2017.10.13.).
- 켈널 클럽 위키백과사전(https://en.wikipedia.org/wiki/The_Kennel_Club), 2017. 10. 다운.
- 통계청(www.kostate.go.kr)
- 한국동물보호연합(<http://www.kaap.or.kr/>)
- 한국동물보호협회(www.koreananimals.or.kr)
- 한국애견연맹(www.thekcc.or.kr)
- 한국애견협회(www.kkc.or.kr)
- 한국펫사료협회(www.kopfa.org)
- 한국펫용품협회(www.kopfa.org)
- 한진수 외. 2013.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허덕. 2014. 일본의 동물복지정책과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명철, 김태성. 2013.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NHERI 리포트 제215호.
- 황원경. 2015.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 『KB 지식 비타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www.americanpetproducts.org)
- Dog Trust 위키백과사전(https://en.wikipedia.org/wiki/Dogs_Trust), 2017. 11. 다운.
- RSPCA 위키백과사전(https://en.wikipedia.org/wiki/Royal_Society_for_the_Prevention_of_Cruelty_to_Animals), 2017. 11. 다운
- UFAW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ities_Federation_for_Animal_Welfare), 2017. 11. 다운.